

2021
통권 제14호

KOREAN NOTARIES ASSOCIATION



공증과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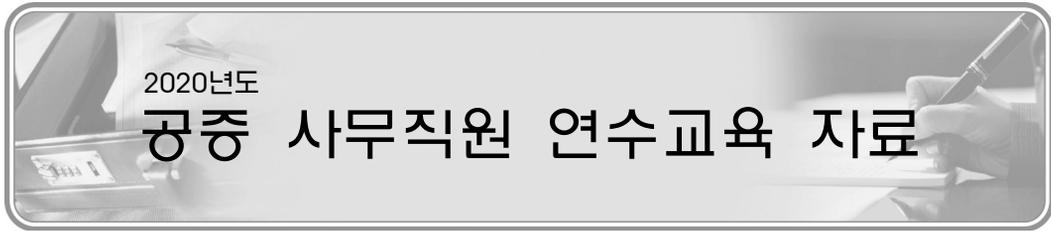
공증 사무직원 연수교육 자료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회규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21 공증과신뢰 (통권 제14호)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자료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해설 / 박중욱	5
	<hr/>	
대한공증인협회 개 정 회 규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101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03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hr/>	
대한공증인협회 주 요 회 무	I. 공증법령 개정 의견 제시	107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176
	III. 공증업무지침 제정 등 건의	224
	IV. 공증업무 지침·지시 등 회원 안내	231
	V. 기타 주요 활동	243
	VI. 2020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52
	VII. 2020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62
	<hr/>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해설

강사 :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박 중 욱

I.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과정 설명

가 공증실무상시자문단

1. 운영 경위

(가) 종래 공증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 즉시 답을 얻고자 할 때, 실무 지침서인 대한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한 『공증실무』를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무부 또는 협회에 서면 질의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전자의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전파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 사무소에서 공증 업무 처리 중 생기는 의문사항을 협회가 지정한 공증상담위원으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2017. 7. 1.부터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상담 신청 및 자문 방법

(가) 원칙적으로 협회에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한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대표번호사가 ‘공증사무소 명칭, 상담신청 공증인 또는 공증대표번호사 성명, 공증실 직통 전화번호, 상담 요하는 개괄적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적어서 매 요일별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 매 요일별로 지정된 상담시간과 접수용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10. 기준).

상담 요일	월	화	수	목	금
상담 시간	10:00~17:00	10:00~17:00	10:00~17:00	10:00~17:00	10:00~17:00
접수용 전화번호	010-3101-3476	010-3101-3476	010-9003-3476	010-2045-3476	010-4996-3476

(나) 상담신청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요일별 지정 공증상담위원은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 접수 후 20분 이내에 상담신청자가 적어 보낸 공증실 직통 유선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걸어서 상담신청자로부터 상담 취지를 구체적으로 청취한 후, 이에 관하여 곧바로 자문을 실시합니다. 단 이 경우 공증실 담당직원에게 질의 내용을 대신 설명하게 하고 대신 답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증상담위원이 즉시 자문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을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공증상담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상담신청자에게 다시 자문전화를 걸어서 설명합니다. 다만 공증상담위원 간의 논의 후에도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하여는 상담신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회에 공식 서면 질의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1)

1) 협회에 접수된 서면질의는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교육위원회의 논의 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상담신청자에게 답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증실무포럼 등 밴드를 활용한 검증과 결과물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한 내용을 당해 공증상담위원이 매월 정리하여 협회로 보내면 협회에서 하나씩 공증실무포럼²⁾ 밴드에 올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된 결론이 나온 것 중에서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법무부 법무과 검사 등과 공증실무제요 편찬 작업을 맡고 있는 핵심 공증실무진이 함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밴드에 올려 다시 검증을 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에 대한공증인협회 밴드에 올려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다음의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내용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한공증인협회 밴드에 오른 공증실무상담 내용과 결과물 중 선별한 일부를 각 공증사무소 실무진이 공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익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2) 협회 상임이사회 구성원들과 법제교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회원입니다.

II.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³⁾

가 촉탁인과 대리인 및 그 밖의 공증관계자 등

1. (250) 일본 소재 일본인이 공증의 촉탁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일본 소재 일본인이 공증의 촉탁을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31조제2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말함. 일본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위임장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⁴⁾

2. (268)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질의내용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언자(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의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이는 직무집행구역 안의 출장인지 아니면 직무집행구역 밖의 출장인지 여부 / 즉,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이 유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⁵⁾

3) 지난해에 정리하여 강의한 상담내용 뒷부분부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4)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본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

5)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답변하자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공증인이 실제로 직무를 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촉탁인의 주소지는 무관함.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름.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함(공증인법 제16조). 한편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집행이 가능함(공증인법 제56조제1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서울특별시이므로, 공증인이 유언공증을 위하여 직무집행구역인 서울특별시를 벗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유언자가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직무집행이므로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소지가 경기도인 유언자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내에서의 직무집행이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즉, 유언자의 주소지는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과는 무관함.

3. (274) 외국에 체류중인 내국인의 위임장 확인 방식?

□ 질의내용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위임장에 외국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지?

□ 답변내용

위임장(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될 필요가 있음)을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아포스티유 체결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그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 한국 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또 다른 방법은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이 재외 한국 공관에서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으로부터 위임장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됨(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25조 등 참조).

4. (325) 촉탁인이 단지 말만 못하는 경우 통역인이 필요한지?

□ 질의내용

촉탁인이 듣고, 쓰고, 읽고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단지 말만 못하는 경우에도 통역인이 필요한지?

□ 답변내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함(공증인법 제28조).

사안과 같이 말만 못할 뿐 문자를 해득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6)

5. (388) 대리인 촉탁 후 본인에게 통지할 주소는?

□ 질의내용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1조제1항). 위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1조제2항).

따라서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가 진정한 것임이 인감증명서 제출로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인감증명

6) 이 경우에는 참여인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

서상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임의의 주소로 통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공증실무』 164면 참조).

6. (392) 재소자의 위임장 제출 시 교도관의 서명·날인 외에 재직증명서도 필요한지?

□ 질의내용

교도소 수감중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열람신청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였음. 위임장에는 교도관의 성명이 적혀 있고, 날인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교도관의 재직증명서도 필요한지?

□ 답변내용

위임에 관한 증거가 사서증서일 때에는 인증을 받았거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필요함.

교도관의 무인증명은 공문서임.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교도소에 조회할 수 있음.

다만 구속수감중인 자의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의 무인과 입회 교도관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으로 함. 교도관의 무인증명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교도관의 재직증명서는 제출받지 아니함.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교도소에 조회할 수 있음.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7. (289) 법인이 주채무자이고, 대표이사과 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등?

□ 질의내용

- (1) 법인이 주채무자이고, 대표이사과 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2) 준소비대차에 있어서 종전의 채무에 관하여 발생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말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최고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에 대한 답변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채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년 ○○월 ○○일 현재 물품대금)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② ‘○○○○년 ○○월 ○○일자로 금○○○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7) 어떤 물품대금채권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8. (290)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당사자가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월 200만 원)보다 증액된 양육비(월 300만 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됨(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러나 당사자는 협의이혼 후 위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증액된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9. (293) 양육비 채무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도 가능한지?

□ 질의내용

양육비 채무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도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계약 중 양육비에 대해서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은 그 양육비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함.

10. (310) 자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이자는 약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 제397조제1항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9조에서는 법정이율을 연 5%, 상법 제54조에서는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즉 연체이자에 관하여 정함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연 5% 또는 연 6%로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그러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마542 결정 참조).

당사자가 지연손해금의 의미를 오해하여 지연손해금이 약정이자보다 적거나 없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증서의 작성 단계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한 후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316)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 시 상대방 대리 금지 여부 등?

□ 질의내용

- (1)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에 의해 대부업자의 상대방 대리가 금지되는 것인지?
- (2) 대부업자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면 상대방 대리가 되는 것인지?
- (3) 보험모집인이 그 직원과 장래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에 의해 상대방 대리가 금지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등 해당 법률에 의해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 대리가 금지됨(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2조제2조가목 후단 참조).

(2)에 대한 답변

대부업자를 포함하여 위 지침 제2조가목 내지 파목에 해당되는 자는 지침 제4조 소정의 금전대부계약을 하면, 이자 여부를 불문하고 지침 제4조가 적용되어 상대방 대리가 금지됨(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해설 제1항 참조).

(3)에 대한 답변

지침 제2조의 가목 내지 파목에 해당되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리가 금지됨(위 지침 제2조하목 참조). 여기서 금전대부계약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교부 및 이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계약을 의미함(지침 제4조 참조).

그러나 사안과 같이 보험모집인이 그 직원과 장래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지침 제4조의 금전대부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 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12. (322)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상 대부업자도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질의내용**

협회가 발간한 『공증과신뢰』 2017년도 통권 제10호 337면에서는,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더라도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업자도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대부업자는 이자를 약정하든 하지 않든 지침이 적용됨.⁸⁾ 위 해설은 대부업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고로 할 사항임.

13. (326) 대부업자가 다량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대부업자가 하루 10건 내지 30건 정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대부업자가 하루에 수십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촉탁하는 것은 가능함.⁹⁾ 다만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것은 불가함.

14. (3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규정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적용 여부?

□ 질의내용

2019. 6. 1.자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12%로 인하되는데, 그 지연손해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8) 집행증서 작성 사무지침 제2조제2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같은 지침 제4조 소정의 금전대부계약을 하면, 이자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지침 제4조가 적용되고, 같은 지침 제2조제2호하목에 해당되는 자(=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무이자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A대부업자가 무이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지침 제4조가 적용됨.
- 예를 들어, 주류회사가 자신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이자 없이(지연손해금은 있음) 금전을 대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부계약은 지침 제2조제2호하목 소정의 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9) 다만 동일 촉탁인(대리인이 다른 경우도 포함)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50건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받아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 건수, 증서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공증사무지침, 2013. 10. 1. 제정] 제8조 참조).

□ 답변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만 함)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 6월 1일부터는 그 법정이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됨(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그러나 소촉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 소촉법상의 법정이율 연 12%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의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15. (329) 주채무자는 모친이고, 2011년생인 미성년자인 자(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주채무자는 모친이고, 2011년생인 미성년자인 자(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불가함(민법 제921조 참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2017. 6)의 예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

1.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대판 70다2916)
2.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71다1113)
3.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

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대판 75다2340)

4.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포함)
5.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7. 자녀의 재산으로 친권자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친권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미성년인 자에게 증여하는 것(대판 81다649)
2.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대판 88다카28044)
3.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대판 97다4005)
4.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96다10270)
5. (친권자가 대리하여) 미성년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 (친권자가 대리하여) 미성년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7.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8.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9.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대판 88다카28044).

16. (341)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변제계약 방법?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2명인데, 총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남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총 채무금 1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채무자A, B가 변제하고, 3,000만 원은 채무자 B가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따로 따로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지급하는 관계인지 여부를 증서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히 향후 채권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나 집행문부여의 경우에 권리의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17. (362) 채무자가 다수이면서 연대채무자일 경우 관계자표시 방법 등?

□ 질의내용

공정증서 작성시 채무자가 다수이고, 이들이 연대채무자일 경우, 첫째, 관계자표시에 모두 “채무자” 라고만 표시하고, 공정증서 본문에 연대채무임을 나타내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둘째, 관계자표시에 모두 “연대채무자” 라고 표시하고, 공정증서 본문에는 연대채무자임을 나타내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지?

셋째, 관계자표시에 “채무자” 와 “연대채무자” 로 나누어 표시하고, 공정증서 본문에는 연대채무임을 나타내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지?

넷째, 모든 경우에 공정증서 본문에 연대채무임을 나타내는 조항을 삽입해줘야 하는지?

□ 답변내용

채무자가 다수이고, 다수당사자의 관계가 연대채무일 경우 실무상 통상의 관계자표시 및 공정증서 본문(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기재례는 다음과 같음.

(1) 관계자표시에 모두 “연대채무자” 로 표시하고,

(2) 공정증서 본문(변제기한과 방법)에

- ① 일시불 변제시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변제하되, ○○○○년 ○○월 ○○일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

- ② 분할 변제시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년 ○○월 ○○일까지 금 ○○
○원정, ○○○○년 ○○월 ○○일까지 금 ○○○원정 분할변제한다.” 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변제하되, ○○○○년 ○○월 ○○일까지 금 ○○○
원정, ○○○○년 ○○월 ○○일까지 금 ○○○원정 분할변제 한다.”
따라서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가 연대채무일 경우 실무상 위 질의 첫 번째와
같이 “변제기한과 방법”에만 연대채무임을 표시하여 기재하기도 하나, 위 기
재례와 같이 “관계자표시 및 변제기한과 방법”에 모두 연대채무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¹⁰⁾

18. (366) 채권자는 회사, 채무자는 개인인 경우 채권자의 직원이 쌍방대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채권자가 회사이고, 채무자는 개인인 경
우에 회사직원이 양쪽을 다 대리할 수 있는지? 이자는 없고, 회사는 일반회사임.

답변내용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에만 대리권이 제한됨. 질의한 사안은 쌍방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19. (378) 연대보증인의 책임 면제 여부?

질의내용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15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하고 나서 2년 뒤에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15억 원에 대하여 다
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연대보증인은 책임이 면제되는지?

답변내용

10) 당해 채무가 증서를 보아서 연대채무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면 됨. 따라서 증서 제10조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채무로 한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임.

두 개의 증서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됨.

즉, 주채무자는 앞서 작성한 증서에 관한 채무 15억 원(연대보증인이 있는)과 뒤에 작성한 증서에 관한 채무 15억 원(연대보증인이 없는) 합계 총 30억 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공증인은 채권자가 각각의 증서에 관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면 둘 다 부여해 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나중에 작성하는 증서가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공증인도 알았다면 만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게 아니고 종전 공정증서에 해제부기도 함께 하도록 조언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해제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공정증서에 기해서도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20. (390) 불가분채권자일 경우에 공정증서 정본을 채권자마다 교부하는지?

□ 질의내용

불가분채권자일 경우에 공정증서 정본을 채권자마다 교부하는지?

□ 답변내용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에게 정본을 교부하는 것은 후일 강제집행을 위한 것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집행절차로 나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에도 채권자 전원에게 모두 정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음. 공증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에도 정본은 1통만 교부하는 것이 보통임.11) 등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정본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를 청구자에게 증명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

21. (395)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에 관하여?

□ 질의내용(2019. 12. 24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금액이 1억 원인데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을 1

11)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채무자마다 등본을 부여하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등본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임.

억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와 관련이 있는지?

□ **답변내용**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기재하고 있음. 원본과 이자, 연체이자의 합산액이 보증채무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임. 이자제한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주채무의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보호법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 23372 판결).

22. (398) 양도담보 목적물로 모래가 가능한지?

□ **질의내용(2019. 12. 30.질의)**

모래를 소재지, 부피를 특정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동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임.

23. (415)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의미

□ **질의내용(2020. 2. 13. 질의)**

주채무자인 차용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 **답변내용**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주채무금에 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이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가령 주채무의 변제가 보증기간 중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보증기간안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됨. 만일

주채무의 변제기가 보증기간보다 뒤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할 이자에 대하여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됨.

따라서 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

결론적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만 집행증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중 원금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항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증실무상 채권자 입장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증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할 필요는 없음.

(2) 약속어음 공정증서

24. (261) 약속어음 용지의 사본에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내용

약속어음 용지의 사본에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어음의 발행은 법정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는 요식행위임.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사본을 사용할 수도 있음.

25. (264)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불가함.12)

만일 채권자가 약속어음 발행인뿐만 아니라 수취인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을 얻고자 한다면 발행인과 수취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할 필요가 있음.

26. (340) 영농조합법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도 주식회사처럼 제한되는지?

□ 답변내용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사업자이므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2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로 규정하고 있음.

(3) 유언공정증서

27. (251) 미국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미국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결격사유조회를 하는 방법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미국의 시민권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12)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경우 어음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발행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양수인이 수취인(양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서공증을 받아야 함(『공증실무』 제97쪽 하단 주 4) 참조).

있음. 유언집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결격사유조회를 할 방법이 없음.13)

28. (258) 타인 명의 부동산의 유증 여부 등?

□ **질의내용**

- (1) 유언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유증할 수 있는지?
- (2) 수증자가 부동산을 유증을 받고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유증도 가능한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한 경우도 있음.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음.14)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

만약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음(민법 제1087조제1항 및 제2항).

즉, 유증의 내용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있어서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로써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경우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13) 따라서 공증인은 유언자에게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후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길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음.

14) “원칙적으로 …… 그 효력이 없음.” 부분을 “원칙적으로 유효함. 다만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음.”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그 유증은 유효함.

예컨대 유언자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한다고 하면서 그 유언과 관련하여 만일 그 부동산이 유언자 사망 시까지 유언자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유언한 경우에는 위 민법 제1087조 단서에 해당되나, 단순히 타인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것만으로는 유증을 관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그 유증은 무효라고 할 것임(『주석민법』, 김주수 저, 2002판 251면 내지 252면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지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여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내용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2)에 대한 답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자기,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시키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함.

따라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유증받고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증은 일종의 부담부 유증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취지의 유증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29. (262)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필요 유무?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한지?

□ 답변내용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수증자를 특정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것임.

(수증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은 아님.

30. (267)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체물 등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 현금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31. (284) 유언 공증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등?

□ 질의내용

- (1) 유언 공증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 (2)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면서 대리촉탁하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방법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유언(유증 포함)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 또는 대리가 필요 없고 법정대리인을 표시할 필요도 없음. 유언집행 단계에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문제와는 다름.

(2)에 대한 답변

성년후견인인 사실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 증명하는 것이 원칙임. 법원의 심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서 외에 확정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

32. (292) 미성년자인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미성년자인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결격사유 규정(민법 제1098조) 외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듯이(서울지법 1995. 4. 28.자 94파 8391 결정), 수증자의 법정대리인 역시 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음.

33. (297)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수증자의 일반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수증자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일 경우 그 수증자의 일반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결격자에는 민법 제1072조제1항의 결격자(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와 민법 제107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가 있고, 위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각호의 참여인 결격자(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 그리고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실상의 결격자(예컨대 유언 구술을 들을 수 없는 사람)가 있음.

수증자의 일반직원의 경우 위 법 제33조제4호의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확실해지겠지만 그러한)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참고로 유언자의 청구 또는 동의에 의하여 수증자의 직원이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단서(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여 증인의 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음(『공증과신뢰』 2018 통권 제11호 51면 이하, 남상우, “민법 제1072조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참조).¹⁵⁾

34. (302) 채무 면제 유증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1) 채무를 면제해주는 유증이 가능한지?
- (2) (가능하다면) 위 채무면제액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이른바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유언(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임.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채무면제에 관한 유언이란 있을 수 없음.

다만,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채무의 면제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는 곧 채무자에 대한 유언자의 채권을 채무자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므로 공증인은 유언자가 채무를 면제한다는 유언을 하겠다고 한다면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증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유언자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갖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에 대한 답변

(1)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의 면제의사를 채권의 유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채무면제는 곧 채권의 유증으로서 그 채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할 것임.

35. (309) 유언자 성명의 한자음이 주민등록증과 기본증명서가 다른 경우?

□ 질의내용

- 15) 다만 대법원은 현재까지는 일관되게 유언자가 참여를 청구한 경우 유언자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 자라도 참여인(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판결,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등)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유언자의 성명이 예컨대 주민등록증에는 강창율이고, 기본증명서에는 강창률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한자음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따른 성명과 다른 증명서에 따른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강창율[姜昌律, 기본증명서상의 성명 강창률].

36. (321) 유언공증 목적물가액 산정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 질의내용

유언공증 목적물가액 산정시 공시지가 이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 답변내용

유언공증의 목적물 가액 산정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목적물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되므로, 공시지가 이외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나타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됨.¹⁶⁾

37. (324) 기존 유언공증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질의내용

기존의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에 유언철회의 공증을 먼저 하고 새로운 유언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지?

16) 목적물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시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이므로,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부동산등기부의 최근 실거래가 기재)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이 없을 때 차선택으로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답변내용

두 방법 모두 가능함. 하나의 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임.
 철회된 종전의 유언증서에는 연필로 새로운 유언으로 철회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편리함. 철회된 유언에 관하여는(특히 유언자의 사후에는 더욱 더) 정보이나 등본의 발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38. (334) 기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경우?

□ 질의내용

유언자가 기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별지1목록 - 수증자 A, 별지2목록 - 수증자 B)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별지2목록과 관련해서만 수증자를 B 이외에 C 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1) 기존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그대로 두고, 별지2목록에 대해서만 수증자를 변경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 (2) 별지2목록과 관련하여 새로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별지1목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유언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유언자 마음대로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둘 이상의 유언이 서로 경합할 때에는 사망에 가까운 시기의 유언이 유효함.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1), (2)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임.

39. (343) 유언공정증서 수증자와 증인의 이해관계?

□ 질의내용

증인이 유언(촉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수증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음(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
또한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함(공증인법 제33조제3항제4호).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는 유언자의 상속인, 당해 유언에 앞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함.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유언으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임.

따라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
서 등을 제출받아서 확인하여야 하고 나아가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언
자와 증인에게 물어서 증인이 상속인이거나 선포괄수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물론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것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수증자
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받아야 함.

40. (344)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판단?

□ 질의내용

진단서상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으나, 공증인이 면담한 바
인지능력과 의사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
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
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1068조).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지 여부는 유언자가 “인지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
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
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함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¹⁷⁾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결국 유언공정증서 가능한지 여부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유언자가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있는지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공증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41. (345) 유언자 관련서류로 수증자를 특정하여 유언공증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유언자가 수증자의 협조 없이 유언공증을 하고자 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수증자 관련서류(기본증명서 등)를 현실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언자가 수증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유언자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경우 수증자 관련서류 없이 유언자 관련서류로 수증자를 특정하여 유언공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증자 관련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수증자를 특정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언자의 관련서류로 수증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수증자 관련서류 없이 유언자 관련서류로 수증자를 특정하여 유언공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42. (350)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의 서식은?
미성년후견지정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윤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후견감독인 지정의 유언공정증서 서식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17) 본 판례 사안은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에 관한 사례임. 유언에 관한 의사능력이나 구수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움.

사용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민법 제931조제1항 본문).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인 지정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에 관하여는 서식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제 29호(의2) 서식(의 유언집행자 지정)을 활용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함.

참고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음(민법 제940조의5).

43. (351) 유언공정증서 수증자가 비영리사단법인일 경우 구비서류는?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비영리사단법인일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답변내용

(수증자 특정을 위해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충분할 것임.

44. (352) 외국인이 자국의 수증자에게 국내재산을 유증하면서 증인은 한국인으로 하는 경우?

□ 질의내용

대만국적의 유언자가 대만국적의 수증자에게 국내에 소재한 예금, 임대보증금채권, 주식 등을 유증하는 경우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증인은 한국인으로 할 예정임.

□ 답변내용

유언은 유언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며(국제사법 제50조제1항),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국지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함

(국제사법 제50조제3항).

대만법에 반정의 규정이 없는 한 대만법이 유언에 관한 준거법임.

그러나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행위지법(사안의 경우에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음
(국제사법 제9조제2항제4호).

따라서 우리 공증인법에 의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됨.

45. (355) 유언공증 시 비상장주식의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 질의내용

유언공증 시 비상장주식의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면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유언공증의 목적물 가액 산정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목적물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액면가액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임.

46. (357) 유언공증의 수증자가 국가일 경우 수증자 표시방법?

□ 질의내용

유언공증의 수증자가 국가일 경우 수증자 표시방법?

□ 답변내용

유언공증의 수증자가 국가일 경우 공정증서상의 수증자 표시를 “대한민국”, “국” 등과 같이 수증자가 국가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로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음(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47. (358) 유언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참여인의 표시 방법?

□ **질의내용**

- (1) 유언공증에서 유언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서명지에 참여인의 서명날인 등을 하는 외에 참여인의 인적사항도 증인 표시 밑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2) 촉탁서에 참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공증인법 제29조제1항 및 제59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인의 주소, 직업, 성명, 나이(실무상 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하고(공증인법 제35조제9호), 참여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8조제3항).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여인을 참여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증인 표시 밑에 참여인의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임.

(2)에 대한 답변

실무상 참여인도 촉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함.
참고로 유언공증의 경우 증인이 참여인을 겸해도 무방함.

48. (361) 시각장애인인 유언자가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영화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의 촬영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면 참여인을 참여시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참여인도 겸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임.

공증인은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 공증인법에는 동영상의 촬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촬영할 의무가 없음.

당사자가 유언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공증인 본직의 재량사항임.

49. (364) 유언철회 공정증서 작성절차?

□ 질의내용

유언철회 공정증서 작성절차?

□ 답변내용

유언철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행해짐.¹⁸⁾

다만 공증인, 증인 등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50. (368) 병상 유언 시 증서 작성을 현장에서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병상에서 유언하는 경우에 증서의 작성을 현장에서 모두 하여야 하는가?

□ 답변내용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내용을 구수함.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필기함.

유언자와 증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면 서명날인하게 하고 공증인도 서명날인하여 증서 작성을 완료함.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편의상 유언내용을 미리 정리한 경우에도 유언자의 구수행위, 유언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및 증인의 서명날인 행위와 공증인의 서명날

18) 유언철회 자체가 유언사항이기 때문임.

인 등은 현장에서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¹⁹⁾

51. (371) 수증자 등이 유언자의 위임을 받아 정보 분실 등을 이유로 유언공정증서 정보 발급 청구가 가능한지?

□ 질의내용

제3자 또는 수증자 등이 유언자의 위임을 받아 정보 분실 등을 이유로 유언공정증서 정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56조제1항). 이러한 정보 발급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함(공증인법 제46조제2항 및 제31조). 따라서 유언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유언공정증서 정보 분실 등을 이유로 유언공정증서 정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유언자의 추정 상속인, 유언공정증서의 수증자 등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유언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정보 등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52. (373)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부동산 일부를 세금문제로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유언 목적 부동산 지분 일부를 세금문제로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 기존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한지?

□ 답변내용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봄(민법 제1109조).

유언 목적 부동산 지분 일부를 세금문제로 수증자에게 미리 생전 증여하는 것이라면 그 생존행위로 인하여 그와 저촉되는 유언부분(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부동산 지

19) 현장에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실무상 정보를 현장에서 유언자에게 교부함.

분 부분)만 철회되고, 나머지 유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임.

53. (375) 예금채권도 유증 목적물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예금채권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재산권에 속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유증할 수 있음.

다만, 재산권에 속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이를 유증할 수도 없음.

예금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지만 이는 계약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그칠 뿐 일신에 전속한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예금채권을 계약이 아닌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예금채권을 유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

수수료는 유언증서 작성일 현재 예금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54. (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증자가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임.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유증은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가능함[위 '34.(302)' 참조].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증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임.

55. (377) 유언자가 파킨슨병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 유언공증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유언자가 파킨슨병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 유언공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1068조).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지 여부는 유언자가 파킨슨병 초기진단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함(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²⁰⁾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참여하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 본 판례 사안은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에 관한 사례임. 유언에 관한 의사능력이나 구수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움.

이때 참여한 의사의 공증인법상 지위는 이른바 '특수한 참여인'(『공증실무』 105면 참조)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언자가 아직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형식적으로는 임의적 참여인에 해당함.

56. (381) 유증 목적물이 고가의 그림인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은?

질의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유증 목적물이 고가의 그림인 경우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유증 목적물이 고가의 그림의 경우 그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구입영수증, 매매계약서 등)를 토대로 산정하면 됨.

57. (383) 수증자가 한국 국적이지만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질의내용

수증자가 한국 국적이지만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답변내용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수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로도 특정할 수 있음. 증서에 수증자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후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주소를 증명하면 될 것임.

58. (401)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별지 제29호의3 서식 문구 수정 여부?

질의내용(2020. 1. 9. 질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별지 제29호의3 서식에는 "..... 본 공증인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로 되어 있는데, 공증인이 증인과 면식이 있는 경우(이해관계는 없음) 위 문구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 신원 확인방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증인결격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촉탁인 신원 확인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 확인)에 따라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해석 됨. 따라서 공증인과 면식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할 필요는 없음(공증인법 제27조제1항 참조). 다만, 공증인과 면식이 있는 촉탁인에 대하여는 면식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공증인과 면식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도 면식부가 작성되어야 함.21)

또한 공증인과 면식이 있는 증인이 유언에 참석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3 서식을 사용할 때 당연히 '증인 000에 대하여는 본 공증인과 면식이 있고 나머지 관계자 등은 ~ 확인하였다' 등과 같이 그 내용을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59. (411) 수증자가 단체인 경우의 유언집행자?

□ **질의내용(2020. 1. 14. 질의)**

유언공증 시 수증자가 단체인 경우의 유언집행자는 증인이거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유언집행자가 증인이어야 한다거나 수증자 또는 수증자인 단체의 대표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음.

(4) 인도집행 공정증서

60. (285) 단기사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차건물인도반환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21)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참조

임차건물인도반환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단기사용(3개월)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3개월이라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에는 인도 또는 반환기일이 증서작성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임차건물인도반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5) 강제집행 관련

61. (279) 집행문 수통부여의 경우 필요한 소명자료는?

□ 질의내용

집행문 수통부여의 경우 필요한 소명자료는?

□ 답변내용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9조임.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와 제59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에 따름. 그러므로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제55조에 따라야 함.

법원사무관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제35조제1항), 공증인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민사집행법 제32조와 제35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공증인의 집행증서에는 재판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8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통부여 또는 채도부여 받을 수 있음.

수통부여에 대한 소명자료는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추측이 공증인에게 생길 수 있게 하는 자료(예컨대,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들 등)임. 물론 채권자의 구두 소명으로 공증인에게 위와 같은 추측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 물적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수통부여가 가능함.

62. (296) 승계집행문 송달 시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승계집행문의 송달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상속인들 3명(채무자의 처, 큰 딸, 작은 딸)에게 송달하였음. 처와 큰 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작은 딸은 송달불능 되었음. 작은 딸의 송달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임. 채권자는 작은 딸의 주소가 따로 되어 있지만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온다면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함.

어머니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작은 딸에 대하여는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본인의 주소지가 판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은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한 송달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
 단순히 채권자의 진술만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송달이 될 수도 있음.

63. (298) 폐쇄된 공증사무소에서 인수받은 공정증서 촉탁위임장에 채권자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정사항은 있으나 정정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질의내용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서류를 인수받았는바, 채권자 대리인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촉탁위임장에 채권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일도 수정되었으나 정정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문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문 부여신청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증인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 ①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이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판결의 경우에는 후에 소의 취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 등 실효사유가 없어야 함)
- ③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건물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채무 전부의 변제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사실이 증서의 원본에 부기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 ④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조건은 집행권원 자체에 표시된 것에 한하므로 집행권원만을 조사하면 됨.)
- ⑤ 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을 것 등을 심사하여야 함.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어야 함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2014년판(하드커버가 아닌 일반표지로 된 책) 200면 내지 203면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과 그 원본이 작성된 원인서류인 공증촉탁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그 위임장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까지 집행문을 부여하는 공증인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집행증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증서에 기재된 청구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함. 법 제25조는 ‘공증인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위반한 증서는 집행증서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이 규정은 공증인에 대한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작성된 증서를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법상 불성립 또는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집행증서는 일응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2014년판(하드커버가 아닌 일반표지로 된 책) 181면 참조).

따라서 집행문을 부여하는 공증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의 원본을 대조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위와 같이 심사하면 족하지,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원인서류인 촉탁위임장의 내용의 진정성 여부까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근거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물론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별개라 할 것임.

64. (303) 청산종결된 법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청산종결된 법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청산종결된 법인의 경우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1.

4. 30. 90마672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의 경우 위와 같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청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65. (319)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들 중 1인이 단독으로 집행문 부여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1) 채권자 여러 명이 동일한 채무자와 사이에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가 불가분채권인 경우 채권자들 중 1인이 단독으로 집행문 부여신청이 가능한지?

(2) 채권자 여러 명이 동일한 채무자와 사이에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관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예 : 단순히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

○○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불가분채권관계로 추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채권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불가분채권의 경우 1인의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1인에게 이행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민법 제409조). 따라서 채권자 여러 명이 동일한 채무자와 사이에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가 불가분채권관계인 경우 채권자 중 1인이 그 증서(정본)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공증인은 그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

(2)에 대한 답변

채권자 여러 명이 동일한 채무자와의 사이에 하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관계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상에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를 불가분채권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분할채권관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됨.

이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이를 불가분채권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신정식 저(著) 공증인법개설 137면 참조]가 있으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관계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408조), 공정증서에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 여전히 분할채권관계가 되는 것이지, 단지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보임.

66. (320) 채권자들의 관계가 분할채권관계이나 각자의 채권금액이나 비율이 공정증서상에 정하지 않은 경우?

□ **질의내용**

채권자 2명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가 분할채권관계이나 각자의 채권금액이나 비율이

공정증서상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그 채권자들 중 1명이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금액 1억 원 중 1/2인 5,000만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 답변내용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음(민법 제408조).

따라서 채권자가 2명이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분할채권관계이나 공정증서상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그 중 1인이 집행문 부여 신청시 채권자 2명이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채권금액의 1/2인 금 5,000만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²²⁾

67. (336) 승계집행문 부여 시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인증 여부?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이후 승계집행문의 부여와 관련하여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여야 하는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채무자도 함께 계약하였으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내용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여야 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계약서 작성 당시에 적법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면 승계집행문부여시를 기준으로 3개월을 넘었더라도 무방함.

또한 채무자가 양도양수계약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50조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의 통지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님.²³⁾

22) 이러한 불편을 없애려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68. (338) 집행권원의 송달?

□ 질의내용

채무자가 2명인데 그 중 1명에게만 등본을 교부한 경우에 등본을 교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24)

□ 답변내용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59조에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법 제57조).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함(민사집행법 제59조제1항).

강제집행은 판결(공정증서)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할 때에만 개시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

공정증서의 정보 또는 등본이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함(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 본문).

다만 공증인법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보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보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봄(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 단서).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함(공증인법 제56조의5제2항).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 등을 준용함.

공증인이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봉투에 제14호 서식의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며, 제13호 서식의 통지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채무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전원에게 공정증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공증촉탁서(제8호 서식)의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여 그 등본교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또한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제32호 서식의 해당부분에 그 수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방법임.

24) 질의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등본 교부나 송달은 집행개시에 대한 문제임.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집행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집행개시 요건을 불비한 것이 됨.

(예문)

정본은 채권자 ○○○에게,
 등본은 채무자○○○, 채무자 ○○○,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의 대
 리인○○○에게 교부한바,
 공증인이 정본이나 등본,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송달한 경우에는 제16호 서식에
 따라 송달증명서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함.

질의한 사안에서는 증서에는 “등본은 채무자○○○, 채무자 ○○○에게” 와 같이 모
 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채무자에게만 교부하였고, 1채무자만 수령사항에 서명날
 인하였다고 함.

2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면 이제라도 등본을 송달하여야 할 것임.

공증인은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증서등본의 송달을
 신청하도록 하여 처리하여야 함.

69. (339) 조건성취집행문의 사무처리방법?

□ 질의내용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방법은?

□ 답변내용

판결(공정증서)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줌(민사
 집행법 제30조제2항).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함(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본문).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는 재
 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함(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단서).

집행문부여 소송의 결과 “공증인○○○사무소 20○○년 제○○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 ○○○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권

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함.

판결(공정증서)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에는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9조제2항).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9조제3항).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조건성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증명서란 영수증, 공탁서 등이며, 사문서여도 무방함. 그러나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공증인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등본과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70. (347) 집행문 재도부여 시 사용증명원 등 요구 근거는?

□ 질의내용

집행문 재도부여 시 사용증명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 답변내용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교부한 집행 정보가 분실,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다시 부여하는 것임.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밝혀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항제3호, 민사집행법 제35조제2항 및 제57조, 『공증실무』 제236면 참조). 또한 집행문을 재도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재교부 청구가 있어야 하고, 공증인은 정보 재교부를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함(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 이는 정보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임.

정보를 강제집행에 사용중인 상태에서 재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원을 제출시킴(『공증실무』 제167면 참조).

71. (349) 법원에서 환부받은 집행문으로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 (1) 이미 발급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한 결과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집행문을 환부받았음. 이 집행문으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2) 채권금액이 크다면 위 집행문 이외에 다시 2통의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법원에서 환부받은 집행문으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2)에 대한 답변

1통의 집행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음.²⁵⁾ 필요한 통수만큼 수통을 부여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문 자체를 공증인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음. 법원에서 집행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임.

72. (354) 채권 일부 양도의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

□ 질의내용

금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하여, 50억 원 중 3억 원을 양도한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채권의 일부도 양도양수할 수 있음.

채권 일부의 양수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

집행문에는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채무자○○○에 대하여 금 3억 원에 한하여 채권자○○○의 승계인 ○○○(채권양수인)에게 이 집행문을 부여한다” 와 같이 기재함.

공정증서 원본에 정보 및 집행문 발급사실(공증인법 제40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외 일부 채권양도 취지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25) 다만 수통부여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73. (363) 공정증서 정본, 등본, 원본 멸실시 집행문 부여 거부?

□ 질의내용

공정증서 정본, 등본, 원본 멸실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1) 공정증서 정본 분실 시에는 채권자로부터 분실사유서를 제출받고 정본을 재발급한 다음 집행문 부여가 가능함.
- (2) 공정증서 원본 분실(멸실) 시에는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정본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 보관하고(공증인법 제41조제1항 참조, 공증업무 주요질의 회신<2010. 6. 15.회신> 『공증과신티』 2011년 통권 제4호 287페이지 참조), 원본 대신 보관하는 증서를 토대로 정본을 발급하여 집행문 부여가 가능함.
- (3) 공정증서, 원본, 정본, 등본 모두 분실 시에는 사실상 집행문을 부여할 방법이 없음.

74. (365) 집행문 수통부여 시 반송 방지를 위해 ‘환부 불필요’를 기재하면 되는지 등?

□ 질의내용

- (1)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시 반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부 불필요” 라고 기재하면 되는지?
- (2) 공증인은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와 관련하여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공증인은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이미 집행문을 부여하였는데 다시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5조제2항).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되, 반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좌측 중간에 “환부 불필요” 라고 기재하여 발송함(공증실무 제177면 참조)²⁶⁾.

26) 우편법 시행규칙이 2018. 2. 19. 개정되면서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우편

(2)에 대한 답변

공증인은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제도부여와 관련하여 우편송달 보고서 또는 송달 불능 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참고로 공증인은 승계집행문이나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의 경우와 같이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신청을 받아 제14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여 집행문이나 증명서 등본에 대하여 특별송달(이 경우 봉투 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함)을 하고, 그 송달 결과에 따라 제15호 서식을 이용하여 송달증명 또는 송달 불능 증명을 해줌(민사집행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의4제1항 및 제2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2조제2항 등 참조).

75. (370) 원본멸실의 경우 집행문 부여?

질의내용

원본 멸실의 경우에 일단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고, 그 후에 인가절차를 받아서 보관하는지? 아니면 인가이후에 집행문부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증인법 제41조에 따라 정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 다음, 보존한 정본을 원본으로 삼아 새로 정본을 발급하고 그에 집행문을 부여함.

76. (380) 상속인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질의내용

공정증서 채권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도 사망하여 그 망 상속인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문의 기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연혁 참조).

다음과 같이 집행문을 기재하면 될 것임.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망 ○○○의 승계인 망 △△△(주민등록번호)의 승계인 □□□(주민등록번호)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77. (389) 법인 합병과 승계집행문?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폐쇄등기부 등본에 △△주식회사에 합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가 승계인으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경우?

□ 답변내용

집행권원에 기재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집행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임.

승계집행문부여의 경우에는 집행문(집행증서 포함)과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57조 및 제39조). 또한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인의 주소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20조제2항).

[승계집행문 예문]

.....
채권자○○주식회사의 승계인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시 ○○구 ○○길 ○
○, 법인등록번호 ○○○○○○-○○○○○○○○)에게
이 (승계)집행문을

78. (393)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경우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질의내용(2019.12.17. 질의)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경우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집행문부여에 있어서 심사할 사항은,

- ① 공정증서의 정본과 원본의 대조
- ② 증서작성일부터 7일 경과(인도집행증서는 1개월 경과)
- ③ 해제부기가 있는지
- ④ 승계집행문-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승계가 증명되는지
- ⑤ 조건성취집행문-신청인 제출 증명서로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는지 등임.

그러나 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님.
채권의 변제여부, 일부 금원이 변제되었는지 여부, 그 금액은 심사할 사항이 아님.

79. (406) 제3자 채무인수와 승계집행문 부여?

□ 질의내용(2020. 1. 16. 질의)

- (1)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하고, 채권자가 이에 승낙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 (2)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집행문 등을 특별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결 2010. 1. 14. 2009그196 참조).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사서인증받은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및 채권자 승낙서와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증명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 경우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서나 채권자의 승낙서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에 대한 답변

위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무자의 승계인인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인 면책적 채무인수인에게 집행문과 증명서의 등본 등을 특별송달하면 될 것임.

[참고]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80. (408)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도부여 가능한지?

□ 질의내용(2020. 1. 29. 질의)

2018년 5월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증서를 분실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분실사유서를 제출받고 새로 정보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하여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함.

81. (410) 가입료 해제와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 질의내용(2020. 1. 14. 질의)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공정증서 제7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 해당 여부?

□ 답변내용

제7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등본과 집행문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문언상으로는 신청을 받은 때에 조건이 성취되지만, 신청의 결과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를 위협이 있어야 조건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라고 할 것임. 따라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이미 강제경매,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관하여는 제7조의 신청을 신청 그 자체로 해석하여 설령 그 신청이 취소되었다라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공증인은 조건성취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는 것이 상당하며, 채권자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 집행문부여결정문을 제출할 때에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채권자는 집행문부여결정을 송달받으면 그 결정정보와 집행권원 정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며, 이때에 공증인은 당연히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 먼저 집행문을 부여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후일 집행문부여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어 집행절차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82. (412) 집행문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질의내용(2020. 1. 28. 질의)

2007년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신청하면서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세무서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자료가 아님.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해산상태인지 청산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며,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음.
 청산 종결의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산간주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지
 않음. 이때에는 해산간주 등기가 될 당시의 대표자가 (대표)청산인으로서 회사를 대표함.

**83. (414) 공정증서 원본에 집행문 부여 취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한지?**

□ 질의내용(2020. 2. 5. 질의)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인계받은 공정증서 원본에 기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 월, 일이 기재되어 있고,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은 되어 있으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 월, 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함(공증서식
 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후 원본에 이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은 기왕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사실을 원본에 기재함으로
 써 추후 집행문 재도부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등의 취지로 보일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유효하게 작성된 공정증서 원본의 효력에 영
 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한편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교부한 집행정본이 분실,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다시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에 부여한 집행문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제출되는 등으로 집행문 재도부
 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증서 원본 자체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단지 위 서식
 규칙상의 기존 집행문 부여와 관련한 공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문 재도부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6) 기타

84. (277) 보관기간이 지났으나 미폐기된 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 여부?

□ 질의내용

보관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폐기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초록등본을 교부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든지, 인수하여 보관한 서류든지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서류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본을 교부하여야 함. 보관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음.

부속서류의 일부에 대하여 관하여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초록등본을 작성함. 초록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함(공증인법 제53조, 제52조제1항 및 제2항).²⁷⁾

85. (278) 전부 변제가 아닌 경우 해소부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전부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해소부기를 할 수 있는지? 채권자 3명 중 2명 부분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1인 부분은 변제가 되지 않았음.

□ 답변내용

해소부기는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는 것임(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일부의 해소사실을 부기할 수는 없음.

27) 부속서류 전부에 대하여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초록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을 필요가 없음.

부기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공증인법 제56조의4제2항).

86. (281) 집행문부여 신청 시 제출받은 신청서 등에 대하여 등본신청하는 경우?

□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 할 때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등본 신청하는 경우 공정증서나 그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신청과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50조제1항). 이러한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청구권은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된 공증사항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증인법 제50조제1항의 부속서류에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부속서류뿐만 아니라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 할 때 제출받은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87. (306) 인감증명서 원용에 대하여?

□ 질의내용

채권자의 대리인이 출석하고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원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원용할 수 있음. 원용의 법적 근거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임.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증명서를 원용할 수 있음.

다만 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원용을 금지하고 있음(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88. (348) 공증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증서에 대한 추후 보완의 구체적 방법은?

□ **질의내용**

공증인법 제31조제3항은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이 있는 경우 추후 보완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추완의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한 자료가 있는지?

□ **답변내용**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함(공증인법 제31조제3항). 그 추후 보완하는 방식은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증인 앞에서 그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임.

그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은 실제법상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확인하는 효력을 낳는데 그칠 뿐, 효력이 없는 집행증서를 효력이 있는 집행증서로 전환되게까지는 하지 못함(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 2803 판결 등).

공증인법 제31조제3항의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에 관한 추완에 대한 설명과 그 작성례는 공증실무 제188면과 189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89. (359) 해소부기 시 이미 나간 정보 등을 회수해야 하는지?

□ **질의내용**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해소부기 시 이미 나간 정보 또는 집행정보를 반드시 회수 하여야만 해소부기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서 작성의 절차 등이 준용됨(공증인법 제35조의2제3항 및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참조).

공증인은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이 원본에 부기된 경우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공증인법 제56조의3제2항).

따라서 공증인은 공정증서의 해소부기 시 위와 같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해소부기의 절차를 준수하면 되고, 이미 발급한 정본 또는 이미 부여한 집행문이 반드시 회수되어야만(또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등이 있어 야만) 해소부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90. (372)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 인증문 등에 국적 표시 여부?

□ 질의내용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 증서 관계자표시(성명란) 또는 인증문에 외국 국적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면 됨(공증인법 제35조제2호).

이와 관련하여 촉탁인이 외국인일 때는 실무상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는 점(공증인법 제26조제1항)을 고려하여, 증서의 관계자표시란에 보통 외국인의 한글성명과 영문성명을 병기하고, 주소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거소지를 기재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주소를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고 나이난에는 제출된 신분증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난의 제목도 취지에 맞게 여권번호 등으로 바꾸어 기재함.

또한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이름 앞에 외국인의 국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임. 다만, 국적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증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인증문에서 촉탁인이 누구인지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임. 인증문에서는 촉탁인의 성명만 기재하므로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예) 중국인 홍길동(영문이름)

91. (38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거의 다 되어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 보존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10년으로 되는지?

□ 질의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거의 다 되어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 보존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10년으로 되는지? 10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원본을 폐기한 다음에 집행문부여의 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답변내용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은 보존기간의 기산점을 그 서류를 작성한 해 다음해 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음(동 규칙 제5조제2항).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데다가 보존기간도 10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여서 실무상 난점이 있음.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함(동 규칙 제5조제3항).

증서를 폐기한 후 집행문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멸실의 경우에 준하여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하여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서 원본 대신에 보존한 다음에 집행문을 부여함.

일본의 경우에는 증서의 보존기간은 20년으로 하되, 확정기한이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경과한 다음해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일본 공증인법 시행규칙 제27조 단서).

다 사서증서의 인증

(1) 사서증서의 인증 일반

92. (248)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건물관리단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법률행위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물관리단 (인)’으로만 기재하였음. 이와 같이 관리인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로서 현실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 현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인임. 어떤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법인의 대표기관이라고 함.

그리하여 법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임.

법인만 표시하고 현실적인 행위를 하는 자연인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자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인의 행위에 그치게 됨.

결국 ‘○○건물관리단 (인)’ 과 같이 기재한 문서는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음.²⁸⁾

93. (256)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주식 명의신탁계약도 부동산 명의신탁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증인이 인증을 거절해야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당연 성립됨.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관리단 사업 시행 등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위를 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25조 각 참조).

하는 계약인지?

□ 답변내용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중중, 배우자 (등) 사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공증인이 그에 대한 인증을 거절하여야 하지만, 주식 명의신탁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인증을 거절할 이유가 없음.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절함이 바람직함.

[참조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할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94. (257) 영어가 아닌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시 문서명을 영어로 표기해야 하는지?

□ 질의내용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사서증서 인증 시 문서명을 영어로 표기해서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외국어 사서인증 시에는 서식규칙상의 별지 제42호서식을 사용함.

위 별지 제42호서식은 문서명을 국어와 영어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외국어 사서증서상의 언어가 영어 외의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문서명은 국어와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임.²⁹⁾

95. (286) 본점과 지점 사이의 계약서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본점과 지점 사이의 계약서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본점과 지점은 모두 법인의 사무소에 불과하고 지점이 본점과 별도로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님.

본점과 지점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96. (394) 계약당사자가 법인사업자인데 지점이 당사자로 된 경우?

질의내용(2019.12.23. 질의)

계약당사자가 법인사업자인데 지점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법인의 지점은 법인과 독립하여 권리능력이 없음. 따라서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인의 지점을 표시하는 것은 사무의 소관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하며, 계약의 효력은 법인 전체에 미치고, 지점에 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97. (294) 여권의 영문 성명(권은희)과 다른 한국 이름(이은희)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대한 인증 여부?

질의내용

동일인 확인서의 작성자가 미국국적이고, 여권상 미국인 성명이 “권은희(영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 “이은희”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사서증서 인증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29) 필요한 경우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문서명을 괄호 속에 병기할 수도 있을 것임.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공증인법 제27조제2항).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27조제2항 단서).

사안의 경우 동일인확인서의 작성자가 미국인 성명 “권은희(영문)”로 되어 있는 경우 여권에 의하여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한국상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이은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증이 불가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작성자 명의를 이은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대한민국국적상실 전 성명 이은희)

와 같이 병기하는 것 정도는 무방하다고 보임.

98. (317) 작성일자가 장래의 날짜로 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여부?

질의내용

작성일자가 장래의 날짜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인증임. 사서증서의 작성날짜가 인증일 현재보다 장래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하다고 할 것임.

99. (332) 확인서 작성 이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으로 변경된 경우 및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질의내용

- (1) ① 주식회사 甲(대표이사 A)이 2019. 3. 12.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3. 말경 대표이사 B가 추가로 선임되어,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B인 경우 위 법인의 촉탁으로 위 확인서를 인증할 경우 인증문의 기재방법?
 ② 인증문에 문서작성 당시의 대표이사는 A이었음을 부기할 수 있는지?
- (2)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인증문에 변경 전 상호를 부기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 ① 사안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 A에서 공동대표이사 A, B로 변경된 경우, 위 확인서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이사 A, B 모두의 위임이나 촉탁이 있어야 함.
 이 경우 인증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촉탁인) 주식회사 甲 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B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 와 같이 기재하면 됨.
- ② “위 확인서에 기재된 (촉탁인) 주식회사 甲 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B(문서작성당시인 2019. 3. 12.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는 A 단독이었음)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 와 같이 인증문에 문서작성 당시의 대표이사는 A 단독이었음을 부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2)에 대한 답변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인증문에 변경 전 상호를 부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예) “위 확인서에 기재된 (촉탁인) 주식회사 甲(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乙) 대표이사 ○○○는 ……”

100. (369) 계약서 인증이후에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 질의내용

계약서 인종이후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에 처리방법?

□ 답변내용

인종 이후에 등부의 기재를 삭제하는 등은 허용되지 않음. 증서와 달리 해소부기도 없음.

별도의 합의서(예: 2000년 00월 00일 법무법인 00에서 2000등부00호로 인종한 계약서는 이를 무효화하기로 함)를 작성하여 인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101. (403) 영사확인을 받은 사서증서에 다시 사서증서 인종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2020. 1. 10. 질의)

캐나다에서 인종 받아 영사확인을 받은 사서증서에 대하여 다시 사서증서 인종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외국에서 인종 받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사서증서는 공문서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그 서류에 다시 사서증서 인종을 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번역문 인종을 하거나, 별도의 사서증서의 첨부서류로서 첨부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봄.

(2) 번역문 인종

102. (331) 별지 제45호 서식에 서약하는 사람은?

□ 질의내용

번역의뢰인이 번역인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온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서약하는 사람은 번역인이 아니라 번역의뢰인이 맞는지?

□ **답변내용**

별지 제45호 서식에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번역인이라고 할 것이나, 번역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번역인이 작성한 요약서,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그 번역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45호서식에 서약을 하면 됨.

단, 여기서 번역의뢰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서를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번역문 인증의 경우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함.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103. (249) 지배인 해임 의사록 인증 시 유의사항?

□ **질의내용**

지배인을 해임하는 의사록에 대한 인증 시 이사해임의 경우처럼 유의할 사항이 있는 지?

□ **답변내용**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의 권한임(상법 제393조제1항).

이사인 사실은 회사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04. (252) 주주총회 의장이 찬반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하여 소란이 발생한 경우 의사록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참석인증 시 의장이 안건에 대하여 실제 찬반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

으로 가결선포를 하여 소란이 발생하는 등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의사록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됨(공증인법 제66조의2제4항 및 제59조, 제25조,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의장이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의 실제 찬반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선포를 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05. (253) 주주명부와 영문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주주명부에는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문위임장에는 영문으로 “dong hon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주주명부와 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위임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워 인증이 불가함.

106. (255)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정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 질의내용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정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정관인증을 해주어도 되는지?

□ 답변내용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받기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법인 총회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이는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과 같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한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292조), 정관인증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회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상법 제543조제3항).

이는 발기설립하는 경우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소규모 회사의 신속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지, 정관 인증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 정관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 법인이나 정관 인증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증인은 얼마든지 의사록 또는 정관 인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임.

107. (260)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참석 인증 시에 공증인의 확인사항은?

□ 질의내용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참석 인증 시에 공증인의 확인사항은 무엇인지? 예컨대, 소집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또한 관련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등?

□ 답변내용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지침에 따라서 확인하여야 함.

공증인법 제25조에 따라 위법, 무효인 경우에 인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소집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³⁰⁾

30) 재건축조합은 주류 측과 비주류 측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여 절차 준수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즉, 적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108. (270)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도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이 필요한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도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이 필요한지?

□ 답변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시에는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하므로, 청문인증 시와 같은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참석인증의 경우에도 의사록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공증인이 촉탁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제2항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이것을 의미함.

109. (271) 주주총회 임시의장인 사내이사가 확인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사임할 예정이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시 확인서를 임시의장인 사내이사가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청문인증 시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결의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3항 본문). 따라서 확인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의장이나 해당 결의에 출석한 이사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임시의장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면 의사록을 인증할 수 없음. 따라서 재건축조합 총회의 경우 소집절차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공증인은 사안과 같이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촉탁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사임한 것이 분명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임서를 확인하고 이를 사본해 부속서류로 첨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110. (272) 주식 수에 따른 정관변경 주총 의사록 인증 가부?

□ 질의내용

발행주식수, 출석주식수, 찬성/반대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 다 음 -

발행주식수 : 82,320,915주, 출석주식수 : 29,479,967주

찬성주식수 : 28,724,240주 반대주식수 : 755,727주

인증촉탁주식수 : 25,346,450주

□ 답변내용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함께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청문인증의 경우) 해당결의를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함.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에 해당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상법 제434조), 그 의사록 인증을 위해서도 위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함.

사안의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2/3는 19,653,311.33주($29,479,967 \times 2/3$)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3은 27,440,305주($82,320,915 \times 1/3$)임.

인증촉탁주식수(25,346,450주)가 위 발행주식총수의 1/3(27,440,305주)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사록 인증이 불가함.

111. (273) 법인의사록 인증 시 정관의 확인방법?

□ 질의내용

법인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정관을 제출받을 때, 정관의 확인방법?

□ 답변내용

의사록 인증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정관은 사본도 가능함.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하여야 함.

정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함.³¹⁾

112. (280)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주명부 등에 표시하는 방법?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주명부 등에 표시하는 방법?

□ 답변내용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상법 제360조제2항).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총수를 기재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별도로 부기함이 바람직함.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주”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면 될 것임.

예) 주식의 총수 : 40,000주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5,000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35,000주)

113. (282) 조합총회 의사록 인증 시 제출받는 조합원명부에 오기가 있는 경우?

31) 의사록 인증의 부속서류로 정관을 받을 때에는 법인등기부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현재(엄밀히는 총회나 이사회 개최 직전) 정관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질의내용

조합총회 의사록 인증 시 제출받는 조합원명부에 3개 정도의 오기가 있는 경우 촉탁 대리인인 법무사가 이를 수정하고 법무사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조합원명부는 조합의 대표자가 작성하고, 조합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조합원명부에 오기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수정 역시 작성자인 조합의 대표자가 하고,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므로, 그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면서 조합인감이 아닌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

114. (283)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의 위임이 필요한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의 위임이 필요한지?

□ 답변내용

필요함.

구 공증인법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한 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그의 촉탁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었고 실무는 주주가 아니라면 촉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따라 처리되었음.

그러나 현행 공증인법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사람으로부터도 반드시 촉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따라서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사는 주주인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촉탁인이 되어야 하고 그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의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115. (287) 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 질의내용

1인 주주인 회사(사내이사는 2명)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

하는 경우 주식변동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세금 납부 영수증 등 1인 주주가 맞다는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법인 인감증명서 없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주식회사의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주주인 사실은 주주명부(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주주명부(별지 제33호서식)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공증인은 주식변동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주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만일 대표이사가 주주(특히 1인 주주)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아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거나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고, 법원에 소집허가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116. (295)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석한 의장과 이사들이 개인도장을 날인한 것만으로도 적절한 의사록이 되는지?

□ 답변내용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 373조제2항),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91조의3제2항).

날인할 인장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서명도 가능하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표이사는 의사록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관행이 있지만 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음.

117. (304) 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에 미성년자 도장도 날인하는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과 관련하여 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에 미성년자 도장도 날인하는지?

□ 답변내용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민법 제911조), 이 경우 친권자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함(민법 제909조제2항).

따라서 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주주인 미성년자의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는 것이 아님.

예시) 위임장 위임인란에

주주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공동친권자 부 ○○○ (인감)
같은 모 ○○○ (인감)

또한 법정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특정)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

참고로 법정대리인 자신도 주주로서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인란에 법정대리인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118. (305) 주주총회 보통결의 시 의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결수는 얼마인지?

□ 질의내용

주주총회 보통결의 시 의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결수는 얼마인지?

예컨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주, 출석주식수 40주, 출석주식수 중 찬성주식수 22주인 경우.

□ 답변내용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상법 제 368조제1항).

사안의 경우 보통결의 의안이 가결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인 21주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인 25주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25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119. (307) 의사록 인증 시 소집통지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 **질의내용**

- (1)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 (2)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조합에서 보관할 경우에도 협동조합 이사회의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청문인증의 부속서류는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음.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제출받지 않으며, 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받음.³²⁾

(2)에 대한 답변

등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사록에도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120. (384)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소집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 **질의내용**

의사록 인증에 있어서 소집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32) 다만 이사 해임 등 중요 안건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소집통지서 발송 자료 등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 답변내용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공증인은 당해 결의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확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상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등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함.

일반적으로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실무상 이사 해임안건을 처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121. (308)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인증 시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내용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당사자는 의사록을 공증받아야만 구청에서 신고확인증을 내준다고 하고 있음.

□ 답변내용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필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보통임.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임에도 회사에 비하여 그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함.

설립신고의 의사도 없으면서 협동조합 설립의 외관을 갖춘 것처럼 남용할 위험성이 큼.

122. (31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설립의 경우?

□ 질의내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한다면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해주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받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인증이 면제되며(상법 제292조 단서), 의사록의 인증도 면제됨(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호). 발기인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이 모두 면제됨.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하려면 이사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이사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질의에 있어서는 발기인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이사인 사실을 확인함(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5조)
 발기설립에 있어서 정관인증, 발기인총회 의사록의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의사록만 인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23. (313)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 설립 시 의사록 인증 여부?

□ 질의내용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회 의사록과 동시에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구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인증이 면제(상법 제 292조)되고, 의사록의 인증도 면제(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됨.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일반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발기인인지 여부는 정관을 확인하여야 함.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124. (314) 결산기가 1월~12월인 주식회사의 정기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경우?

□ 질의내용

결산기가 1월~12월인 주식회사의 정기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임.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상법 제365조제1항 및 제

2항 참조).

정기총회는 본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고, 그 소집시기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결정시기의 제한(상법 제354조제2항 및 제3항) 때문에 매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되어야 함.

반면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임(상법 제365조제3항). 어떠한 이유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를 도과한 후에 재무제표의 승인을 의제로 하는 총회가 열렸을 때 이것이 정기총회인지 아니면 임시총회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총회라고 하여도 그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보임.

125. (315)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질의내용**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장소와 실제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된 경우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소집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여 주주총회의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새로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 변경 후의 장소를 총회에 출석하려고 하는 주주에게 알리고 또한 변경된 장소까지 주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4편 주식 상법 회사법Ⅲ 66면 참조).

만약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인증을 거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26. (328) 오래 전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거부?**□ 질의내용**

약 6년 전, 약 2년 전의 날짜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도 가능한지?

□ 답변내용

수년 전과 같이 지나치게 오래 전의 날짜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 구성 등이 현재와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인증촉탁을 거절함이 바람직함. 다만 그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증촉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127. (337)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동시 촉탁 시 위임장 제출 여부 등?

□ 질의내용

주주총회에서 구 경영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동시에 촉탁함에 있어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

□ 답변내용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람 전원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의결권자의 촉탁을 받아야 함.

따라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위임 내지는 촉탁을 받아야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128. (34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 후 도주한 경우 해임 의사록 인증 관련?

□ 질의내용

유한회사의 사원임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하였다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록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 답변내용

유한회사의 사원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음. 유한회사의 대표

이사가 작성한 사원명부(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법인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사원명부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음.
 유한회사 사원의 사원총회 소집허가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상법 제572조제3항 및 제366조제2항). 소집허가결정에는 사원총회 의장의 선임결정도 함께 받아야 사원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129. (346)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한 외국인 이사가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 질의내용

정관에 ‘이사회 회의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외국인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외국인 이사의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증 위임장에 의하여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상법 제391조제2항).

외국인이 외국에서 의사록 인증과 관련한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위임장으로 보아 의사록 인증이 가능함.

만약 위와 같이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다른 이사와 감사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음.

130. (360) 해임당한 이사가 주총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이사의 해임 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한 이후 해임당한 이사가 공증사무실에 와서 열람 및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답변내용**

의사록을 인증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함(공증인법 제66조의2제5항 및 제66조).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의 열람,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해임된 이사는 해임을 의결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인증서에 관하여 신분증에 의해 신청인이 해임당한 이사 본인인 사실만 증명하면 이해관계있는 자로 인정됨.

131. (387) 법인등기부등본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등기가 경로되지 않은 채로 신임 조합장 등 선임 총회 의결에 대한 의사록 인증 가부?

□ **질의내용**

법인등기부등본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등기가 경로되지 않은 채로 신임 조합장과 이사들 선임 총회 의결에 대한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공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정족수 및 이사, 감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야 함.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 등을 증명하게 할 수 있음(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위 지침 제5조는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 인증과 관련하여 이사인 사실등의 증명방법을 규정한 것이지만, 사안과 같은 재개발 조합 총회 의사록 등을 인증할 경우에도 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람을 조합장이나 이사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조합장이나 이사인 것을 전제로 한 의사록을 인증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사안의 경우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 총회 의결에 대한 의사록 인증과 함께 신임 조합장 이사들 선임 총회 의결에 대한 의사록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132. (396)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내용(2019. 12. 27 질의)

2019. 12. 1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12. 30. 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일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현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는지,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볼 수 있는지? 대표이사는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취임 승낙할 예정임.

□ 답변내용

이사의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상법 제386조제1항).

위 조항은 대표이사에 준용함(상법 제389조제3항).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 따라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고, 의사록 인증에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등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함(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4항).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

133. (397) 총회 장소가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해 변경된 경우?

□ 질의내용(2019. 12. 30. 질의)

주주총회의 회의장이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근의 다른 곳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법

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회의 장소를 변경하였다면 결의의 하자가 될 것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 장소를 변경하였고, 회의장으로 찾아온 주주들이 쉽게 새로운 회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안내원, 입간판 등) 방법을 강구하였다면 하자라고 할 것은 아님.

134. (399) 속기록을 총회 의사록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내용(2020. 1. 2. 질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해임 총회 참석인증 시 조합정관에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다만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을 총회의사록으로 보아 인증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법 제66조의2제1항).

법인 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의 한 유형으로서 의사록을 작성한 자의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인 의사록 인증 시 특별히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임.

단순히 사안과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고 하여, 속기록 자체를 위 공증인법상 의사록으로 보거나, 속기사를 위 공증인법상 의사록의 정당한 작성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속기록을 첨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임.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등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의사록 작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제7항 :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5조 제1항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제2항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35. (400) 정관상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출석”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총회 의사록 작성자에 포함되는지?

□ 질의내용(2020. 1. 2. 질의)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이사)도 총회 의사록 작성자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위 정관규정 역시 위 법과 동일한 취지로 보임. 즉, 위 법과 정관에 의하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함. 한편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출석한 이사는 실제 출석하여 회의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직접 확인한 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출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면으로 의결권만을 행사한 이사는 의사록 작성자인 출석한 이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136. (405) 의료법인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

□ 질의내용(2020. 1. 16. 질의)

- (1) 의료법인의 이사 7명 전원이 임기만료되어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임기만료된 구 이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 만약 이사장 이외에 나머지 임기만료된 이사들 전원이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되어 출석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어 이사회 개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상법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 무가 있고(상법 제386조제1항), 위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86조제2항).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의료법 제50조).

그러나 민법에는 위 상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위임종료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민법 제691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

는 신입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누8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기 만료된 구 이사들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들이 새로 선임되는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에 대한 답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민법 제 63조). 사안의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퇴임 후 행방불명되어, 법령과 정관에 정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7. (407) 해임된 조합장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질의내용(2020. 1. 22. 질의)

도정법상의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로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였는바, 해임된 조합장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정법상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해임된 조합장이 법인인감증명서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조합장의 권한대행자가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조합원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면 되고,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의사록 인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법무부 역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정관에서 정하거나 법원에서 선임한 자)가 소집 및 진행 권한을 가지므로 총회 의사록 인증 시에 제출해야 하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 주주명부 서식은 위 직무대행자가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음(2019

년 7월 29일자 ‘해임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법인 인감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조합장 해임 이후에 개최된 총회 의사록 인증 방법’ 참조).

138. (413) 사내이사 1인만 있는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 여부?

□ 질의내용(2020. 1. 31. 질의)

이사가 사내이사 1인만 있는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인데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사내이사의 해임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내이사의 직을 박탈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스스로 소집하는 등 의결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별한 사정(가령 주주총회 소집 당시에는 세대결에 승산이 있어서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응했다가 예상하지 않게 해임당한 후 해임된 사내이사가 해임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의미로 촉탁위임장에 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을 함께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이 없는 한 믿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의사록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록의 인증을 거부하여야 할 것임.

한편, 실무상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임에도 의사록의 내용이 그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새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어 온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내이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의사록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사임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사내이사의 사임서(개인인감 날인)와 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의사록 인증을 촉탁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회사 대표이사나 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1인 주주 등이 그와 같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함. 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주명부를 작성함(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라 수수료 관련

139. (254) 종중 총회 참석인증 시 검사수수료?

□ 질의내용

공증인이 종중 총회 참석인증 시 검사수수료는 얼마인지?

□ 답변내용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름(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한편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함(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

종중 총회의 참석인증 절차 역시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고, 그 검사 수수료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 의해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법인 총회의 참석인증 검사수수료 규정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종중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 개념에 대응하는 종중의 재산 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고(다만 종중 재산의 가액을 알 수 있다면 그에 따라 3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임), 총회가 야간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50% 할증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되며, 출장 실비와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별도임.

140. (266)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 산정 시 목적물가액의 의미?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목적물가액1/2)+(목적물가액1/2)+보증금+보증금+차임의 합에 있어서 목적물가액의 의미는?

□ 답변내용

목적물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가격을 말함.

목적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증금+차입합계금의 쌍방가액으로 산출할 수도 있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0조 참조).³³⁾

141. (323) 참석인증 검사료 산정 기준?

질의내용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이 1억 50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참석인증의 검사료는?

답변내용

출자금을 기준으로 수수료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사료를 산정함.

142. (353) 중국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인증하는 경우 수수료 기준은?

질의내용

중국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원고가 인증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소송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내용

청구서나 소장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소장은 소송행위(법률행위가 아닌)에 관한 문서로서 이에 대한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명문규정이 없는바 결국 가장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43. (382) 자본금이 없는 사단법인 총회의 검사 수수료?

질의내용

33) 정확히 표현하자면,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은 임대인의 목적가액인 [목적물가액의 $\frac{1}{2}$ +보증금]과 임차인의 목적가액인 [목적물가액의 $\frac{1}{2}$ +보증금+임대차 기간 동안의 차임 총액]의 합계액인데, 여기서 목적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보증금+보증금+차임 총액]의 합계액이 2천만1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100원을 임대차계약의 목적가액으로 봄.

자본금이 없는 사단법인 총회의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지?

□ 답변내용

참석인증의 검사수수료는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자본금이 없는 사단법인 총회의 검사수수료는 100만 원임.³⁴⁾

144. (386) 임차권 승계 이행각서에 각서인과 보증인 2명이 서명한 경우 수수료 산정 방법?

□ 질의내용

임차권 승계 이행각서에 각서인과 보증인 2명이 서명한 경우 수수료 산정 시 보증인 2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함(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7조).
임차권 승계 이행각서에 각서인 이외에 보증인이 서명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수료 규칙 제7조의 부수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145. (40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서 인증 시 수수료 산정기간?

□ 질의내용(2020. 1. 9. 질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서 인증 시 수수료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함. 다만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0조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기간에

34) 그러나 사단법인의 등기부 상에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산정함이 마땅함.

지급할 총가액에 의함(같은 제2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5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임.

146. (409)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채납증서를 사서증서로서 인증할 때 수수료 산정 기준?

□ 질의내용(2020. 1. 6. 질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채납증서를 사서증서로서 인증할 때에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목적가액 산정불능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함.

부동산을 급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

기부채납증서와 같이 증서의 내용에서 부동산 가액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음.

마 기타

147. (275) 인증을 촉탁하지 않은 주주가 의사록인증서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질의내용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인증을 촉탁하지 않은 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든 아니든, 의사록 인증을 촉탁하였든 아니든 의사록 인증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주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148. (288)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하기 위한 위임장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질의내용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하기 위한 위임장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공탁 위임장의 인증을 위한 '촉탁위임장'에 교도관의 무인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에 인증을 할 수 있음.

수감자가 변호사에게 공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

149. (301) 채무자의 촉탁으로 인증한 차용증에 채권자로 기재된 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질의내용

(1) 채무자의 촉탁으로 인증한 차용증에 채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등 기재)로 기재된

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2) 가능하다면 그 인증서에 대하여 등본 발급을 청구 또는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에 대한 답변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공증인법 제43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50조제1항).

(2)에 대한 답변

사서증서 인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 경우와 달리 열람 및 등본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관하여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열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사무소의 실무는 허용설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등본발급은 사서증서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불가). 법무부도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사서증서 사본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인증서사본) 수수료를 장당 500원으로 책정한 바도 있음(2014. 2. 1. 제정 ‘공증수수료 등산정의 기준’ 제2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차용증상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촉탁인은 아니나, 사서증서인 차용증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참고로 이해관계인이 인증서 사본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는 이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증서사본을 전자복사한 것임'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사본을 교부함.

150. (367) 자필증서의 유언에 관한 사서증서를 출장하여 공증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자필증서의 유언에 관한 사서증서를 출장하여 공증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출장 공증에 관한 공증인법 제56조는 공정증서 유언에 관한 것임.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준용규정에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함(공증인법 제 17조제3항).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3.28. 일부개정(시행일 2020.4.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부협회장과 상임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변경) 내용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조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 <u>위원장은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중에 협회장이 지명한 임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u></p> <p>③~⑤ <생 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u></p> <p>③~⑤ <현행과 같음></p>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1. 1.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현행 매년 1월 중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연회비 납부시기를 협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로 변경하고자 함.

2 개정(변경) 내용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 본문 중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매년 7월 1일 현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6항 중 “1월”을 “7월”로 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13조의3(연회비) ①~③ <생 략></p> <p>④ 직무연회비는 직전년도 <u>12월 31일 현재</u> 임명공증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과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준회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직전년도 <u>12월 31일로 정년에 해당하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u></p> <p>⑤ <생 략></p> <p>⑥ 연회비는 매년 <u>1월</u>에 납부한다.</p>	<p>제13조의3(연회비)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매년 7월 1일 현재</u> -----</p> <p>-----</p> <p>-----</p> <p>-----</p> <p>----- . <단서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u>7월</u>----- .</p>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0. 4. 1.)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회원과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시기를 협회장과 연수원장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시기를 제한하지 않고자 함.

2 개정(변경) 내용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시기는 협회장과 연수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신설)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5조(연수교육시기) ①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은 매년 3월 중에 시행한다.</p> <p>②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연수교육은 매년 9월 중에 시행한다.</p>	<p>제5조(연수교육시기) 연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시기는 협회장과 연수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p>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20. 1. 1. ~ 2020. 12. 31.)

I. 공증법령 개정 의견 제시

1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0. 4. 3.자)

□ 한정적으로 규정된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 소방용품들에 대하여 포괄적 규정을 도입,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 등을 허용한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소방시설 점검을 나오는 경우에 공증창고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증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공증창고에는 서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액체계(液體系)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원적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2020. 4. 3.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0-40호(시행 2020. 4. 3.)〉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1. 귀 부 문서번호 법무과-2895(시행 2020. 3. 24., 협회 접수 2020. 3. 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귀 부가 의견조회 요청해 온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동 개정령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 붙임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귀 부의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 (1) 본 협회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

로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 (2) ① 기존 규정과 개정안 규정을 비교할 때 실질적 차이는 제3호 나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1시간 이상의 차열능성이 있는 구조체’라는 선택적 기준이 추가된 것과 제5호를 ‘창고 안의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일의적 한적 기준에서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능력단위 A급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할 것(액체계 소화기 제외)’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 ② 기존의 해당 규칙 규정은 일반 국민이 그 규정 문언만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개정안의 규정 내용으로는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하여야 기준을 지키는 것인지 바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알려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한 소방방재청고시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등을 따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고시 등

기준이 특정 시점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으로서 이를 적시에 알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③ 그뿐만 아니라 공증창고시설은 매우 튼튼한 고착 구조물로서 쉽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성능평가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미 설치한 문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는 (신설) 나목을 선택하여 문을 제작할 가능성이 낮아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3) 한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및 제5호를 개정하게 된다면, 이 기회에 위 개정안 내용에 추가하여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에 ‘창고 안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증사무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나오는 경우에 공증창고 천장에 소방방재청고시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증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공증창고에는 서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액체계(液體系)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위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1]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회신(2020. 5. 29.자)

□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 수리 의무 규정 도입 관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2020. 5. 29. 법무부에 회신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0-65호(시행 2020. 5. 29.)>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부 문서번호 법무과-4407(시행 2020. 5. 19, 협회 접수 2020. 5. 25.)와 관련입

니다.

2.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공증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귀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0. 6. 12.자)

□ 법무부가 2020. 3., 공증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실무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동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협회에 의견을 조회해옴.

이에 대하여 협회는 법무부가 요청한 회신 기일 내에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된 1차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 기일이 짧은 관계로 상당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일부 회원들은 차체에 동 규칙의 규정과 서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협회는 법무부에 동 규칙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건의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를

법무부가 수용함.

이후 협회는 다수의 실무 전문가와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회 공식 논의를 거쳐 전부개정안에 다름 아닌 협회 2차 의견서를 2020. 5. 29. 제출하고, 재차 자구 수정 및 번역인증과 유언공정증서 작성 서식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한 수정의견서를 2020. 6. 12. 법무부에 추가로 최종 제출함.

[※ 편집자 주]

이하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된 협회 의견서 원문은 2020. 6. 12. 법무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2차 의견서의 수정본 원문만을 게재함. 따라서,

- (1) 법무부에 대한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 2020-38호(시행 2020. 3. 26.)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공문,
- (2) 공증협 제2020-45호(시행 2020. 4. 6.)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보류 및 전문개정 추진 건의” 공문,
- (3) 공증협 제2020-50호(시행 2020. 4. 28.)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회원 의견수렴” 공문,
- (4) 공증협 제2020-67호(시행 2020. 5. 29.)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2차 의견서 제출” 공문은 각각 생략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0-70호(시행 2020. 6. 12.)>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2차 의견서의 수정본 제출

- 1. 우리 협회 문서번호 제2020-67호(2020. 5. 29. 시행)와 관련입니다.
- 2. 우리 협회가 귀 부에 제출한 상기 문서의 별첨 (1)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측 추가 의견서 중 유언공정증서의 서식과 관련하여 개정 의견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니, 동 수정본의 내용과 같이 동 규칙 개정령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협회 추가 의견서(수정본) 1부

※ 붙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협회 추가 의견서

1. 규칙 명

(1) 현행 규칙의 명칭과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현행과 같음)	공증사무처리방법 및 공증서식에 관한 규칙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공증서식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2. 제1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사무처리 방법 및 공증서식에 관하여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이 규칙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제4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조(직인) 공증인이 영 제3조에 따라 공증사무소에 비치할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어색한 표현을 바꿈

4. 제5조 및 별도 2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도 2 (도면생략)	*별도 2의 개정안 (도면생략) 기존 확정일자인의 형식과 다른 형식을 새로 추가하고 선택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함.	*별도 2의 개정안 (도면생략) 중전 형식은 삭제하고, 법무부 개정안 중 새로 추가한 확정일자인의 형식으로만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공증은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든 외관상 같은 것이 바람직함. 확정일자인으로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인정하면 국민들에게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공증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전 형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식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되,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둬서 바람직하다고 봄.
- 2) 또한 현행 규정이나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인가공증인의 경우에 확정일자인의 날인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음. 그 결과, 확정일자인의 날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시 위반이 있을 때 인가공증인의 어떤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 3)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인가공증인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확정일자인의 별도 2의 내용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임.

5. 제6조 및 별도 4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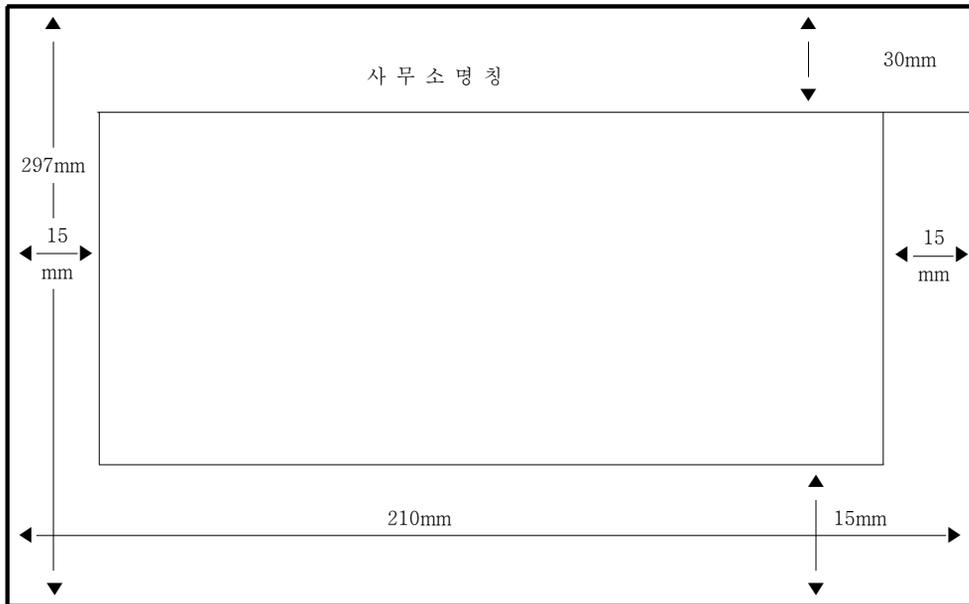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용지 중 용지 끝의 좌·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별도 4 도면에 표시된 용지의 규격은 가로 190mm 세로 268mm임.	- (현행과 같음)	(개정) 용지의 규격을 210mm 세로 297mm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함.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별도 4에 따르면 용지의 규격이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68밀리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용지의 규격(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과 다름. 따라서 별도 4를 개정하여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별도 4]



6.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 및 확정일자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장부의 조제 등)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 및 확정일자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되, 매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년 말 해당 연도에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한 후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매년 말 증서원부·인증부·확정일자부에 더 이상 추가로 기재할 수 없도록 마지막 공증번호 다음 칸에 “이하 기재사항 없음”이라고 쓰고 공증인의 직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서식생략)	(개정안) 제4호서식의 아랫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인쇄되는 것으로 바뀜.	(현행과 같음) 법무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안에 반대함.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접수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는 공증실무의 법적 근거로 단서를 신설함.
- 2) 장부는 매년 새로 조제하여 사용하는 대신 매년 말에 공란에 추가로 소급하여 기재할 수 없도록 장부폐쇄 조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둠.
- 3)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날인할 경우에 현행 확정일자부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자칫 서식의 개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확정일자부의 사용방법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와 같은 취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단서 다음에 “이 경우 공증인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명목란과 비고란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적는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7. 제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 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 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증서류감사부) ①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감사부를 조제하여 공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에 의한 공증사무 감사 시 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감사담당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을 공증서류감사부에 적은 다음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공증인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의 지적이 있으면 곧바로 그에 관하여 제1항의 공증서류감사부에 법령이나 지시 위반의 발생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적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다시 감사하게 할 수 있다.</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검열” 대신 “감사”로 “검열관” 대신 “감사담당관”으로 용어를 바꾸어 표현을 순화하고, 이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도 바꾸어야 함.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증서류감사부) ①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감사부를 조제하여 공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에 의한 공증사무 감사 시 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감사담당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을 공증서류감사부에 적은 다음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공증인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의 지적이 있으면 곧바로 그에 관하여 제1항의 공증서류감사부에 법령이나 지시 위반의 발생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적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다시 감사하게 할 수 있다.</p>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 >

공증서류감사부

감사 일시			
감사 장소 (공증사무소)			
감사담당관			
위 반 사 항		발 생 원 인 및 개 선 방 안	
확 인	공증인	인	감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8. 제9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과 같음)	제9조(장부 기입 방법) 공증인이 공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각 장부에 기입할 때에는 공증번호(증서번호와 등부번호를 통칭함, 이하 같음)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장부에 “기재”한다는 표현 대신 시행령에 따라 장부에 “기입”한다는 것으로 바꾸고, “증서번호”는 흔히 공정증서의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증서번호와 등부번호” 모두를 통칭하는 “공증번호”바꾸며, 어색한 표현을 바꿈.

9. 제10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류철의 조제)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과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매년 새로 조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본조의 제목을 “서류철의 조제”로 개정하여 서류철을 기입장부와 구별되는 일종의 장부(편철장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각 “서류철”에 편철되는 구체적인 공증문서에 연철되는 서류의 순서 등은 총론보다는 각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 3) 공증인법에 따르면 선서인증서나 의사록인증서는 원래 2통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칙은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심지어 공증인법에 인증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의사록인증을 할 경우

에도 의사록인증서사본을 보존하는 것처럼 규정하였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됨.

한편 선서인증서나 의사록인증서는 사본이 아닌 인증서 자체를 보존하여야 하므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편철하는 것은 어색함. 그렇다고 선서인증서철이나 의사록인증서철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인증서는“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할 수밖에 없음.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궁극적으로는 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10. 제11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이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보급한 시스템에 공증사무처리내역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① (법무부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대한공증인협회에도 모사전송 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 *별지 제7호서식 (서식 생략)	-----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공증종류별 수수료 총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한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협회 개정안을 따로 제안함)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1) 공증인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전문직으로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수료 총액을 보고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증인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수수료사항은 이미 접수부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 등의 각 처리건수와 가액이 기존의 양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매월 공증종류별 수수료액 총액이 통계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적은 점, 공증사무소 입장에서 매월 공정증서,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사서증서인증, 번역문인증, 확정일자 등의 수수료를 각 분리하여 확인하려면 매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공증인이 수수료 총액까지 보고사항으로 개정하는 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2) 오히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유언은 물론, 후견계약, 신탁선언, 인도집행증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용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증의 종류별로 처리 건수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확정일자 건수는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참고사항에 기재하게 함. 확정일자 건수를 포함하여 일일평균취급량을 계산하면 통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킴.
- 4) 제2항을 신설하여 회원 가입 법정강제단체인 협회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함. 현재는 회칙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 . 분)			
수신 법무부장관			
경유 지방검찰청 검사장			
종류	처리내용	처리건수	가 액
합 계		건	원
법률행위 공정증서		건	원
(유 언)		건	원
(후 견 계 약)		건	원
(자 기 신 탁)		건	원
(협의이혼계약)		건	원
(인도집행증서)		건	원
사실 공정증서		건	
조 사 보 고 서		건	
정 관 인 증		건	원
의 사 록 인 증		건	참석인증 건
사서증서 인증		건	
(번역문인증)		건	
(외국문인증)		건	(사선생략)
기 타			
일 평균 취급량			
참 고 사 항			
공 증 사 무 소 명 칭 소속 공증사무소 소재지 공증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11. 제2장의 제목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식의 사용에 관한 통칙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와 인증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서식의 사용에 관한 통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본 장의 성격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봄. 제2장을 제1장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12. 제12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12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인이 공증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 포함을 촉탁 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제12조의2로 이동)</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⑤ 공증인은 촉탁인 및 대리인이 5인 이상인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촉탁인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촉탁인 및 대리인에 관한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등 공증촉탁서에 기재할 사람의 수가 4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를 사용하여 기재하거나,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촉탁인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촉탁인 및 대리인에 관한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안)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대한 협회개정안

- 1) 공증인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 역시 촉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신청서와 촉탁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업무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을 “공증(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 포함)”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제2항은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내용을 개정하여 이동.
- 2) 촉탁인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의 개정안처럼 별지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현재 공증실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촉탁서 여러 장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안에 따르면 촉탁인·대리인 기재란의 4번째 칸에 신원확인 방법을 촉탁인 등이 스스로 적을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촉탁서 작성할 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특히 전화번호를 적어 넣을 칸을 둘 필요가 있음. 신원확인방법은 종전과 같은 형식을 취하되 굳이 많은 칸을 둘 필요는 없고, 실무상 많이 쓰이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부동산자로 인쇄하고 여권 기타 신분증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제목을 손으로 적어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족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 >

공증촉탁서							
접수번호	-			문			
증서등부	번호	-		서			
아래 촉탁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을 촉탁합니다.	
			인증		<input type="checkbox"/>		
사무소 귀중				년 월 일			
1 촉 탁 인	성 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2 촉 탁 인	성 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소재지)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 출석 확인			위 출석 확인				
3	성 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4	성 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소재지)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 출석 확인			위 출석 확인				
수령사항	통수	수령자확인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서정본							
증서등본				비고			
인증서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수수료			보 조 자		공 증 인	
원	원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13. 제12조의2 신설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2조의2(주민등록증 등 신원증명서) 공증인이 촉탁인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법” 제27조제2항 제1호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나 신청서 뒤에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등의 신원을 그가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그 증명서는 그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하므로 증명서 원본 자체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그 사본을 촉탁서나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통칙에서 천명할 필요가 있음.

14. 제13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증인은 촉탁일자가 서로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원용의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어색한 표현을 바꿈.

15.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4조(위임장)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	제14조(위임장)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임장) ① 대리인의 촉탁이나 청구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u>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임장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u>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u>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p>	<p>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 개정안과 같음)</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p>
별지 제10호서식 등	법무부 개정안(생략)	협회 개정안 있음.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어색한 표현을 바꿈.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기간 계산을 명확히 함.

*별지 제10호서식 등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협회개정(안)서식

- 1) 법인도 위임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촉탁사항에 관하여 위임인의 수가 여럿일 경우에 한 장의 위임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백을 줌.
- 2) 대리인을 수임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수임인(대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위임장 사이에 용어나 용례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일시킴.
- 3) 별지 제10호의4서식 위임사항의 예로 송달증명신청 또는 송달불능신청, 원본 환부 신청 등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신청사항의 하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4) 위임장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의 (서명 또는 인)은 “인”이 단순한 도장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의미이므로 종전처럼 “인감”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 . . . >

위 임 장					
대리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성 명</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 소</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p>					
<p>다 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위임인 성명(명칭과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주소(소재지)</p>					
<p>*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위임인이 여럿이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p>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 . . . >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발행인이 다음 기재 내용의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 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 의 공증 등)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 면	금	원정	
발 행 인		수 취 인	
발 행 일		지 급 기 일	
발 행 지		지 급 지	
양 도 인		양 수 인	
년 월 일			
위임인 성명(명칭과 대표자) 주소(소재지)		(서명 또는 인감)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위임인이 여럿이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 >

위 임 장					
대리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height: 2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다 음</p>					
<p>년 월 일</p>					
<p>위임인 성명(명칭과 대표자) 주소(소재지)</p>	<p>(서명 또는 <u>인감</u>)</p>				
<p>*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위임인이 여럿이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p>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 >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다음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사무소</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증서 등부</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제</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호에 대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집행문부여</td> <td></td> <td></td> <td>통</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정본교부</td> <td></td> <td></td> <td>통</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등본교부</td> <td></td> <td></td> <td>통</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u>원본열람</u></td> <td></td> <td></td> <td>건</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사무소	년	증서 등부	제	호에 대한	<input type="checkbox"/>	집행문부여			통		<input type="checkbox"/>	정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등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u>원본열람</u>			건		<input type="checkbox"/>					
	사무소	년	증서 등부	제	호에 대한																																			
<input type="checkbox"/>	집행문부여			통																																				
<input type="checkbox"/>	정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등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u>원본열람</u>			건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위임인 성명(명칭과 대표자) 주소(소재지)				(서명 또는 인감)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위임인이 여럿이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16.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면식부) ①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공증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면식부에 기재하고, 공증촉탁서에 면식번호를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면식부는 면식부철에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안 있음	* 협회개정안 있음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제1항은 어색한 표현을 고침
- 2) 제2항을 신설하여 면식부와 면식부를 편철한 면식부철을 구분함.
- 3)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면 면식이 있는 사람의 촉탁으로 공증을 한 경우에는 할 때마다 면식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임. 따라서 서식에서 면식부 하단 부분은 없애는 것이 타당함.
만일 현행처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6번 이후 기재할 때는 면식부 하단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별지 제11호의2서식이 새로 신설되어야 함. 이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안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설안은 다음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 >

제 호 면 식 부			
성 명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호	
면 식 경 위			
면식부작성일			
본직은 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면식 경위로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므로 이 면식부를 작성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공증인 인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 . . . >

번호	공 증 일	증서 또는 등부번호	비 고
	.	증서·등부 제 호	
	.	증서·등부 제 호	
	.	증서·등부 제 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17. 제16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서명날인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인증서 등본 작성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나, 인증서 작성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등 별지 제12호서식을 서명날인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 내용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봄.

18. 제17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17조(통지서 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p>	<p>제17조(통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증인이 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으면 이를 계산에서 제외함)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제19조에 항을 신설하여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p> <p>④ 삭제(제19조 항을 신설하여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본 조에서는 본인에 대한 통지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문 제목도 변경
- 2) 3일 이내의 통지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3일의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현행 공증실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증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3) 송달은 집행증서에서만 발생하므로 통칙 규정보다는 집행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문위치를 이동하는 것으로 개정함.
- 4) 제1항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원칙상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개정.

19. 제18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8조(신청서) ① 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8조(신청에 따른 업무집행) ①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증문서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이유를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공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단, 3일을 계산할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함)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는 해당 공증문서의 부속서류 끝에 연결하여야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사항 있음)	----- (개정 사항 있음)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신청은 촉탁인 이외에 그 승계인이나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음.
- 2) 공증인의 휴가 또는 출장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신청에 곧바로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집행문 부여신청의 경우에 심사기간을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3) 공증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경우 신청서철에 별도로 철하는 것보다 해당 공증문서의 부속서류에 함께 연결하여 보관하는 것이 공증문서가 작성된 뒤에 해당 공증문서에 관하여 발생한 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효율적임.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호에서 신청서철을 삭제하되 이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즉 법령상 신청서철이 존속할 때까지는,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공증문서의 폐기 등의 사유로 없는 연결할 공증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철에 편철하는 것으로 함.

공증인법 시행령에서 신청서철을 삭제한다면 그 대신 기타서류철을 신설하여 딱히 연결할 만한 공증문서가 없는 서류들을 그것에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함.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 . . . >

신청서			
접수 번호	-	증서 등부 번호	-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집행문 부여 통 <input type="checkbox"/> 등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정본교부 통 <input type="checkbox"/> 원본열람 건 <input type="checkbox"/> 송달(불능)증명 통 <input type="checkbox"/>		
신청 인	성명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대리 인	성명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이유			
첨부서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위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공증인 사무소 귀중 </div>			
심사	공증보조자	공 증 인	위 수령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div>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20.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설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1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正本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p> <p>②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것을 공정증서正本 뒤에 첨부하여 부여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증인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줌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서 봉투 표면에 “반송 불필요”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공증인이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민사집행법」제3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증서의正本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을, “법” 제56조의5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경우에 공증인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공정증서원본의 부속서류 끝에 연철하고, 1통은 우편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고 우편봉투이면에 부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p> <p>⑦ 공증인은 송달할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우편송달보고서를 해당 공정증서원본의 부속서류 끝에 연철하여야 하고,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우편송달(불능)보고서를 공정증서원본의 부속서류 끝에 연철하여야 한다.</p> <p>⑧ 공증인의 송달사무에 관한 채권자나 그 승계인의 송달증명이나 송달불능증명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따른 공증인의 송달이나 송달불능의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제1항 어색한 표현을 고침.
- 2) 제3항, 제4항의 신설은 집행문수통부여 등에 따라서도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집행문에 관한 규정에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3) 승계집행문 부여 등에 따른 송달에 관한 사항은 집행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종전 통지서 규정에 있는 것을 여기에 규정하면서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종전 규정에 관하여 어색한 표현 등은 고침.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설

21. 제20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0조(원본환부) ① 공증인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에 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특수처리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원본은 환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8호 서식 (내용생략)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신청인에게 서명도 가능하도록 함)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법무부 개정안 동의하지만 추가 개정 사항 있음)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원본 환부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함.
- 2)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복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인영부분이 복사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환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개정)한다면 별지 제18호서식도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함.

22. 제2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계산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사항 있음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계산의 규격이 작아 관리에 불편하므로 규격을 다른 용지의 규격에 맞춰 가로 210mm 세로 297mm로 개정함.
- 2)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산서는 원래 수수료 등 공증인이 촉탁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계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공증인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계산서”와는 다른 것임.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산서를 촉탁인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해도 세법상 계산서 교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반대로 세법상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해서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산서에 관한 공증인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님.
따라서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산서는 수수료 등 공증인이 징수하는 금액의 계산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서식의 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3) 한편 현재 인증서사본 제작과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본제작보존료 항목을 신설하고, 우편 송달업무를 집행할 때 징수하는 송달수수료 4,000원(수수료규칙 제23조의2 제2항)는 실비(제1항)와는 별개이므로 송달수수료를 신설함.
- 4) 또한 궁극적으로는 접수번호마다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촉탁서 하단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수수료를 기재하도록 한 난은 촉탁서에서 없애고 이를 계산서에 반영하면서 촉탁서 뒤에 연철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철이나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등의 서류철에 연철되도록 하고, 계산서철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계산서철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 . . . >

계산서			
접수 번호	-	<input type="checkbox"/> 증서 <input type="checkbox"/> 등부	-
위 사건에 관한 수수료, 일당, 여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항 목	수 량	금 액	비 고
공정증서작성		원	
정 본		원	
등 본		원	
사서증서인증		원	
증서초과매수		원	
사서증서보존		원	
집행문부여		원	
송 달		원	
확 정 일 자		원	
열 람		원	
일 당		원	
여 비		원	
실 비		원	
보 관 료		원	
계		원	
비고	인 지 세	원	
	통 지 료	원	
	복 사 료	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23. 제22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본·등본·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첨부인지역을 기재하고 표지이면에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이나 공정증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첨부인지역을 기재하고 표지이면에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어색한 표현을 고치고, “첨부인지역”은 공증인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맞추어(공증인법 제42조 참조) “첨부인지역”이라고 고침.

24. 제23조 및 제21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관계자의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공증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참여인·동의인·허락인·수증자·유언증인·유언집행자 등 관계자를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어색한 표현을 고침.
- 2)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형식을 통일시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수증자 유언증인 등도 별지 제21호서식에 기재하도록 함.
- 3) 관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함.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 >

관계자의 표시
관계
성명(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25. 제24조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내용의 기재)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법률행위 내용을 서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따로 서식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유언공정증서서식으로 개정 별지 제29호서식을 자기신탁공정증서서식으로 개정 별지 제29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29호의3서식 삭제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1)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함.

개정안에 따르면 별지 제32호서식 이하 서식의 번호가 모두 하나씩 밀리게 되어 혼선이 있음.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어음공정증서도 다른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관계자표시와 공통사항의 기재는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함. 한편, 현행 유언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도 관계자표시 및 공증인의 서명날인은 다른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유언내용을 기재하는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호서식의 내용을 모두 통합한 다음, 서식번호는 어음공정증서 서식에서 삭제하여 서식번호가 비어 있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함. 또한 별지 제29호의3서식은 그 내용을 개정하되 서식번호도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개정함.

이렇게 개정하여 서식번호가 비는 별지 제29호서식은 자기신탁의 내용에 관한 서식으로 활용함.

2) 별지 서식들은 법률행위 내용 기재에만 관계되는 서식들이므로 제목을 “공정증서의 작성”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기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3)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 등 가지번호를 붙인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일일이 가지번호를 나열하거나 아니면 협회의 개정안처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4) 별지 제22호서식의 문언 중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는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동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이를 기재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로 고침(이는 다른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법률행위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에 모두 공통된 사항임).

26. 제25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5조(어음 공정증서 등) ① 공증인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 대상 어음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 앞에 용지 상단에 맞추어 부착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을 사용하여 어음채무자가 만기 때 어음채무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어음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유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하되 유언증서의 서식으로 함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우선 어음공정증서의 관계자표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서식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 표시란에”라고 잘못 되어 있음.
- 2) 본 조에서는 어음공정증서에 관하여 규정하되, 어음부착방법과 촉탁인으로부터 공증인이 어음발행 및 강제집행인낙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관하여 규정함. 또한 현행 어음공정증서의 부착방법은 실무상 A4용지 크기의 어음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부착방법을 정함. 한편 어음공정증서에 기재할 사항 중 관계자 표시나 공통사항의 기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3) 위와 같이 어음공정증서 작성방법을 개정한다면 더 이상 제2항에 어음공정증서에 관하여 정할 사항은 없으므로 제2항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에 관하여 규정하되 별지 제24호의2를 유언공정증서의 서식으로 삼음.

또한 현행 서식은 유증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유언사항에 관하여도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 4)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유언공정증서서식으로 삼으면서 그곳에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기재내용을 반영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기재내용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신설하여 반영하면 별지 제29호서식을 자기신탁공정증서의 서식으로 삼을 수 있음.

27. 제26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33호서식</u> 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통적 기재사항) ①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공증인이 공통적으로 기재할 공증인법 제35조에서 정한 사항(다만, 증서의 번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기재하는 사항은 제외)이나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은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하여 적는다. 다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적는다.
		-----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표현을 순화함.
- 2) 어음을 부착한다는 점과 법률행위 내용을 기재하는 용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표지, 관계자의 표시나 공통사항의 기재, 공증인의 서명날인 등은 모두 일반 법률행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함.
- 3) 유언공정증서도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하여 관계자를 표시하고, 공통적 기재사항은 다른 법률행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적을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공증인법 제35조에서 정한 사항과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사항 사이의 차이)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따로 신설하여 그 서식을 사용하여 기재함.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 . . . >

본 공증인은 유언자, 증인이 제시한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 없음을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증인들이 민법 제10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아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유언자 및 증인의 진술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 조회
<input type="checkbox"/>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본 공증인이 이 증서의 기재 내용을 관계자 표시 기재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하여 준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아래에 서명날인하였다.	
유언자	
증인	
증인	
이 증서는	년 월 일
에서 작성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 공증인은 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한바, 유언자는 이를 수령하였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별지 제32호의2서식 설명

- 신설하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서 기재한 사항을 기재함. 다만,
- ① 유언자나 증인이 제시한 신분증이 서로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상황에 맞게 고침.
 - ② 증인에 대하여는 유언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므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따져야 하므로 유언 당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였다는 기재를 뺐.
 - ③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공증사무소 아닌 곳으로 출장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빈번한바,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현행 서식으로 인하여 공정증서 작성의 마무리를 공증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증서 작성 장소의 기재를 공란으로 두어 공증인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④ 공증인의 서명날인은 다른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같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여 하도록 함.
 - ⑤ 별지 제29호서식과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기재사항은 통합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기재사항은 일부 수정한 후 신설한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함.
 - ⑥ 유언공정증서서식을 이와 같이 수정할 경우 비게 되는 별지 제29호서식을 이용하여 자기신탁공정증서 서식으로 삼으면 현행 별지 제33호서식을 자기신탁공정증서의 서식으로 개정하는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인증에 관한 서식번호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피할 수 있음.

28. 제26조의2 신설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없음	없음	제26조의2(공정증서 조제방법) ① 법률행위 공정증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표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관계자 표시 용지, 별지 제22호서식 등 법률행위 내용 기재 용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통사항 기재 용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증인의 서명날인 용지의 순서로 묶은 다음, 앞장과 뒷장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서 조제한다. ② 어음공정증서는 법률행위 내용을 적은 용지 자리에 어음이 부착된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를 두는 것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유언공정증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표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관계자 표시 용지, 별지 제24호의서식에 따른 유언 내용 기재 용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공통사항 기재 용지, 별지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증인의 서명날인 용지의 순서로 묶은 다음, 앞장과 뒷장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서 조제한다. ④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내용을 적은 용지를 둘 자리에 공증인이 확인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적은 용지를 두는 것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공정증서의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함이 타당함. 공증실무상 관계자 표시는 표지 다음에 위치시키는 경우와 법률행위 내용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나뉘어 있는 바, 표지 다음에 별지 제21호서식(관계자표시)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통일시킴. 관계자 표시가 내용에 앞서 나오는 것이 촉탁인에게 공정증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어음공정증서와 유언공정증서는 보통의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 조제방법을 제2항 및 제3항에서 따로 규정함.

29. 제26조의3신설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없음	없음	제26조의3(공정증서 부속서류 연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본 뒤에 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철한 다음, 공정증서 원본과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현행 제10조(서류의 편철) 제1항에서 부속서류 연철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정증서 부속서류 연철에 관한 규정을 각론인 ‘공정증서의 작성’의 장에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함.

30. 제26조의4신설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없음	없음	제26조의4(공정증서원본의 편철) ①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에 따라 부속서류를 연철한 공정증서원본을 공정증서원본철에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따로 조제한 공정증서원본철에 편철할 수 있다.

-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제10조(서류의 편철)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각론에서 정함.
 또한 실무상 따로 보존하는 유언공정증서원본철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31. 제27조 및 별지 제34호서식 등에 관하여

-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간 비교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34호서식</u> 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u>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u> 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 인증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 사서증서,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한 후, 그것을 복사하여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을 제작한 다음에, 사서증서인증서를 축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은 그것에 축탁서·축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철하여 사서증서인증서 사본과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 부속서류를 연철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공증번호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별지 서식의 번호는 현행대로 유지.
 - 2)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철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별지 제34호서식(법무부 개정안 별지 제35호서식임) 중 공증인의 서명날인란 바로 위(인증문 맨 아래)에 기재하는 “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는 “이에 본 공증인은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인증한다.”라고 고침. 이는 별지 제34호서식뿐만 아니라 인증문이 기재되는 제34호서식 이하 모든 서식에 공통적인 것임.

- (3) 별지 제34호서식 등에 관한 협회개정안

32. 제27조의2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이 선서 인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촉탁인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사서증서 원본 2통을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이미 작성된 원본 2통을 제출받고 이와 별도로 촉탁인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라 선서서를 2통 작성하게 하되, 선서서에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p> <p>② 선서인증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서서, 사서증서,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하되, 같은 방식으로 2통을 작성한다.</p> <p>③ 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선서인증서 2통을 작성한 후 2통 중 1통은 인증부와 사이에 간인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그것에 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결한 다음, 인증서와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간에 간인하여야 한다.</p> <p>④ 부속서류를 연결한 선서인증서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공증번호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p> <p>-----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별지 서식의 번호는 현행대로 유지.
- 2) 선서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결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안

별지 제33호의2서식 중 선서 아래의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는 문구는 삭제함. 이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이 자필로 적어야 하는데 현행 서식에 따르면 부동산자로 인쇄되고 촉탁인은 서명날인만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자필로 적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음.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 >

<p>선 서</p> <p>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 (자필로 적음)</p> <p style="text-align: right;">촉탁인</p> <p style="text-align: center;">①</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33. 제28조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사서증서등본인증) ① 공증인이 사서증서등본인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촉탁인이 사서증서의 취지에 의하여 사서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나 그 승계인인 사실 또는 그로부터 등본인증의 촉탁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사서증서등본인증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 사서증서의 등본,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p> <p>③ 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서증서등본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한 후, 그 사서증서등본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서증서등본인증서 사본을 제작한 다음에, 사서증서등본인증서를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을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작한 등본인증서사본에 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철하고,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서 사본과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간인하여야 한다.</p> <p>⑤ 부속서류를 연철한 사서증서등본인증서사본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공증번호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p> <p>-----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별지 서식의 번호는 현행대로 유지.
- 2) 1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할 수 있을지언정

등본인증은 인증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3) 2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사서증서인증을 촉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등본인증은 촉탁할 수 있다고 봄.
- 4) 타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등본인증의 촉탁은 그가 문서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소지인이거나 정당한 소지인의 승계인인 사실이 증명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5) 등본인증의 인증문의 표현을 개정함.
- 6) 사서증서 등본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결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7) 위와 같이 촉탁인을 제한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 개정하여야 함.
- 8) 한편 위와 같이 촉탁인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함을 전제로 사서증서등본인증수수료는 사서증서인증수수료의 반액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것임(현재 사서증서등본인증수수료에 관하여는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임).

*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안

34. 제29조, 별지 제38호 및 별지 제39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p>	<p>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의사록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공증인이 법인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의사록 원본 2통을 제출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의사록인증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 법인의사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하되, 같은 방식으로 2통을 작성한다.</p> <p>③ 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2통의 의사록인증서 중 1통은 인증부와 사이에 간인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그것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촉탁인등 확인증명서사본,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의한 확인서(의장 또는 출석한 이사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의결 및 촉탁확인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사본(또는 전자주주명부인 경우는 그 출력본), 법인사항전부증명서, 정관사본, 허가서(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대리권 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결한 다음, 인증서와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 사본은 회사가 주주관리를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의사록인증서에 연결하는 별</p>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는 촉탁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1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인원수만 표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의사록인증서에 연철할 주주명부 사본이나 정관사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나 정관의 원본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사본을 말하고, 공증인은 의사록의 기재 및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의결 및 촉탁확인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총회 후 공증촉탁일 사이에 주주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의 사본도 주주명부사본이나 정관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⑥ 부속서류를 연철한 의사록인증서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공증번호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별지 서식의 번호는 종전대로 함.
- 2) 법인의사록 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철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의사록인증지침에 따른 확인서를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신설하여 규정함.
- 4) 법인의사록 인증을 촉탁할 때 촉탁인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주명부와 정관은 실물 주주명부와 정관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공증인이 사본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하게 함.

주주명부는 이 규칙에서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주주명부가 의사록인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관리되도록 함. 주주명부는 일종의 장부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새로 추가로 기재하거나 고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내용을 쉽게 갱신할 수 있도록 주주마다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에 변동이 있을 때 종전 주주를 빼고 새 주주를 기재해 넣어야 하므로 가제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제39호의3서식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임.

정관은 서식으로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정 및 개정 경위가 해당 조문 및 부칙 규정 등에 잘 나타나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에 한하여 실물 정관으로 인정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

확 인 서	
법 인 명	
회 의 종 류	
소 집 일 시	
소 집 통 지 발 송 일	
회 의 안 건	
<p>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인의 _____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확인인 성 명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_____</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 . . . >

○

○

주 주 명 부

상 호 : 000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80g/m²)

[별지 제39호의3서식] <개정 20 . . . > 주주관리번호 제 0000 호

○ ○

성 명 (명 칭)		전 자 우 편 주 소	
주 소 (소 재 지)	. . . 신고		
취득일 및 원인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주식 또는 질권설정사항	비고
20 . . . 취득 원인 발행주식 인수 (인)	보통주 00주 주권번호 0번부터 00번까지		
20 . . . 취득 원인 주식양수 (양도인 0 0 0) . . . 양수인 신고 (인)	보통주 00주 관리번호(주권미발행시) 0번부터 00번까지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35. 제30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30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고,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0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u>별지 제41호서식</u>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고,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정관의 인증) ① 공증인이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을 인증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야 한다.</p> <p>② 정관인증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 정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하되, 같은 방식으로 2통을 작성한다.</p> <p>③ 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2통의 정관 인증서 중 1통은 인증부와 사이에 간인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그것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공증촉탁서, 촉탁인등 확인증명서사본, 대리권 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철한 다음, 부속서류사이 및 부속인증서와 서류 상호간에 간인하여야 한다.</p> <p>④ 부속서류를 연철한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철에 공증번호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정관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철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36. 제31조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영문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영문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u>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u>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외국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외국문사서증서인증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 외국문사서증서,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p>

-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조문-제목 변경함.

외국문 사서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철방법 등을 실무상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37. 제32조에 관하여

-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 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 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u>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u>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u>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외국문사서증서의 등본영문인증) ① 외국문 사서증서의 등본영문인증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 외국문 사서증서의 등본,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외국문사서증서의 영문등본인증의 방법 및 부속서류 연철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38. 제33조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관하여

(1) 현행 규정과 법무부 개정안 및 협회 개정안

현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번역문인증) ① 공증인은 번역문인증을 할 경우에는 촉탁인으로부터 여백이나 별지에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 및 그가 번역인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번역문과 원문을 제출받고, 촉탁인이 번역인 본인이거나 본 번역문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사실 및 번역인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국문과 해당 외국문 사이의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촉탁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5호서식의 상단 서약문 아래에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에 따른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확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 번역인의 확인서(촉탁인이 번역인인 경우에는 제외),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및 번역인신분증사본(촉탁인이 번역인인 경우에는 제외)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촉탁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5호서식의 촉탁인(서약인) 서명란에 서명 대신 기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촉탁인이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증서의 사본을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뒤에 첨부하고, 촉탁인이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가 대동한 사람으로 하여금 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게 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사본을 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p> <p>1. 서명할 수 없는 촉탁인이 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시한 경우</p>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협회 개정안
<p>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2. 서명할 수 없는 촉탁인이 다른 사람을 대동한 경우</p> <p>④ 번역문인증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 번역문, 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적은 인증문을 차례로 묶어 조제한 다음, 인증문 용지에 공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p> <p>⑤ 공증인은 번역문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문인증서의 사본에 촉탁서·촉탁인등확인증명서사본·번역인의 번역능력 확인서류 등의 순서로 부속서류를 차례로 연결한 다음, 번역문인증서 사본과 부속서류 사이 및 부속서류 상호 간에 간인하여야 한다.</p> <p>⑥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은 번역문 인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p>
<p>-----</p>	<p>-----</p> <p>별지 제45호서식 개정안</p>	<p>-----</p> <p>별지 제45호서식 개정안에 수정의견 있음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p>

(2) 협회 개정안에 관한 설명 또는 이유

- 1) 번역문 인증 지침 등의 내용을 규칙의 규정으로 끌어 올려 규정함.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고, 인증방법과 부속서류 연결 방법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함.
- 3) 별지 제45호서식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본 공증인은 위 가 번역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바,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번역인이 아닌 사람도 촉탁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 번역문인증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배치됨. 따라서 굳이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면 번역문에 번역자가 누구인지를 기재(별지에 기재한 경우 포함)하게 하면서 인증문에 “본 공증인은 위 번역문이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적고 그에 따라 영문 표현도 “I confirmed that the original text had been translated by a person who is competent in translation.”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서약문이나 인증문의 “pledge”나 “pledged”는

“swear”나 “swore”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됨.

- 4)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인증한다.”는 “이에 본 공증인은 . . . 이 사무소에서 인증한다.”로 고침.
- 5) 번역문인증지침에 의해서 제출받는 확약서를 규칙내용으로 규정하여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신설함.

(3)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 내용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내용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 . . . >

<p>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p> <p>서약인 (서명)</p>	<p>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p> <p>Signature</p>
.....	
<p>등부 년 제 호 인 증</p>	<p>Registered No. - Notarial Certificate</p>
<p>위 서약인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서명하였다.</p>	<p>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swore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her) name.</p>
<p>본 공증인은 위 번역문이 번역능력이 있는 사 람에 의하여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p>	<p>I confirmed that the original text had been translated by a person who is competent in translation.</p>
<p>이에 본 공증인은 . . . 이 사무소에서 인증한다.</p>	<p>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_____ day of _____ at this office.</p>
<p>공증사무소 명칭 소 속 소재지 표시 공증인 (인)</p>	<p>Name of the office Under the jurisdiction of Address of the office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p>
	<p>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as Notary Public since . . . , under Law No. . . .</p>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 . . . >

번역인 확약서

번역의뢰인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별첨 번역문은 상기 번역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별첨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별첨서류

1. 번역문
2. 원 문
3.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번역인신분증 사본

년 월 일

번역인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m²)

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0. 7. 17.자)

□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공증인법 제86조의4 제1항 벌금형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찬성 의견과 함께 차제에 변호사법과 유사한 몰수 규정 도입 신설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2020. 7.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82호(시행 2020. 7. 17.)>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 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호) 관련 의견 제출

1. 귀 위원회 문서번호 법사위-1459(시행 2020. 7. 14., 협회 접수 2020. 7. 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귀 위원회가 요청해 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호)”에 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동 개정법률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 공증인협회 의견서 1부

※ 붙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제1639호)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 (1) 원래 공증인법 제86조의4는 내용 면에서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정형을 공증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변호사업무보다도 더욱 강한 엄결성(廉潔性)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몰수 규정이 적용되지만(변호사법 제116조 참조), 공증인법에는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본다면, 공증인법 제

86조의4제1항의 법정형은 변호사법 제 109조제2호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거나 최소한 동일하여야 하고, 공증인법에도 변호사법 제116조와 같은 몰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2) 그러므로 이왕 공증인법 위반죄에 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검토할 것이라면 우리 협회는 그 기회에 국회가 공증인법 제 86조의4제1항의 법정형이 적당한지, 그리고 동조 위반죄에 대하여 몰수 규정을 둘 것인지 등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3) 이상과 같이 공증인법 개정안에 관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① 총회 구성원 수 산정 기준 관련 질의 회신 (2020. 1. 29.자)

□ 질의 내용(원문)

1. 당 법인에서는 ○○협동조합의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청구서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 인증 요청을 받아 2019. 11. 30. 13:00 공증담당변호사가 회의 장소에 참석하였습니다.
2. 명부상 재적 대의원 총수는 111명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제3항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위 ○○협동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제2항 대의원 수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3. 대의원 총회 개최 시 참석 대의원은 41명이었습니다. 개최 공고 시 이후 현장에서 까지 탈퇴한 대의원이 31명이어서 나머지 재적 대의원은 80명이므로 따라서 41명이

면 과반 출석으로 보아 나머지 결의를 하였습니

(질의)

위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는 대의원 정수를 100명 이상 혹은 100명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고 이후 탈퇴대의원을 제외한 재적 정족수 80명을 기초로 의사정족수를 셈하는 것이 가능한지?

[※ 편집자 주]

질의인이 첨부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서 및 정관 발체 규정 등은 생략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3호(시행 2020. 1. 29.)>

1. 질의 취지

귀 법인의 질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제3항에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협동조합의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제2항에 “대의원 수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함에 있어서 명부상 재적 대의원 총수는 111명이나 대의원총회 공고시 이후

현장에서까지 탈퇴한 대의원이 31명인 경우에 공고 이후에 탈퇴한 대의원을 제외한 80명을 재적 대의원 수로 계산하여 의사정족수를 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총회 구성원인 사실 및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는 기준

법인 등의 총회 구성원을 확정하기 위한 시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① 구성원 명부에 관한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②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그리고 ③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일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의 대표자나 법원의 소집허가를 신청을 하여 이를 받은 사람에게 의하여 구성원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사실이 법인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서식 제39호에 따라 작성된 구성원 명부에 의하여 구성원인 사실 및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3.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내용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위 제2항에 따라서 작성된 명부에 재적 대의원 총수가 111명이라고 되어 있다면 80명을 재적 대의원 수로 계산하여 의사정족

수를 셈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 등에서 폐쇄일이나 기준일이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 : 이 경우가 일반 적일 것입니다.)에는 회의 일 현재의 명부가 작성되게 될 것인바(※ 주 :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참조).), 이렇게 작성된 명부에 재적 대의원 수가 8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80명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제2항에서 “대의원 수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 대의원 수가 최소 100명이라는 기준 하에서 의사정족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사정족수가 되는 과반수는 51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정관상 이사의 원수가 6명인데 1명이 사망하여 5명의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3명의 이사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보는 것(상업등기실무[II] 2011년판 제34쪽 참조)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 수를 결하게 되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하고 재적 이사 수에 포함시키는 것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정관

제24조(대의원총회) 제2항에 “대의원 수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공고 이후 대의원 31명의 탈회가 적법하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탈회대의원을 제외한 80명을 기초로 의사정족수를 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2020. 3. 3.자)

□ 질의 내용(원문)

대한공증인협회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호(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6) 2-나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중 제1호의 “증서의 전문”이란 정본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원본에 기재된 ‘증서의 전문’을 의미함(가령, 증서 작성 후 이루어진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내용도 포함).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증서의 전문’은 최초 원본 작성 당시 증서의 전문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

니다. 귀 협회의 의견처럼 정본 작성 당시 원본에 기재된 전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당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협회의 의견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협회의 의견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후 이루어진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을 원본에 기재한 경우, 그 부분을 정본을 부여할 때 사본하지 않으면 발급된 정본이 무효라는 의미인지 여부?
3. 귀 협회의 의견을 받은 이후 법무법인 A,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등에 문의한바 모두 “증서 작성 후 이루어진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을 원본에 기재한 경우, 그 부분은 정본을 부여할 때 사본하지 않고 정본을 작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많은 공증사무소들이 위와 같이 정본을 발급 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고 무효라는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33호(시행 2020. 3. 3.)〉

- 공증인이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증서의 전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공증인법 제47조제1항제1호), 공증인이 정본을 발급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증

서 원본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36조). 이에 따라 ‘증서의 전문’의 내용은 정본 발급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할 사항은 ‘증서의 전문’이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하는가와 정본 발급 당시에 원본에 이미 정본 발급사실이나 집행문 부여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항을 누락하고 정본을 발급한 때 그 정본은 무효인가 등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후자에 대한 답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순으로 설명합니다.

- 먼저,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증서의 전문’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문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실무상으로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에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이 기재되기 전 상태의 전문, 즉 최초 상태의 전문을 의미한다는 최초전문설과 정본 발급 당시에 원본에 기재된 전문을 의미한다는 정본발급시전문설이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는 정본발급시전문설을 따르고 있지만(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개정판(큰 책; 소프트 커버) 2014년판 제232쪽 참조), 공증실무는 정본발급시전문설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공증사무소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공증사무소는 최초전문설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정보 발급 당시의 원본에는 정보 발급 또는 집행문 부여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정보를 발급할 때 이를 누락한 경우 그 정보는 정보으로서 무효인가에 관하여는 최초전문설을 취하느냐 정보발급시전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최초전문설에 따르면 나중에 추가로 기재된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 사항은 정보를 발급할 때 기재할 ‘증서의 전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유효한 정보가 됩니다.

정보발급시전문설에서는 공증인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증서의 전문은 정보 발급 당시에 원본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서의 전문’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정보는 ‘증서의 전문’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는 견해와 정보발급 당시 원본에 기재된 증서의 전문을 기재하여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애초 유효하게 완성된 뒤 나중에 추가로 기재되는 사항을 누락한 정보이라도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견해의 근거로는 공증인은 정보 발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원본에 기재하였어야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증서의 원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점, 따라서 그러한 원본에 기하여 발급된 정보 역

시 무효가 아님이 당연하다는 점, 원본에 추가로 기재되는 사항은 원본의 법적 효력(증명력이나 집행력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증서원본의 요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원본을 사본한 등본 중에서 특별히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곧 정보로서 증서원본의 요체의 기재가 곧 정보의 핵심 요체를 이룬다는 점, 현재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정보를 추가로 발급할 때 보존 중인 증서 원본을 전자복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대신 공증사무소의 컴퓨터 저장장소에 저장된 ‘증서의 전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발급함으로써 원본에 정보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정보를 발급하고 있는 점, 최초 원본에 부기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 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를 무효로 보게 된다면 강제집행 체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법무부 공증 사무 검열에서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관하여 그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협회는 공증실무의 실태에 비추어 원본에 정보 발급사실이나 집행문 부여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발급한 정보이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보를

발급할 때 원본에 정본을 발급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이 이미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 정본을 발급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실무도 법원실무 제요의 견해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는 정본을 발급할 때 정본 발급이나 집행문 부여 사실이 원본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까지도 기재하여 정본을 발급하도록 각 공증사무소를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3 협동조합 정기 대의원총회 의사록 인증 관련 질의 회신(2020. 4. 7.자)

□ 질의 내용(원문)

1. 본 인가공증인이 2020. 3. 28. ○○협동조합의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후 의사록 인증의 가부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2. 총회 개최 시의 상황

- (1) ① 대의원 100명 이상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협동조합기본법, 정관), 기존 이사장 A는 87명이 대의원이라 주장, 임시이사장 B측은 108명이라 주장.
- ② 대의원은 지역 협의회 등의 선출 등으로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장이 확정

(○○협동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③ 기존 이사장 측은 76명의 대의원에 대하여 선관위원장 P를 해촉하고 Q를 임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11명을 보충하였다 주장(이 이사회결의의 결의에 대하여 B측에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제기중).

④ 선관위원은 이사회결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정관).

⑤ 임시이사장 B측은 76명에 P가 해촉당한 것은 불법이므로, P가 당연히 선관위원장이고 지역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32명을 보충하여 대의원 총수가 108명이 된 것이라 주장.

(2) ① 대의원 정기총회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음(정관).

② 이사장은 대의원총회(대의원총회는 조합원전체 총회를 대신할 수 있음)에서 이사중 선출. 임원인 이사 역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정관).

③ 이사장 부재, 권위 시 이사회에서 임시이사장을 선출(정관).

④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정관).

⑤ 2020. 3. 16., 3. 28. 당시 등기이사는 이사장 포함 7명.

⑥ 미등기 이사 H는 2019. 3. 2.경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었음(임기 2년), 대의원총회 의사록 인증되어 있음.

⑦ 그 후 H는 처음 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으나(이사회 참석 등) 나중 이사장 A의 전횡에 항의하여 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낙서, 임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⑧ 이사회는 이사 1/3이 이사장에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정관).

(3) ① 이 건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를 결정한 이사회는 (이사회개최 등의 요구 등을 거절하는 등 이유로) 이사장 A의 부재로 보아 2020. 3. 16.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개최하였음.

② 이사는 5~15명으로 규정되어 있음(정관).

③ 이사 8명(미등기이사 포함) 중 3명(C, D, E)은 2020. 3. 2.자로 2년 임기가 만료하였으므로 나머지 5명(A, B, F, G, H)의 이사 중 B, F, H, 3인 과반수로 의결하여 B를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개최 안건으로 이사장 A 및 G의 해임 등의 안건을 상정.

(4)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0. 3. 28. 개최하여 A, G의 해임 등 안건을 의결함(108명을 대의원으로 본 의사, 의결정족수 충족).

3. 문의 사항

여러 가지 문제 중 (가) 명부확정 등 문제

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나) 법인인감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사회 정원 관련,

(1) 정식으로 선출되어 일부 활동을 하였으나 취임승낙서, 인감제출을 거부하여 1년간 등기가 안 된 H이사가 그 후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것이 정당한 이사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위 협동조합의 이사 정원은 5명 이상인데, 위 H이사를 포함하면 정수 8명인데 임기만료된 3명을 제외하고 5명(H포함)이 이사 정원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만료 후 후임 선출 전 3명을 포함한 8명을 정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위와 같이 (1), (2)번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나중 법원판단 등이 달라 결의무효 등이 된다면 공증인이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예상되는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47호(시행 2020. 4. 7.)>

1. 귀 인가공증인의 문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1) 정식으로 선출되어 일부 활동을 하였으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거부하여 1년간 등기가 안 된 이사가 그 후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것이 정당한 이사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협동조합의 이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포함하여 8명 중에서 3명이 임기만료되었을 때,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현 이사인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후 후임 선출 전 3명을 포함한 8명을 현 이사로 보아야 하는지 및 (3) 공증인이 위 (1), (2)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때 나중에 법원 판단 등이 달라 결의무효 등이 된다면 공증인이 받을 불이익은 무엇으로 예상되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명부 확정 등의 문제와 법인인감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문의의 전제 사실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미등기 이사 관련

정식으로 이사로 선출되어 그 의사록을 인증까지 받았고, 처음 이사회에 참석도 한 적이 있으나,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 1년간 등기가 안 된 이사가 그 후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공증인이 그 미등기 이사를 이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공증인이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이사인 사실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제5조(이사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 공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정족수 및 이사, 감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 등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사인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이사로 인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그 이사를 선출한 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만 그 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이 있을 때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증인으로서의 당해 이사 선출 총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가 아니고 총회 의사록과 총회 의사록 관계인 본건의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이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예외 규정을 둔 취지가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원만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법인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을 위임 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고, 당해 이사가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을 위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그래서 이사 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사 선임이 기재된 의사록과 함께 당해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본건 미등기 이사라는 사람은 취임승낙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욱 이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상법 제382조제2항, 민법 제680조 각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H이사가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공증인은 정당한 이사의 활동으로 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 다만, 이는 공증절차에서 H를 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재판절차에서 그가 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증명하여 현재도 그가 이사회 구성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임).

3. 이사 정원과 임기 만료된 이사

협동조합의 이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포함하여 8명 중에서 3명이 임기만료되었을 때,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현 이사인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후 후임 선출 전 3명을 포함한 8명을 현 이사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이사는 임기의 만료로 종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게 됩니다(상법 제386조제1항 참조).

본건의 경우, 협동조합의 이사 정원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 등기가 안 된 H를 이사로 보아줄 수 있다면 임기만료된 이사 3명은 종임되어 H를 포함한 5명이 이사의 지위에 있게 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증인은 H에 대하여 이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만료된 이사 3명이 모두 종임하게 되면 이사 정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이사 3명 중에서 임기가 가장 나중에 만료한 1명은 이사의 지위가 유지되고, 위 이사 3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되었다면 그 퇴임에 순위를 정할 수 없으며, 퇴임이사 각자의 퇴임에 의하여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 : 제4판 주식상법 제220면 내지 221면 참조), 퇴임한 이사 3명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사 3명이 모두 새로 선임된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이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포함하여 8명 중에서 3명이 임기만료되었을 때, 위

등기 안 된 이사가 아닌 임기만료한 이사 중 1명을 포함하여 5명이 현 이사인 것으로 보거나 위 등기 안 된 이사를 뺀 7명을 현 이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공증인의 판단 잘못에 따르는 공증인의 불이익

공증인이 의사록의 인증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법원 판단 등이 달라 결의무효 등이 된다면 공증인이 받을 불이익은 무엇으로 예상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그러한 경우에 공증인이 받을 불이익으로는 첫째 손해배상청구, 둘째 공증인에 대한 징계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해 의사록의 잘못된 인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증인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증인 개인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증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증인의 공증업무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의 공증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공증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해 공증인이 당해 직무수행에 평균적인 공증인의 주의력 정도를 기울였는지 여부가 과실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공증인들의 정상적인 수준의 주의력에 미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증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당해 공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참조).

4 인지세 납부 대상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2020. 5. 7.자)

□ 질의 내용(원문)

1. 채권자 회사 사업의 종류 중 업태 : 금융업, 종목 : 대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 가끔 저희 법무법인에 채무자가 방문하여 채권자를 대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공증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3. 공증 받을 때 금액에 맞는 인지를 받거나, 인지 대금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에서 구입하여 서류 표지 다음 장에 붙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4. 채권자에게서 다른 법무법인은 인지를 안 붙이고 공증을 하는 데 왜 너희 법무법인에서 꼬박꼬박 인지를 붙이느냐 라고 항의가 대단합니다.
5. 심지어 협회에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아 자기네에게 송부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6. 그러므로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공문으로 저희 법무법인과 각 회원사에게 통보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56호(시행 2020. 5. 7.)>

- 귀 회원의 2020. 4. 27.자 “인지세 납부의 대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제하의 공증 업무 질의(문서번호 2020-51, 협회 접수 2020. 4. 27.)는, 우리 협회가 2012년도에 발간한 기관지 『공증과신뢰』 통권 제5호 276면에 게재된 질의·회신 사례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지에 게재된 내용을 사본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5호 중 276면 게재 내용

질의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촉탁의 경우 인지 첨부 여부

[질의 요지]

금융기관과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원본에 인지 첨부 여부 및 관련 법규

[답변]

- 공증인법 제42조는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에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지세법 제2조제1호는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호의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참석인증 시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관련
질의 회신(2020. 5. 26.자)

□ 질의 내용(원문)

회의록 참석인증 시 공증인은 직접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한다. 다만 공증인은 직무집행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 업무를 행하여는 아니 된다(공증인법 제16조,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1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서울 소재 공증인이 회의참석 및 인증을 하고 있는바, 인천 소재 공증인인 당 사무소 질의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인증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위법적인 요소가 안 되는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61호(시행 2020. 5. 26.)〉

1. 귀 회원의 질의 요지는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과 관련하여 공증인은 직접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다. 다만 공증인은 직무집행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증인법 제16조,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1조)라는 규정이 있는데, 인천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서울 소재 공증인이 회의참석 및 인증을 하고 있는 바, 인천 소

재 공증인인 당 사무소 질의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인증 의사록을 작성하여도 위법적인 요소가 안 되는지요?”라는 것입니다.

2.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공증인법 제16조에서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사록 인증과 관련하여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에서 “공증인은 업무집행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10조(참석인증을 위한 검사)의 검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증인이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공증을 할 경우에는 공증인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무부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법무부 2007. 11. 21. 회신 참조).

3. 법인의사록의 참석인증 관련 특칙

위와 같은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에 관한 원칙 조문인 공증인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칙 조문이 두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이고(공증인법 제56조제1항), 나머지 하나가 공증인이 해당 법

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4항).

공증인법 제66조의2제4항에서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2017. 12. 12. 개정되어 2018. 6.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 6. 20.부터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의의 해결

2018. 6. 20.부터는 서울 소재 공증인이 인천에 있는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 6. 20.부터는 인천 소재 공증인인 귀 사무소 질의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에는 그러한 참석공증 의사록을 인증하더라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⑥ 서울고등법원 사실조회 회신 (2020. 6. 18.자)

□ 질의 내용(원문)

1. 사실조회 배경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2015. 8. 1. 시행, 법무부 법무과)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르면, 공증인이 법인의사록에 대해 인증을 하는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1인 주주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일체의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위 1인 주주는 총회소집절차 없이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증인이 위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거부하였고, 결국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 사항

가.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대상회사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단지 위 1인 주주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소지한 채 공증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공증인이 거부한 경우 이러한 공증인의 공증 거부행위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를 때 적법·타당한 것인 여부.

나. 만약 위 가.항의 공증인의 공증 거부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떠한 법령, 지침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위 공증인의 거부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다. 만약 위 가.항의 공증인의 공증 거부행위가 적법·타당하다면 1인 주주가 현 대표이사를 교체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지 여부.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71호(시행 2020. 6. 18.)>

1. 사실 조회 사항 가항에 대한 답변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대상회사의 법인

인감(※ 주 : 조회 내용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에 법인인감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묻고 있으나 촉탁 시 법인인감을 제공하는 일은 없으며, 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임), 법인인감증명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규칙 별지 제39조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주 : 같은 이름의 상법상의 주주명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당해 주주총회를 소집한 자가 작성함), 정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위 1인주주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소지한 채 공증인에게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공증인이 거절한 경우 이러한 공증인의 공증 거절행위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를 때 적법 타당한 것임.

왜냐하면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함에 있어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을 제공 받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주장만을 믿고 의사록 인증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임.

2. 사실 조회할 사항 나항에 대한 답변 : 해당 없음.

3. 사실 조회할 사항 다항에 대한 답변

1인 주주가 현 대표이사를 교체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주식회사가 이사가 1인 또는 2인으로 이사회가 없는 회사나 아니면 3인 이상으로 이사회가 존재하는 회사이냐에 따라 달라짐.

가.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그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의 사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1인 주주는 우선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제6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1인 주주의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1인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제2항 제1문).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제2항 제2문). 법원이 의장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가 의장을 선임할 수 있음(물론 자신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함).

이와 같이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임. 만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하여 의장이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의 성명을 적고 그 옆

에 사유를 적고 의장이 날인하면 적법한 의사록으로 될 수 있음.

1인 주주는 이와 같이 작성된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대표이사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이 인증할 때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될 필요가 없고, 법인인감증명서의 제출도 필요 없으며, 법원의 소집허가결정문과 소집권자인 1인 주주의 개인인감이 날인되고 개인인감증명서가 제출되면 됨. 공증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 실제 1인 주주가 맞는지 종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흔히 공증인을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해서 공증인이 직접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도록 한 다음에 그 공증인으로부터 의사록을 인증받는 방식, 즉 소위 참석인증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음.

나.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1인 주주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불능)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그 대표이사의 소집으로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동인을 해임하면 됨.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먼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제외하면 통상의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과 같음.

다. 이사가 3인 이상으로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이면서 대표이사 외에 나머지 이사들의 협조도 어렵다면 1인 주주 위 가항의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얻어 대표이사(정확히는 그 이사직)를 해임할 수밖에 없음.

4. 참고사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주주는 법원의 소집허가가 없어도 스스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인바, 사실조회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1인 주주가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의사록 작성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공증인이 의사록 인증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재판절차와 공증절차는 전혀 달라 재판에서의 법리를 공증에서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우선, 재판절차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존재하고 변론절차와 증인 등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1인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도 심문절차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1인 주주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공증절차에서는 촉탁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공증인은 그가 1인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기껏해야 의문이 있으면 캐물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공증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므로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할 권한이 있는 현 대표이사가 누가 주주인지에 관하여 확인해 주지 아니한 이상, 공증인으로서 그가 진실로 1인 주주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더구나 상법은 1인 주주라도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주주의 소집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득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록 판결에서는 1인 주주임을 인정하여 1인 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공증에서는 1인 주주가 맞다는 근거자료나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없이 스스로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취지의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7 속기록 인증서로 조합이사 선임 등기 경로 사례의 당부 및 그 검사 수수료 처리 방법 관련 질의 회신(2020. 8. 13.자)

□ 질의 내용(원문)

본 공증인은 ○○ 소재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20년 5월 26일자 해산총회에 참석하여 참관하였으며, 해당 총회는 청산인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음.

위 조합이 청산인선임등기를 맡긴 법무법인은 해당 총회의 속기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사서인증을 받도록한 다음 그 인증받은 속기록을 첨부하여 청산인선임등기를 ○○본원 등기과에서 경료함.

과거 일부 등기소에서 속기록을 사서인증받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그러한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증받은 속기록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 사례의 경우 실제로 청산인등기가 경료됨.

이 경우 본 공증사무실에서는 의사록을 인증하지 않았으므로 인증부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부번호도 부여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지급받은 공증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 공증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92호(시행 2020. 8. 13.)〉

1. 논점

본건의 논점은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서 법인등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와 법인 총회에 참석하여 검사한 수수료를 받았으나, 의사록을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검토

가.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서 법인등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1)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그 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2) 의사록의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참조), 이때의 의사록의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 중 하나에 속하기는 하나 매우 중요한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인증 방법도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과

는 다릅니다.

의사록의 인 증은 공 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 리인으로 하여금 공 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공 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참조). 이때 공 증인은 법인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 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 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 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 조의2제3항 참조).

또한 공 증인은 의사록의 인 증에 있어서는 의사록 원본 2통, 확인서, 주주(회원)명 부, 정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 인 된 것),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 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촉 탁인들(주주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소집절차 준수 증빙서류 등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속서류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속기록의 인 증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 증을 하였 다는 것은 속기록 작성자인 속기사 ○○○ 으로 하여금 공 증인 앞에서 속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속기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속기사 ○○○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속기록의 진정성립을 확인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속기록을 속기 사 ○○○이 작성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된 것이지 법인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공 증인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4) 소 결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 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 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 의사록의 인 증은 공 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여 부실한 등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상업등기소 창구 등기관이 만연히 단순 진정성립 여부만 확인이 된 일반 사 서증서의 인 증 방법으로 된 속기록 인 증 서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경료해주는 것 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속기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 보에 의하여 법인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 법인 총회 등에 참석하여 검사한 수수료를 받았으나, 의사록을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총회 등에 참석하여 검사한 수수료를 받았으나, 의사록을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그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 총회 등 참석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서 2장을 발행하여 1장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을 계산서철에 편철하여 두면 될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2020. 9. 18.자)

□ 질의 내용(원문)

1. 관련 법리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된 어음을 배서양도 하거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① 채권양수도 계약서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③ 양도인 명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 명의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④ 위 3항의 양도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 명의의 승낙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인증받은 것이어야 함.

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 주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어음법 제77조제1항, 제39조제1항, 민법 제519조 각 참조)).

나. 공증인법[시행 1993. 3. 10. 법률 제 4544호, 1993. 3. 10., 타법개정]에 따르면, 공증인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제31조제1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때는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제31조제1항),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제32조제1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이를 연철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제40조제1항).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제3항 참조). 송달증명이 없으면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증인은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자(이사건의 경우 우촌)로부터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의뢰를 받아 이를 집행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5제2항 참조)(※ 주 :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보 등의 송달)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2. 사실조회 사항

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신에 의하면,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공증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승계 집행문 재도부여 시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① 채권양수도 계약서(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 포함)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③ 양도인 명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 명의

- 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 ④ 위 3항의 양도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 명의의 승낙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인증 받은 것이어야 함.
- 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최초 정보

나. 공증사무소 여러 곳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하면, 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적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내용인지를 확인한 후 반환하고, 채권양도통지서와 도달증명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며, 대리인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교부받아 보관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구체적으로 상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승계집행문이나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경우, 공증인은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약속어음의 발행인들 전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의 통지를 하는지 여부?

* 예시 문구

“○○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 주식회사 □□에게 승계집행문 △통을 부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편집자 주]

질 의 인 이 첨 부 한 승 계 집 행 문 재 도 부 여 통 지 서 등 은 생 략 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04호(시행 2020. 9. 18.)>

1. 사실조회 사항 ‘나’에 대하여(※ 주 : 사실조회 사항의 내용에 따르면 승계집행문 재도부여에 관한 사항을 가항으로 하여 먼저 질문하고, 승계집행문 (초도)부여에 관한 사항을 나항으로 하여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명의 편의상 먼저 이루어지는 승계집행문 (초도)부여에 관한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승계집행문 재도부여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기술합니다)

먼저, 사실조회 사항의 내용 중 ‘공증사무소 여러 곳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략)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적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약속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내용인지를 확인한 후 반환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만일 공증사무소에서 승

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사본조차도 보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사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전제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때 공증인이 확인할 서류는 사실조회 내용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채권양수도 계약서(약속어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 포함)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③ 양도인 명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 명의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 ④ 위 3항의 양도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 명의의 승낙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인증받은 것이어야 함
- ⑤ 약속어음 공정증서 최초 정본(즉, 약속어음 원본이 첨부된 정본)

이는 승계집행문 신청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적법한 승계인인지를 증명하는 증서로서 공증인은 이들 증서를 반드시 원본(다만, 약속어음 공

정증서는 어음원본이 첨부된 정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승계집행문 신청인이 적법한 승계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서를 원본으로 보관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보관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현재 공증사무소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원본을 제출받아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승계인인의 반환을 요구하면 공정증서원본에 연결하여 보존하는 부속서류에 준하여 승계인으로부터 원본환부신청서를 받고 제출받은 원본에 기하여 공증인이 등본을 작성하여 원본 대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승계인의 환부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증사무소에서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원본은 확인만 하고 곧바로 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원본을 반환하여 사본으로 보관하고, 양도통지서 등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 중 어음원본이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은 그 맨 뒷장에 집행문을 붙여서 신청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공증인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2. 사실조회 사항 '가'에 대하여

공증인이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위 증서들을 다시 제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때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받아 이미 승계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승계집행문을 채도부여할 경우에도 신청인이 여전히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속어음 원본은 최초의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되고 그 정본에 (초도)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므로 공증실무에서는 그가 여전히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은 그에 관한 사용증명원(※ 주 : 통상 집행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사용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접수한 서면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실무상 사용증명원이라고 부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증명서에 해당합니다)을 제출받아서 확인합니다(※ 주 : 공증실무계 일부에서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경우에는 어음원본이 첨부된 최초의 정본에 직접 집행문을 붙여서 집행문을 부여하지 말고 집행문 부여 신청 때마다 새로 정본을 작성한 다음, 그 정본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사실조회 사항 '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공증인은 승계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사본하여 집행할 공정증서에 덧붙인 집행문(등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경우)나 채무자의 승계인(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게 송달합니다(이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 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함).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경우, 공증인은 집행문이 재도부여 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본건의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들 전부에게 “.....에게 집행력 있는 정보 ○통을 다시 부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경우에 공증인은 승계집행문이 재도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본건의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들 전부에게 본건 사실조회신청인이 예시한 문구의 취지로 통지합니다.

9 부산고등법원 사실조회 회신
(2020. 9. 18.자)

□ 질의 내용(원문)

1. 사실조회 목적

피고는 2017. 2. 13.경 소외 A로부터 부산 남구 ○○○○○○ ◇◇◇◇◇◇ 분양권

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2020.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5면), 피고와 A가 위 분양권 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 등 공증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가 공증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갑 제16호증 ; 녹취록 7면 - 10면, 갑 제17호증 ; 녹취록 7면), 위 분양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백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할 사항

- ① 피고와 A 사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공정증서 등 공증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작성된 사실이 있다면,
- ② 공증서류 작성일자, 공증서류가 작성된 공증인 사무소명,
- ③ 해당 공증서류를 법원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③에 관한 회신이 불가능할 경우 ①, ②에 관한 회신은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06호(시행 2020. 9. 28.)>

1. 사실조회할 사항 ①에 대하여

공정증서 등 공증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공증서류를 작성한 공증사

무소가 아닌 본 협회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공정증서 등 공증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사실조회할 사항 ②에 대하여

본 협회로서는 회원 사무소에서 어떤 특정 공증서류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피고와 A 사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공정증서 등 공증서류에 대한 작성일자, 작성된 공증인 사무소명을 확인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사실조회할 사항 ③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해당 공증서류를 법원으로 송부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증인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고(공증인법 제5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등에 대하여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4조).

10 인증부 기재 사항 관련 질의 회신

(2020. 9. 29.자)

□ 질의 내용(원문)

등부 2020년 제13390호까지는 인증부와 동일하게 발급되었고 등부 2020년 제13391호부터 제13499호까지 인증부에 간인하고 문서명 등을 기재하였지만 착오로 등부 2020년 제13991호부터 제14099호까지 인증번호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등부 2020년 제13500호부터 제13990호까지의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등부 2020년 제13391호부터 제13499호까지 인증부상 기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앞으로 발급될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07호(시행 2020. 9. 29.)〉

1. 귀 회원 사무소가 인증부상 등부번호 2020년 제13391호부터 제13499호를 인증서에 2020년 제13991호부터 제14099호로 잘못 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붙임 예시와 같이 인증부상 등부번호 제13391호부터 제13499호까지 각 비고란에 “인증서에는 착오로 등부 2020년 제○○○○○호로 기재함. 공증인 □□□ (인)”이라고 각 기재한 후, 공증인의 직인을 각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 발급된 인증부상 등부번호 제13991호부터 제14099호까지 각 비고란

에는 “등부 2020년 제○○○○○호로 인증할 것을 착오로 제○○○○○호로 인증함에 따라 이 등부번호를 폐쇄함. 공증인 □□□(인)”을 각 기재하고 공증인의 직인을 각 날인한 후, 해당 등부번호의 기재란은 더 이상 기재할 수 없도록 폐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회원께서는 상기와 같은 조치를 완료한 후, 곧바로 그 결과를 해당 인증부 사본 전

체와 함께 반드시 협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번 사안과 같은 등부번호 오류가 공증사무 프로그램에 기인한 경우라면, 반드시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부 비교란 기재 예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 . . . >

인 증 부

등 부 번 호	제 13391 호
촉탁인의 주소, 성명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증 서 종 류	
증서의 서명날인자	
인 증 방 법	
참여인의 주소, 성명	
인 증 연 월 일	. . .
간 인	
비 고	인증서에는 착오로 등부 2020년 제13991호로 기재함. 공증인 ○○○ (인)
등부번호	제 13392 호
촉탁인의 주소, 성명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증 서 종 류	
증서의 서명날인자	
인 증 방 법	
참여인의 주소, 성명	
인 증 연 월 일	. . .
간 인	
비 고	인증서에는 착오로 등부 2020년 제13992호로 기재함. 공증인 ○○○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 . . . >

인 증 부

등 부 번 호	제 13991 호
촉탁인의 주소, 성명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
증 서 종 류	-----
증서의 서명날인자	-----
인 증 방 법	-----
참여인의 주소, 성명	-----
인 증 연 월 일	-----
간 인	-----
비 고	등부 2020년 제13391호로 인증할 것을 착오로 13991호로 인증함에 따라 이 등부번호를 폐쇄함. 공증인 ○○○ (인)
등 부 번 호	제 13992 호
촉탁인의 주소, 성명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
증 서 종 류	-----
증서의 서명날인자	-----
인 증 방 법	-----
참여인의 주소, 성명	-----
인 증 연 월 일	-----
간 인	-----
비 고	등부 2020년 제13392호로 인증할 것을 착오로 13992호로 인증함에 따라 이 등부번호를 폐쇄함. 공증인 ○○○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11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력 관련 질의 회신
(2020. 12. 18.자)

□ 질의 내용(원문)

1. 사실관계

- (1) 채권자와 연대채무자1, 연대채무자2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 (2) 변제기 전 연대채무자1에게 가압류 발생.
- (3)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조건성취집행문 신청.

2. 문의사항

- (1) 위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연대채무자1에게만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 할 수 있는지(민법 제432조에 따른 상대적 효력만 인정), 아니면 연대채무자1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쳐서 연대채무자2를 상대로도 조건성취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제432조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절대적 효력 인정)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2) 위 공정증서 제7조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고”에서 청구의 방법과 집행문 부여 시 그 청구가 있었음을 공증사무실에서 소명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28호(시행 2020. 12. 18.)〉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채권자와 연대채무자1, 연대채무자2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변제기 전에 연대채무자1에게 가압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조건 성취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① 연대채무자1에 대하여만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대채무자2에 대하여도 함께 조건 성취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공정증서 제7조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구의 방법과 집행문 부여 시 그 청구가 있었음을 공증사무소에서 소명받아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2.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함께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에 관해 복수의 채

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므로 하나의 급부라는 객관적 목적이 달성된 경우(변제, 대물 변제, 공탁)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절대적 효력). 그 밖의 사유는 연대채무에 있어 각 채무가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상대적 효력). 그런데 민법은 규정으로 급부의 목적 달성의 사유에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음. 이행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가 그것임. 그런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압류)는 급부의 객관적 목적이 달성된 경우도 아니고,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효력사유도 아님(민법 제423조는 이행청구,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증서 제7조가 민법 제423조를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압류)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 그렇다면 집행문은 가압류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긴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예시 : 연대채무자 ○○○에 대하여 증서 제7조제1호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

하여 채권자 ◇◇◇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3. 공정증서 제7조 상의 '청구'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제6조에서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서식 제7조에서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채권자의 청구’란 곧 채권행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에 필요한 조건이 될 수는 없음.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다시 말하여 제2조에서 정한 이행기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고, 이제는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관계와 유사한 법률관계로 됨. 이는 변제기(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소비대차에서의 법률관계(민법 제603조 참조)와 유사하지만, 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되는 것에 비하여,

제7조 각 호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채권자의 청구 즉시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짐.

한편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집행실무에 따르면 채권자가 최고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간혹 지연손해금 계산과 관련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뿐임.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제7조 각 호의 조건의 성취로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공증인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게 할 필요는 없고,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12 후견계약공정증서 출장 가능 여부 관련
질의 회신(2020. 12. 18.자)**

□ 질의 내용(원문)

1. 본 법무법인에 후견계약공정증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임인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공증인이 출장을 가야만 공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공증인법 제17조제3항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사무소 외에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후견계약공정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판단하여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 출장이 가능할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29호(시행 2020. 12. 18.)〉

1. 귀 회원의 질의 요지는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촉탁인(위임인)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공증인이 출장을 가야만 공증이 가능한 상황(질의자에 대한 전화 확인 결과, 촉탁인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고,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하다고 함)인바, 공증인법 제17조제3항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판단하여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 출장 공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공증인의 직무 수행 장소

공증인법 제17조제3항에서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두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이고(공증인법 제56조제1항), 나머지 하나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4항). 다만 이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 외에는 당해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4항).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인데, 이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공증인법 제34조), 듣거나 목격하거나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사무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촉탁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법령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증실무례입니다(개정판 ‘공증실무’ 제210쪽 참조).

3. 질의의 해결

질의 사안은 “촉탁인(위임인)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고,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정이 있는데,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적용하자면, 촉탁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법령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처럼 출장을 가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만일 피후견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응 촉탁인(위임인)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고,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촉탁인(위임인)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증실무상 후견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후견계약의 성질상 피후견인으로 될 사람인 위임인에 대하여는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본 협회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비록 법령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건의 성질상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질의 사안의 경우 촉탁인(위임인)에게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신체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촉탁인(위임인)에게 공증인이 사무소 밖으로 출장하여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출장하여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촉탁인(위임인)에게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신체적 사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공정증서의 원본 뒤에 연결하여 부속서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둘째, 통상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달리 공증사무소 밖으로 출장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출장한 장소가 작성장소가 되므로 그 취지를 공정증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5조제10호).

셋째, 사건의 성질상 출장을 하여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공증인법 제16조).

13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관련 질의 회신(2020. 12. 18.자)

□ 질의 내용(원문)

당 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입주 건물에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데, 건물주 측에서 해당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해당 간판을 철거하게 되면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위한 간판 게시 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태가 되는바,

- 가. 해당 간판을 철거해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의 미준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 나. 해당 간판을 공증인협회 또는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철거해도 되는지?
- 다. 해당 건물의 다른 곳에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을 게시하여야 하는지?

*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사무소 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30호(시행 2020. 12. 18.)>

1. 질의 요지

귀 회원의 질의 요지는 “당 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입주 건물에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데, 건물주 측으로부터 해당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간판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이 없게 되는바, 가. 해당 간판을 철거해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의 미준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나. 해당 간판을 공증인협회 또는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이 철거해도 되는지 여부, 다. 해당 건물의 다른 곳에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을 게시하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규정

가.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3.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1) 가항에 대하여

간판이라 함은 사전(辭典)적 의미로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말하느바,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간판을 게시하도록 정한 것은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

에게 그 사무소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고(공증인법 제2조제2문), 그런 점에서 공증사무소는 일종의 관청과 같은 것으로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이루어진 공증과 관련하여 승계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증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간판의 개념과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증인의 간판은 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것을 간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무소 밖에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그 장소에 관하여는 공증사무소를 찾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문제가 된 해당 간판이 귀 사무소의 외부에 게시된 유일한 간판이라면,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 사무소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를 준수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2) 나항에 대하여

나항의 질의는 공증사무소의 설치나 그 이전(移轉)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법 제17조제1항), 공증인은 공증인으로 임명되거나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간판의 설치에 관하여 변동 사항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의 인가나 협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증사무소의 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무부령인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판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간판의 게시 장소를 옮기는 것을 공증사무소의 이전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관계법령에서는 공증사무소의 간판을 사무소 밖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증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크기로 간판을 게시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공증사무소와 간판을 게시할 건물 등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람(집합건물의 외벽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단)과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로 사적 영역에 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사무소의 간판 철거 여부에 관해서는 협회나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에서 건물 입구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간판의 게시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이 공증사무소가 일종의 관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추측됩니다.

(3) 다항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무소 밖에 간판을 게시하면 될 뿐, 그 위치나 크기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회원사무소로서는 귀 사무소의 간판 게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잘 협의하여 크기를 조정하여 게시하든 아니면 다른 위치로 옮겨 게시하든 사무소 밖에 게시하기만 하면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귀 사무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아무쪼록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증간판의 공익적 측면을 잘 이해시키고 원만히 협의하여 귀 사무소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귀 사무소를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증서류 보관 창고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질의 회신(2020. 12. 28.자)

□ 질의 내용(원문)

발신인은 ○○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서 소송업무와 공증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공증실 내 공증서류 보관창고 스프링클러를 설치와 관련하여

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사오니 검토 후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방서의 소방검사 결과

○○소방서는 2020. 10. 15. 당 법무법인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에 위치한 공증실 내 공증서류 보관창고 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합니다)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2층 공증실 내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2. ○○소방서의 조치명령에 대해 귀 협회에 질의를 구함

○○소방서는 당 법무법인의 공증실 내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명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 ▷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 ▷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고 공증서류 보관

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아래 당 법무법인의 검토 부분에 대해 귀 협회의 의견이 어떠한지,

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과 관련한 법령 및 고시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시설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

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공증실의 공증서류 보관금고 안에 소화기 비치로 충분함

(1) 이 사건 건물 2층 공증실의 공증서류 보관창고는 법무부의 기준(내화벽돌, 자재 사용)에 맞게 설치된 것임

(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공증서류 보관시설의 경우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공증서류 보관창고는 이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위 규칙은 제4조는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 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서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정 2010.2.5.>

서류보관창고의 시설기준
(제4조제3항관련)

1. 크기는 바닥면적 16.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33㎡ 이상으로 할 것
2. 벽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할 것
 - 가. 두께 200mm 이상의 2중 내화벽돌
 - 나. 두께 150m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구조체
 - 다.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시리카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벽의 경우에 한한다)
 - 라. 내화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1,010℃의 대한 2시간 이상의 내화 및 이면온도 180℃ 미만 유지의 성능을 인정받고 도난방지 성능이 위 각 기준에 상당한 구조체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하여 전체두

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
정장치를 할 것

4. 선반은 내화자재로 제작할 것
5.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
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

와 같이 정하여 화재로부터 공증서류
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
서류 보관창고 시설의 기준을 내화자
재 등으로 설치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
는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경우도 위 기
준에 맞게 설치된 것입니다.

(2) 액체형 소화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입
법예고 된 상태임

위 규칙 별표 5. 5.항 부분을 보면 “창
고 안에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
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
이유는 화재에 대비한 것으로, 공증서
류 훼손, 멸실 위험이 있어 액체형이
아닌 분말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정하
고 있고, 최근인 2020. 7. 3. 공증 서
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액체형 소
화기는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하도록 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첨
부-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이 사건 건물 2층 공증실 내에 이미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이 사건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지만 이 보관창고는 법
무부가 정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자재 등으로 설치되
어 있어 화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
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2층 공증실
내에는 이미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
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로써 소방시
설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고 있습
니다.

(4)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사건 공증서류 보관창고는 법무부
의 인가를 받은 적법한 시설로서 소방
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이는
법무부가 정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
한 규칙에 위반되는 시설이 됩니다.
즉,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보관창고 기준에 의해 이미
내화자재로 시설을 해 두었는데, 스프
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철
거하여야 하고 특히 입법예고 되어 있
는 개정안에 액체형 소화기를 제외하

도록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액체형 소화시설에 해당하여 이는 위 개정 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방서가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5) 소결

이미 건물 2층 공증실 내에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경우 법무부가 정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를 대비하여 내화자재로 설치된 인가 받은 시설물인바, 이로써 화재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여기에 법무부에서 액체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는 점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방서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명령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 하였거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맺음말

이렇듯,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소방서의 조치명령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 질의와 의견을 구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소방서가 2021. 2. 25.까지 조치를 완료하라고 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시급합니다).

[※ 편집자 주]

○○소방서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재발부, 건물 2층 공증실 및 공증서류 보관창고 사진,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은 생략함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0-132호(시행 2020. 12. 28.)〉

1. 귀 회원의 질의 요지는 “당 법무법인은 ○○소방서로부터 공증실 내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①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②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③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고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미 건물 2층 공증실 내에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경우 법무부와 정한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를 대비하여 내화자재로 설치된 인가 받은 시설물이므로 이로써 화재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여기에 법무부에서 액체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는 점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방서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명령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당 법무법인의 검토 부분에 대해 귀 협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입니다.

2. 관련 규정

가. ○○소방서의 조치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의4 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

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p> <p>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 · 2) · 4) · 5) 및 8) 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p> <p>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p> <p>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p> <p>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p> <p>다) 노유자시설</p> <p>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p> <p>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p> <p>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p> <p>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p>	<p>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p> <p>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p> <p>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p> <p>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p> <p>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p> <p>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p> <p>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p>
---	---

-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가목 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

- 라 한다)
-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제12조 제5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증 법령의 공증참고(금고) 설치 근거 규정

공증인법 제13조의2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인법 제15조의6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별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 규칙 별표 1

[별표1] <개정 2010.2.5>

서류보관창고의
시설기준(제4조제3항관련)

1. 크기는 바닥면적 16.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33㎡ 이상으로 할 것
2. 벽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할 것
 - 가. 두께 200mm 이상의 2중 내화벽돌

나. 두께 150m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구조체

다.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화이버 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벽의 경우에 한한다)

라. 내화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1,010℃의 대한 2시간 이상의 내화 및 이면온도 180℃ 미만 유지의 성능을 인정받고 도난방지 성능이 위 각 기준에 상당한 구조체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하여 전체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4. 선반은 내화소재로 제작할 것
5.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

3. 질의에 대한 해결

가.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서류는 물에 젖을 경우에 글

씨가 바래고 훼손되어 공적 증명 문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그것이 작동하거나 오작동하게 되면 공증증서의 원본 등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정보 발급이나 집행문 발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창고는 내화 기능이 있는 철재 금고식으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로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증창고 외부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내화 시설에 의하여 내부의 공증서류에 번지지 않게 하고 있고, 공증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하고 있는 등 소방안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는 공증인법규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고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고 공증서류 보관창고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존 중인 공증증서의 원본 등이 손상 훼손될 수 있는 공증인법규에 중대한 위반을 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 되므로 시정하지 않으면 공증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 이미 건물 2층 공증실 내에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경우 법무부가 정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를 대비하여 내화자재로 설치된 인가 받은 시설물이므로 이로써 화재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여기에 법무부에서 액체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는 점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예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방서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명령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당 법무법인의 검토 부분에 대해 본 협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이미 건물 2층 공증실 내에 11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공증서류 보관창고의 경우 법무부과 정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를 대비하여 내화자재로 설치된 인가

받은 시설물이므로 이로써 화재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 법무법인의 검토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공증창고는 천장을 포함한 그 전체가 철판으로 덮인 일종의 금고이므로, 일반 창고처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액체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는 점과 관련하여서 보자면, 현행 규정에서도 분말형 소화기가 아닌 액체형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기존에 간혹 공증사무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나오는 경우에 본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한공증인협회에서도 공증서류 창고의 특수성을 법령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건의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최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아예 액체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창고 내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 그 설치 인가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인가나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증창고(금고)의 천장은 건물 자체의 천장이 아닌 철판으로 된 금고 내부의 윗부분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이는 어떤 사무소 안에 대형금고를 가져다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고 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소방서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명령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편집자 주]

상기 회신 공문에 첨부한 협회가 법무부에 2020. 4. 3. 발송한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0-40호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희 회신 공문 사본 1부 및 법무부가 2020. 7. 3.자로 공고한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는 생략함

Ⅲ. 공증업무지침 제정 등 건의

① (가칭)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요청(2020. 7. 14.자)

□ 위임계약의 목적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개별 공증사무소 별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협회는 이를 해소하고자 2020. 5. 29.자로 (가칭)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그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위임계약의 유형과 실무관행 등에서의 수수료 산정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이후 협회는 위 업무처리방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전면적 재검토 거쳐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을 새로이 마련한 후 2020. 7. 14. 법무부에 재차 검토를 요청함.

[※ 편집자 주]

이하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과 관련된 협회 의견서 원문은 2020. 7. 14.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공문의 원문만을 게재함. 따라서,
 (1) 회원에 대한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0-59호(시행 2020. 5. 25.)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검토 요청 안내” 공문.

(2) 법무부에 대한 공증협 제2020-63호(시행 2020.

5. 29.)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검토 요청” 공문,

(3) 회원에 대한 공증협 제2020-75호(시행 2020.

6. 29.)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시행 잠정 유예 안내” 공문은 각각 생략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0-81호(시행 2020. 7. 14.)>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에 대한 검토 요청

1. 우리 협회의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0-63호(시행 2020. 5. 29.) 및 귀 부의 문서번호 법무과-5390(시행 2020. 6. 23.)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위임계약의 목적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증실무상 각 공증사무소 별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우리 협회는 이를 해소하고자 2020. 5. 29.자로 (가칭)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안)’을 마련하여 귀 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2020.

7. 1.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부는 2020. 6. 23.자로 위 업무 처리방법(안)에 대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위임계약의 유형과 실무관행 등에서의 수수료 산정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니 검토결과를 회신 할 때까지 그 시행일을 유예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3. 이에 협회도 위 업무처리방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전면적 재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칭)‘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 부에서는 바쁘시겠지만 2020. 7. 31.(금)까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회는 2020. 8. 10.(월)부터 위 (가칭)‘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귀 부에서 위 기한까지 검토 의견을 꼭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가칭)‘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및 그 해설(안)’ 1부.

*** 붙임**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및 그 해설(안)’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공증인수수료징수에 대한 공증사무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위임에 관한 증서의 인증수수료는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임.
- 가령, 위임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3천 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소송위임장이나 등기신청위임장과 같이 전문직에 대하여 따로 위임 약정이 있음에도 국가기관 등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제출할 위임장은 3천 원이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위임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임계약에 관한 증서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그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곳도 있음. 또한 위임계약에 관한 증서의 일종으로 취급한다고 할 때 위임사무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엇이나에 따라 일률적으로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25,750원을 징수하는 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그 법률행위가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무소도 있음.
- 따라서 위임계약에 관한 증서의 공증과 관련하여 그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2조(위임계약의 급부 내용과 목적 가액) ①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급부는 위임인의 뜻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인의 급부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위임사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위임계약의 목적 가액은 수임인의 급부 가액과 위임인의 급부 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설]

- 위임계약은 이른바 불완전쌍무계약으로서 보수 지급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임인과 위임인 쌍방의 급부가 존재함.
- 여기서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급부는 위임인의 뜻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위임인의 급부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뜻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위임사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위임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6조에 따라 수임인의 급부의 가액과 위임인의 급부 가액을 합산하여야 함.

제3조(수임인의 급부 가액) 수임인의 급부의

가액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권리나 의무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해설]

- 수임인의 급부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므로 그 급부의 가액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위임인에게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권리나 의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됨.

제4조(위임인의 급부 가액) 위임인의 급부 가

액은 수임인의 급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한다.

[해설]

- 위임인의 급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위임사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통상 위임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위임인의 급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수임인의 급부 가액은 산정할 수 있으므로, 수임인의 급부 가액이 먼저 산정되면 위임인의 급부 가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수임인의 급부 가액과 동일한 가액이 됨.

제5조(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관

한 증서에 대한 공증수수료) 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위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그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촉탁인 일방 급부의 가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설]

-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위임의 의

사표시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국가기관 등에게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시킬 용도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위임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촉탁인의 급부의 가액을 구하고 그 일방 촉탁인의 급부 가액에 따라 증서작성수수료나 인증수수료를 산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처리방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등기 관련 시정 계도 법원행정처에 요청 (2020. 8. 13.자)

□ 일선 등기소에서 속기록에 대하여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협회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전국 상업등기소 창구의 일선 등기관들에게 결의에 참석한 이사 등에 의하여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에게 인증받은 것을 법인 등기 첨부서류로 받아야 하지,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을 법인 등기 첨부서류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도하여 줄 것을 2020. 8. 13. 법원행정처에 건의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93호(시행 2020. 8. 13.)〉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 목 : 등기 관련 시정 계도 요청

1. 귀 행정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일선 법인 등기 업무가 공증인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 질의를 받고 검토한 결과, 동 사안이 공증인법 제66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귀 행정처에서 위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등기관들을 상대로 붙임과 같이 시정계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정계도요청서 1부.

(2) 관련 사례 등기부등본 1부(생략).

* 붙임

시정계도요청서

본 협회는 귀 법원행정처에 등기관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계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문제의 제기

가.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속기록을 (사서)인증 받아 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등기소에서 속기록에 대하여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 협회는 회원인 공증인으로부터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와 함께 이에 관한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증인 甲은 ○○ 소재 □□2구역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20년 5월 26일자 해산총회에 참석하여 검사하였으며,(공증인법 제66조의2 참조), 해당 총회는 청산인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② 위 乙조합은 丙법무법인에 청산인선

임등기절차를 맡겨 해당 총회의 속기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사서인증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인증 받은 속기록을 첨부하여 청산인선임등기를 부산 본원 등기과에서 경료하였습니다(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라. 귀 법원 소속의 상업등기소에서 위 사례와 같은 잘못된 업무 처리 방식이 쌓여 관행화 된다면 법인 등기제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속기록 등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의사록 인증의 차이점

가.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그 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나. 의사록의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이때의 의사록의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 중 하나에 속하기는 하나 매우 중요한 특수성이 있어서 그 인증 방법도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과는 다릅니다.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참조). 이때 공증인은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3항 참조).

또한 공증인은 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는 의사록 원본 2통, 확인서, 주주(회원)명부, 정관(법인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및 간인 된 것),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촉탁인들(주주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소집절차 준수 증빙서류 등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속서류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속기록의 인증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였다는 것은 속기록 작성자인 속기사 ○○○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속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속기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속기사 ○○○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속기록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속기록을 속기사 ○○○이 작성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된 것이지만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공증인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3. 소결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여 부실한 등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상업등기소 창구 등기관이 만연히 단순 진정성립 여부만 확인이 된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으로 된 속기록 인증서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경로해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속기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에 의하여 법인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 시정 계도 요청

그러므로 귀 행정처에서 전국 상업등기소 창구의 일선 등기관들에게 결의에 참석한 이사 등에 의하여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에게 인증받은 것을 법인 등기 첨부서류로 받아야 하지,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을 법인 등기 첨부서류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도하여 추후 위와 같은 잘못된 업무 처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IV. 공증업무 지침 · 지시 등 회원 안내

1 전자투표 관련 의사록 인증 방법 회원 안내
(2020. 2. 26.자)

□ 의사록 참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임원 선임에 관하여 총회에서의 현장 투표 외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있는 경우 검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방법을 2020. 2. 26.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27호(시행 2020. 2. 26.)>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전자투표 관련 의사록 인증 방법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록 참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임원 선임에 관하여 총회에서의 현장 투표 외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있는 경우 검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의사록 인증 업무 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전자투표 관련 의사록 인증 방법

안내) 회신 1부

※ 붙임

질의(전자투표 관련 의사록 인증 방법)
회신

제목 : 의사록 참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임원 선임에 관하여 총회에서의 현장 투표 외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있는 경우 검사의 범위와 방법은?

○ 질의내용

주주총회나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함에 있어서 투표방법으로 현장에서의 직접 투표 이외에 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와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고 총회 현장에서 각 투표방법에 따른 집계결과 및 총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임원선임안의 결과를 발표하는바,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의 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

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2항). 물론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때에도 공증인법 제66조의2제5항, 제59조, 제25조에 따라 의사록을 심사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 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록의 기명날인 등과 의사록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2) 공증인이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촉탁인)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서증서의 일종인 의사록을 공증인법 제57조제1항의 자인인증의 방법으로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즉, 총회 등 회의의 현장에서 결의한 대로 의사록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사록 내용의 진실성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의 방법으로 확인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습니다.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여부를 검사하고(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제1항), 의사록의 내용이 검사결과와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합니다.

검사의 대상은 의사록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모두입니다. 그리하여 의장의 가결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도 있고(위 지침 제10조제2항),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고성과 폭언 등 소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관계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위 지침 제10조제3항). 그렇다고 공증인이 회의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위 지침 제10조제4항).

- (3) 한편,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368조의3제1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4제1항)(※ 주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즉 전자투표는 총회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호 참조) 전자투표도 사전투표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전투표라고 함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함). 이와 같이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하여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투표 결과와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투표 결과가 합산되어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석인증을 할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나 전자투표의 과정까지 직접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현장에서 검사할 때도 총회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증인은 사전투표한 용지나 전자투표한 화면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은 의장의 주재로 현장에서 투표한 결과에 사전투표하거나 전자투표한 결과를 합산하여 총 투표결과가 집계되고 그에 따라 의장이 총회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 앞에서 가결 또는 부결 선언을 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고(상법 제368조의3제1항),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8조의4제1항), 공증인은 사전투표 또는 전자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사전투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또는 전자투표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참석인증을 할 때 적용되는 사전투표나 전자투표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재개발조합총회의 의사록에 관하여 참석인증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결론적으로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투표 외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총회 구성원들이 의장의 가결 또는 부결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의사록 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사전투표나 전자투표에 관하여 특별히 더 조사할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사록 참석 인증 시 사전투표나 전자투표가 있을 경우에도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공증인이 총회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6) 주의할 것은 공증인이 의사록의 진정성립 및 그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의 부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록과 부속서류의 기재, 촉탁인이나 대리인의 진술, 공증인의 경험 등을 토대로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

친다는 점입니다.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공증인법 시행령 제 12조), 적극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의사록 공증 관련 법무부 안내 협조 요청의 건 회원 안내(2020. 4. 1.자)

□ 코로나19로 인한 의사록 인증사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해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런 방식으로도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일선 공증사무소에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법무부 협조 공문을 2020. 4. 1. 각 회원사무소에 회람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39>호(시행 2020. 4. 1.)>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의사록 공증 관련 법무부 안내 협조 요청

의 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사록 인증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해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런 방식으로도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일선 공증사무소에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나 총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니,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증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협회가 전국의 공증사무소에 널리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불임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니다.
3. 이에 법무부 공문 사본을 회원 사무소에 전달하여 드리니 의사록 인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비대면 온라인 방법으로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국한되므로 가령, 청문인증의 경우에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료부터 촉탁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 나머지

사항은 모두 중전의 예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무부에서 보내온 “의사록 공증 관련 안내 협조 요청” 공문(법무과-2970 호) 사본 1부(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보도 자료 포함)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2970
(2020. 3. 26.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의사록 공증 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국무총리실에서는 최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 또는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해 개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붙임] ‘[보도자료]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3. 한편, 국무총리실의 위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 뒤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촉탁하고 있으나,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온라인 방식의 총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공증사무소가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 또는 총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이사회 또는 총회결의 의사록의 공증촉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 습니다.
- ▷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 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 ▷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 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 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관련 법무부 의견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

- 공익법인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 향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공익 법인법 제7조제1항) 있는데, 이사회의 의 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 공익법인법이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 에 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 으로 금지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 또한 이 런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①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② 참여자 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 사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 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 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 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 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 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절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

- 민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 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68조),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 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 법 제73조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민법 제75조제2항).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3 화상공증관련 안내 협조 요청 법무부 공문
회원 지정공증인 회원 전달(2020. 4. 3.자)

□ 지정공증인들이 화상공증 촉탁을 받을 경우 그 이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촉탁인들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무부 협조 공문을 2020. 4. 3. 각 지정공증인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42호(시행 2020. 4. 3.)〉

수 신 : 각 지정공증인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화상공증관련 안내 협조 요청 법무부
공문 전달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공증사

무소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화상으로 대면절차를 진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차체에 지정공증인들이 화상공증 촉탁을 받을 경우 촉탁인들에게 이용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참고자료로 전자공증시스템 매뉴얼 및 화상공증 교육자료의 전파를 요청”하는 불임과 같은 공문을 받았기에, 이를 귀 회원 사무소에 전달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무부 “화상공증관련 안내 협조 요청”
공문(법무과-2971호) 사본 1부.

별첨 : 법무과-2971호 공문 붙임

- (1) 전자공증시스템 화상공증 촉탁 매뉴얼 1부.
- (2)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교육자료 1부.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2971(2020. 3. 26.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화상공증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공증사무소 또

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한편, 국민들이 화상으로 대면절차를 진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한다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지정공증인들이 화상공증 촉탁을 받을 경우 그 이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촉탁인들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의 붙임자료를 지정공증인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귀 기관에서도 촉탁인(촉탁대리인)에게 ‘화상공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자공증시스템_화상공증_촉탁인 매뉴얼 1부.
- 2.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_교육자료 1부

[※ 편집자 주]

상기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2971(2020. 3. 26. 시행) 공문의 붙임 매뉴얼 및 교육자료는 각 생략함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 안내 (2020. 4. 28.자)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공증인의 면전에서 ① 원문과 번역문의 상 위없음을 서약, ② 서명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③ 제3자의 서명대행, ④ 공증인이 위 권한위임사실의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 안내를 요청하는 법무부의 협조 공문을 2020. 4. 28.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55호(시행 2019. 6. 21.)〉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 관련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번역공증을 촉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진정0040900)이 있어서 법무부가 위 결정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회원사무소에 전파하여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3. 전파하여달라는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장

에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촉탁인이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공증인의 면전에서 ① 원문과 번역문의 상위없음을 서약, ② 서명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③ 제3자의 서명대행, ④ 공증인이 위 권한위임사실의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음.

4. 법무부가 위 결정요지를 참고하여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불합리하게 번역공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인보조자에 대하여 교육할 것을 요청해 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할 수 없는 촉탁인 대신 촉탁인의 성명을 적게 하여 번역문인 증 업무를 처리할 때 만연히 통상의 방식대로 처리할 경우에는 서약서와 인증문의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촉탁인이 동반한 사람을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의 참여인으로 삼아

※ 그로 하여금 촉탁서에 촉탁인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촉탁서 비고란에 “촉탁인이 _____ (으)로 인하여 글자를 쓸 수 없으므로 ○○○가 참여인으로서 촉탁서와 서약서의 촉탁인이 기재할 부분을 촉탁인의 요청으로 대신 작성함.”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날인하게 함.

※ 결정문에서는 ‘서명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증에서는 서명대행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타인에 의하여 대행된 서명은 기명으로 취급됨.

둘째, 국문으로 된 인증문 내용 중 ‘서명날인하였다’는 ‘기명날인하였다’로 고쳐야 함.

붙임 : 법무부에서 보내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 공문(법무과-3536호) 사본 1부(단, 동 공문에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제외함).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3536(2020. 4. 20.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번역공

증을 촉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진정0040900)이 있었습니다.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진정0040900)

[결정요지]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촉탁인이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인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공증인의 면전에서 ① 원문과 번역문의 상위없음을 서약, ② 서명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③ 제3자의 서명대행, ④ 공증인이 위 권한 위임사실의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음.

3. 귀 기관에서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위 결정의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고,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불합리하게 번역공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인보조자 교육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부(생략)

5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회원 안내
(2020. 10. 16.자)

□ 승계집행문 부여 시 승계인으로부터 제출 받는 서류를 보관할 때는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보존하되, 만일 승계인이 채권 양도계약서 등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증서 뒤에 연철하는 부속서류에 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원본 환부서 및 등본을 원본 대신 보관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2020. 10. 16.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111호(시행 2020. 10. 16.)〉

수 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목 :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가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승계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의 공증사무소 보관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의 미비로 실무상 업무처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원본 그 자체를 보관하는 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원본은 승계인에게 반환하면서 그 사본을 보관하는 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통일된 공증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와 같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승계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를 보관할 때는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보존하되, 만일 승계인이 채권양도계약서 등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증서 뒤에 연철하는 부속서류에 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원본환부서 및 등본을 원본 대신 보관할 것을 권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언의 철회에 관한 공증업무처리방법 회원 안내(2020. 10. 16.자)

□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이를 철회하려고 할 때, 공증실무상 어떠한 방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종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협회는 종전의 유언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유언방식이 아닌 민법 제1108조에 따른 생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생전행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109조 또는 제1110조에 따라 철회로 간주되는 행위만을 의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이 아니면 유언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서증서는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것을 2020. 10. 16.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111호(시행 2020. 10. 16.)〉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유언의 철회에 관한 공증업무처리 방법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이를 철회하려고 할 때, 공증실무상 어떠한 방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협회는 불임과 같이 그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언의 철회에 관한 공증업무처리 방법 안내 1부

* 붙임

**유언의 철회에 관한
 공증업무처리 방법 안내**

- 유언자는 종전 유언에 관하여 언제든지 유언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 때 철회하려고 하는 유언과 철회유언이 동일한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정한

다른 방식 가령, 자필증서 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을 철회할 때 반드시 정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의 철회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유언에 불과하므로, 종전 유언공정증서와 별개로 새로이 철회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부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종전유언을 철회하는 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철회유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응 종전 유언을 특정하여 (가령 작성한 공증사무소 및 증서번호, 작성일자, 작성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 등을 기재하여 특정) 이를 철회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새로이 하고자 하는 유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종전 유언만 철회할 뿐 다른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철회한다는 내용만 있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서로 저촉되는 유언이 있을 경우에 늘 뒤에 이루어진 유언이 유효하므로(민법 제1109조), 변경한 유언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민법 제1108조에 의하면 유언 방식이 아닌 생전행위로써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생전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현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전행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109조 또는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철회로 간주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증 업무처리 방법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자에 따르면 자필증서 방식이 아니라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워드로 작성한 문서로도 가능하고, 그와 같은 사서증서에 관하여도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후자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이 아니면 유언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서증서는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업무처리방법이 타당한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판가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우리 협회는 후자의 입장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일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게 되면 유언을 요식행위로 정한 취지가 몰각됩니다.

둘째,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보통 유언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언 외의 방식으로 인정한 예로는 기껏해야 유언철회의사표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정하

고 있는 정도뿐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자의 견해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였으나 뒤늦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경우에 결과적으로 무효인 사서증서에 관하여 인증을 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V. 기타 주요 활동

① 임원 변동 현황

(1) 사임

□ 박종순 부협회장

- 일신상의 사유로 2020. 11. 27.자 사임서 제출

□ 방영철 부협회장

- 공증인 정년으로 2020. 12. 31.자 당연 퇴임

□ 이승호 재무이사

- 제21대 집행부 출범 당시 2020. 12. 31.까지 재임하기로 하고 취임함에 따른 퇴임

□ 노순일 이사

-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 2020. 9. 24.자로 공증담당변호사(구성원)를 탈퇴하면서 회원에서 탈퇴되어 자동 사임

□ 김재춘 이사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2020. 11. 20.자로 공증인가 취소되면서 회원 탈퇴되어 자동 사임

(2) 직무변경

□ 안철현 상임이사

- 윤리 담당 업무에서 회원 담당 업무로 2021. 2. 8.자 직무 변경

□ 배헌수 상임이사

- 회원 담당 업무에서 재무 담당 업무로 2021. 2. 8.자 직무 변경

(3) 임원 보궐 선임

□ 부협회장에 이철환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보궐 선임.

○ 주요 경력

- 1971. 광주고등학교
- 1978. 전남대학교 법학과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변호사 개업
- 1991. 전남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 1997. 조선대 법과대학 행정법 강사
- 2000. 광주지법 순천지원(여수시) 판사
- 2001.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03.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2006.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
- 2008.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2020.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업무협조 요청 사항 회신(2020. 1. 13.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로부터 2020. 1. 6. 공증인법 제79조(감독기관) 및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2019. 4. 27. 법무과-3793호 “공증사무 특별 확인·조사 협조 의뢰”로 동검찰에 조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하여, 협회에 임명공증인 사무소 1곳, 인가공증인 사무소 4곳의 2016. 1. 1.부터 2017. 12. 31. 또는 2018. 12. 31.까지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의 명단, 연락처, 신고서류 사본 일체 등을 업무협조 요청한 데 대하여, 협회는 관련 자료를 2020. 1. 13. 서울중앙지검에 회신함.

③ 제4차 권역별(부산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 간담회 개최(2020. 2. 3.)

□ 협회와 회원의 공증업무 처리 고충과 실무적 애로사항을 직접 회원들을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권역별 회원 간담회를 추진, 2020. 2. 3.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을 대상으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임원과 참여 회원 간 공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간담회 일정 및 내용

- (1) 일시·장소 : 2020. 2. 3.(월) 18:30~20:30, 부산 연제구 소재 한식당(가야골)
- (2) 참석 회원 : 이점인(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등 총 8명
- (3) 협회 참석 : 협회장, 박형연 국제이사, 김영찬 이사, 사무국장
- (4) 간담회내용 : 협회 업무보고 및 회원 의견 청취
 - 공증과 관련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필요성 의견 개진
 -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상 쌍방대리 금지 규정 개정의 필요성 의견 개진
 - 공증인 정원제도 개선 방향 검토
 - 번역업체의 문제점 지적 및 공증수수료 할인 행위 자정 필요성 의견 개진

4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추천
(2020. 2. 4.자)

- 법무부가 협회에 추천 의뢰한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양경석 대표공증담당변호사를 2020. 2. 4. 법무부에 추천함.

5 공증사무검열 일시 중단 희망 여론 법무부 전달(2020. 3. 2.자)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공증사무소를 다니면서 진행되는 공증사무검열을 당분간 일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공증업계의 중론을 2020. 3. 2.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30호(시행 2020. 3. 2.)〉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공증사무검열 일시 중단 희망 여론 전달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도 감염증 확산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감염증의 교정시설 유입을 막기 위해 변호인 접견 자체를 권고했고, 검찰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원은 구속사건 등 필요불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해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고, 변호사업제도 정기총회와 각종 세미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증업계에서도 각 공증사무소 차원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우리 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귀 부의 공증사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적은 인력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국의 공증사무소에 대하여 빠짐 없이 검열하려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열사무의 특성상 여러 지역을 오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열관의 건강을 위해서나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검열사무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공증업계의 중론입니다.

4. 이에 공증업계의 중론을 전달하오니 귀부의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연기개최 홍보 법무부에 건의(2020. 3. 9.자)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소규모 법인기업이나 공증사무소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 중에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법무부 차원에서 언론이나 법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하는 대국민홍보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2020. 3. 9.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0-36호(시행 2020. 3. 9.)>

수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연기개최 홍보 건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회원사무소로부터 불임과 같은 건의문을 접수하였는바, 그 요지는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인 요즘 귀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상장회사 등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연기 등에 따른 불이익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소규모 비상장 회사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정기주주총회와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 사무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어 공증사무소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 관계기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기 개최하여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우리 협회가 나서서 건의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3. 위 건의문을 검토한 결과, 위 건의문에 의하면 마치 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고 있는 것이 법령상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주식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주로 3월에 개최하고 있는 것은 사업연도 결산 및 이에 따른 세무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그리 정한 것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고, 4월 이후에 개최한다고 하

더라도 정관에 위배될 뿐 주주명부 폐쇄일이나 기준일을 유연하게 처리하면 상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김교창 著, 『주주총회의 운영』 제3전정판 제47쪽 이하 참조).

4. 그렇다면 소규모 법인기업의 정기주주총회나 그에 따른 의사록인증사무가 3월에 한꺼번에 물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나서서 취할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월 1일부터 또는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이미 공고하여 이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에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법인등기신청 사무를 취급하는 법무사업계나 법인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사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공증사무소는 3월 중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사무가 폭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회원의 걱정은 단지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5.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규모 법인기업이나 공증사무소를 보호한다

는 차원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 중에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귀 부에서 나서서 언론이나 법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홍보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무법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기주주총회 연기 등에 따른 불이익 면제 조치 건의’공문 사본 1부

※ 붙임

○○ 법무법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기주주총회 연기 등에 따른 불이익 면제 조치 건의’ 공문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최근 급격하게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거나,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정기주주총회의 안전한 개최 지원 방안을 발

표한 바 있습니다.

- (3) 그러나 소규모 비상장 회사들의 경우 상기 지원 방안의 대상이 아니다보니 현재와 같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적 안전거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특정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일시적이거나 영업장 폐쇄가 된 경우 등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안전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 또한 등기변경을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공증인의 의사록 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 (4) 주주들의 입장에서든 전자투표라든지 서면투표를 도입한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다보니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 보호와 주장을 위해서는 각양각지에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회사가 아닌 정기총회에 관하여 등기를 요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5) 또한 주로 3월부터 4월 초에 걸쳐 한꺼번에 의사록인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저희와 같은 의사록 인증을 주로 취급하는 공증사무소에서도 당장 한꺼번에 여러 고객을 상대하게 될 경우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진 환자가 공증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증사무소를 일정 기간 폐쇄하고 접촉자 직원이나 공증인이 자가 격리 등 조치를 당하게 되는 등의 염려도 있습니다.

- (6)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 인증 사무가 물리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만이라도 의사록 인증사무소가 물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여 코로나19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법무부, 대법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업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대국민발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7) 이러한 의견은 비단 저희 사무소만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의 공증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도 확인된 의견이오니, 귀 협회에서 법무부에 건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2020. 6. 9.자)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

른 위원 선임을 위한 법무부의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하여, 임명공증인으로 박중욱 법제이사를, 인가공증인으로 이점인 부협회장(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을 2020. 6. 9. 각각 법무부에 추천함.

8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정례화 건의(2020. 8. 20.자)

□ 법무부의 2020년도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공증관계 각종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주기 바라면서 동 위원회를 매달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줄 것을 2020. 8. 20. 법무부에 요청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9-40호(시행 2019. 5. 20.)〉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합동특별감독 후속조치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협회는 귀 부의 공증제도개선위원 추천 요구에 따라 임명공증인 1인 및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1인을 추천한 바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조만간 공증제도개선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협회는 2020.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공증관계 각종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가 매달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4. 아울러 2017. 3. 이후 협회가 귀 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별첨 자료는 2017. 3. 이후 귀 부에 검토를 요청한 건의서 등 중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건의서 등입니다.

별첨 : 자료(목록 포함).

※ 붙임

〈자료 목록〉

- (1) 법무부차관님(장관 직무대행) 예방 시 협회장님 주요 말씀자료 / 2017. 4. 24. 예방
- (2) 법무부장관님 예방 시 협회장님 주요 말씀자료 / 2017. 9. 7. 예방
- (3) 협회 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문서번호 공증협(이하 생략함) 제2017-85호(2017. 11. 23. 시행)
- (4) 법무부 법무실장님과의 간담회 주요 말씀자료 / 2018. 1. 19. 예방
- (5) 유공 공증인 법무부장관 표창 시 협회장님 말씀 자료 / 2018. 10. 15. 예방

- (6) 유증된 예금의 지급 거절 사례 관련 시정요구 요청 / 제2019-43호(2019. 5. 24. 시행)
- (7) 공증인 업무 광고 관련 지침 제정 건의 / 제2019-44호(2019. 5. 24. 시행)
- (8)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개정안 제시 / 제2019-56호(2019. 7. 11. 시행)
- (9) 화상공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정보 서면증명서 발급 업무지침 제정 요청 / 제2019-72호(2019. 9. 19. 시행)
- (10)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증서 작성 지침’ 제정 건의 / 제2019-89호(2019. 11. 15. 시행)
- (11) 자기신탁 공증서에 관한 서식이나 표준안 마련 건의 / 제2019-92호(2019. 11. 15. 시행)
- (12) 초창장 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건의 / 제2019-93호(2019. 11. 21. 시행)
- (13)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2차 의견서의 수정본 제출 / 제2020-70호(2020. 6. 12. 시행)
- (14)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에 대한 검토 요청 / 제2020-81호(2020. 7. 14. 시행)

9 인증서 위조 사례에 대한 고발 진행

□ 협회는 2020. 5.경 발생한 □□지방검찰청 소속 ○○○ 공증인 사무소 명의 및 서명

등을 도용한 인증서 위조 사례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형사고발하였고, 서초경찰서에서 이를 수사한 이후 사건이 인천지검 부친지청으로 이첩되어 피의자를 백 모씨로 특정하고, 2021. 2. 26.자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동 피의자를 불구속구공판 결정(2020년 형제 40697호)을 내림.

10 한정화 변호사 개발 공증사무 프로그램

무료 배포

□ 임명공증인 한정화 변호사가 개발하고 협회에 제반 권리를 증여한 공증사무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설치용 프로그램 및 동영상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고, 2020. 5. 말부터 2020. 6. 12.(금)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급 신청을 받은 결과 151개소에서 신청함.

□ 협회는 신청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으로 구글드라이브 등에 업로드된 프로그램 및 동영상 매뉴얼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접근경로 배포를 완료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비공개 사용자 커뮤니티 밴드를 개설,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정화 변호사 및 프로그램의 최초 사용자인 임명공증인 이용철 변호사 등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20. 12. 31. 기준 밴드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

및 사무직원은 100명임.

11 2020~2022 회기의 UINL 산하 CAAs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등 일괄 사임

□ UINL이 아시아 회원국(CAAs)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시아 공증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협회가 맡은 2020~2022 회기의 UINL 산하 CAAs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등을 일괄 사임함

□ 아시아 회원국의 언어와 역사, 법률 체계의 상이성 때문에 아카데미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회원국 간 상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한 항의 차원임. 임기는 2020~2022 회기 임기에서 2020년도 1년으로 단축키로 함.

□ 이후 CAAs 회원국은 종전과 같이 1년 임기로 각 회원국이 순번제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2021년도 위원장에는 베트남공증인협회가, 2022년도는 일본공증인연합회가 맡기로 함.

12 CAAs 회원국 영문 공증인법 모음 편찬
자료 CAAs 회원국 배포(2020. 9. 3.자)

□ 2020 CAAs 위원장 자격으로 CAAs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각 회원국의 영문 공증인

법 자료를 한 데 모은 편찬 자료를 CAAs 각 회원국에 배포함(2020. 9. 3)

13 2020년도 공증 사무직원 연수 서면교육
대체 시행

□ 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른 공증 사무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20년도 공증 사무직원 교육”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종전 집합교육에서 자발적 서면교육으로 대체하여 시행함.

□ 서면 교육 자료는 2019년도 공증 사무직원 교육에서 배포하여 드린 공증실무상시자문단의 상담 내용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상담내용을 각 공증실무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내용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공지사항(로그인 후 내부공지 확인)에 게재함.

VI. 2020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20. 1. 7. : 2019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20. 1. 7. : 2020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20. 1. 7. :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시행(재) 안내 / 회원
- 2020. 1. 8. : 제4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회원
- 2020. 1. 9. : 2020년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②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 논의 ③ 기타 논의
- 2020. 1. 13. : 업무협조요청(공증사무 관련) 회신(자료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형사 제○부)
- 2020. 1. 14. : 2020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문서 관리 프로그램 제작·보급 TF 구성 논의 ② 공증인법 위반 형사고발 재판 증인소환장 관련 논의 ③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논의 ④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 ⑤ 2020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⑥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검토 ⑦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검토 ⑧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논의 ⑨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⑩ 공증실무(위임장 공증수수료 및 협동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관련) 질의·회신 논의 ⑪ 임명공증인회 YouTube 관련 교육 협조요청사항 논의 ⑫ 2020년도 사무국 직원 연봉 책정 논의 ⑬ (추후 의안) 공증인 및 공증 제도 개선 방안 논의 ⑭ 기타 논의
- 2020. 1. 17. : 공증인 YouTube 실무 교육 참가 신청 안내 / 회원
- 2020. 1. 21. : 2020년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 결정 ② 기타 논의
- 2020. 1. 29. : 질의(총회 구성원 수 산정 기준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 29. : 증인소환장 관련 협회 의견 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 2020. 1. 29. : CAAs 부위원장 선출 관련 의견

개진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2. 4. : 2020년도 제2차(임시)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변경안 검토 ②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변경안 논의 ③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변경안 논의 ④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⑤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⑥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⑦ 임원의 해외 출장 시 출장비 논의 ⑧ 2020. 1. 21.자 SBS 뉴스 보도 관련 논의 ⑨ 2020년도 사무국 직원 연봉 책정 ⑩ (추후 의안)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논의 ⑪ 기타 논의

□ 2020. 2. 5. :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 절차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사항 안내 / 회원

□ 2020. 2. 5. :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 명부 및 변경 신고 안내 / 회원

□ 2020. 2. 6. :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3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20. 2. 20. :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3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0년도 사업계획 승인 (원안 의결) ②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③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④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⑥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⑦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안 승인 (원안 의결) ⑧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추천 (원안 의결) ⑨ 재인가 불허 인가 공증인의 2020년도 연회비 반환 논의 (이사회 대안 의결) ⑩ 공증사무프로그램 무상기부에 따른 감사패 등 증정 논의 (이사회 대안 의결) ⑪ 공증실무(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및 조합의 임시총회 참석인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상임이사회에 위임 의결) ⑫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의사록인증 처리방법 관련 논의 (이사회 대안 의결) ⑬ 기타 논의

□ 2020. 2. 20. : 2020년도 CAAs 활동계획 전달 / CAAs 회원국

□ 2020. 2. 24. :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 겸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20. 2. 24. :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협회장 등 임원 선출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 회원

- 2020. 2. 24. :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 위원 추천 / 법무부
- 2020. 2. 24. : 조지아공증인회의 국제컨퍼런스 자료협조 요청 서한 발송 / 조지아공증인회
- 2020. 2. 26. : 전자투표 관련 의사록 인증 방법 안내 / 회원
- 2020. 2. 27. :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협회장 후보 등록 신청 시 후보자 소견서(자유양식) 제출 안내 / 회원
- 2020. 2. 28.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사실조회 회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 2020. 3. 2. : 공증사무검열 일시 중단 희망 여론 전달 / 법무부
- 2020. 3. 3. : 러시아연방공증인연합회의 2020 SPBILF 초청에 대한 불참 통보 서한 발송 / 러시아연방공증인연합회
- 2020. 3. 3.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사실조회 회신(의견서 내용 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 2020. 3. 6. : (선거관리위원회) 대한공증인협회 제21대 신임 임원 선출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무투표 선거 안내 / 회원

- 2020. 3. 9. : (선거관리위원회) 대한공증인협회 제21대 신임 임원 선출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무투표 선거 안내 공문 중 정정 통지 / 회원
- 2020. 3. 9.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 연기개최 홍보 건의 / 법무부
- 2020. 3. 11. : 2020년도 CAAs 제10차 정기 회의 개최일정 확정 및 일정 안내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3. 26.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무부
- 2020. 3. 28. :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21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출 (명단 아래) ② 제21대 감사 선출 (명단 아래) ③ 제21대 상임이사 및 이사 선임 동의 (명단 아래) ④ 조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⑤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원안 의결) ⑥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⑦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⑧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⑨ 기타

※ 2020년도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및 의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제21대 신임 임원 명단

❖ 협회장

남상우 [안산제일 공증인합동사무소]

❖ 부협회장 / 가나다순

- 김중선 [법무법인 부일]
- 박중순 [법무법인 한미]
- 박형연 [법무법인 코러스]
- 방영철 [법무법인 광주로펌]
- 이점인 [법무법인 우리들]
- 이춘희 [법무법인 삼일]

❖ 감사 / 가나다순

- 김진섭 [법무법인 서울제일]
- 이상석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상임이사 / 가나다순

- 김재수 [공증인 김재수 사무소]
- 박중욱 [공증인 박중욱 사무소]
- 배현수 [법무법인(유한) 우일]
- 안경재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
-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 이승호 [법무법인(유한) 한별]
- 정진혁 [법무법인(유한) 충청]

❖ 이사 / 가나다순

- 강경철 [법무법인 정맥]
- 김재춘 [법무법인(유한) 화우]
- 김점동 [법무법인 백제]
- 김중기 [법무법인 범어]

- 노순일 [법무법인 명성]
- 류혜민 [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 문정환 [공증인 문정환 사무소]
- 박인출 [목포합동법률사무소]
- 박종웅 [서원 법무법인]
- 신면주 [법무법인 원울]
- 양경석 [법무법인 신세기]
- 양승원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 유재복 [법무법인 대전합동]
- 윤찬열 [법무법인 다우]
- 이용철 [공증인 이용철 사무소]
- 정원기 [법무법인 우원]
- 진영광 [법무법인 우리법률]
- 한정화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황순현 [공증인 황순현 사무소]
- 황정복 [장원 법무법인]

- 2020. 4. 1. : 의사록 공증 관련 법무부 안내 협조 요청의 건 회람 / 회원
- 2020. 4. 3. :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무부
- 2020. 4. 3. : 2020년도 정기총회 결과 안내 및 제21대 임원 선출 안내 / 회원
- 2020. 4. 3. : 대한공증인협회 제21대 상임이사 (이사) 선임 통보 / 제21대 상임이사 및 이사
- 2020. 4. 3. : 화상공증 관련 안내 협조 요청 법무부 공문 전달 / 지정공증인 회원

- 2020. 4. 6. : 제21대 협회장 재선임 안내 및 2020년도 CAAs 제10차 정기회의 관련 서한 발송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4. 6. :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보류 및 전문개정 추진 건의 / 법무부
- 2020. 4. 7. : 2020년도 정기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20. 4. 7. : 질의(협동조합 정기 대의원총회 의사록 인증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4. 9. : 인증서 위조 사례 보고 및 수사 지휘 건의 / 법무부
- 2020. 4. 28.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회원 의견수렴 / 회원
- 2020. 4. 28. : 공증인 연수 교육 대체를 위한 협회밴드 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회원
- 2020. 4. 28.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요일별 상담신청 문자 접수용 번호 변경 안내 / 회원
- 2020. 4. 28. :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 관련 회람 / 회원
- 2020. 5. 7. : 질의(인지세 납부의 대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5. 13. : 민원(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인의 성명 질의) 회신 / 민원인 ○○○
- 2020. 5. 18. : 2020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20년도 CAAs 제 10차 정기회의 토론 주제(Agenda) 결정 ② 임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 ③ 회무 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④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자문위원 추가 위촉 및 상담수당 지급기준 변경 ⑤ 인증서 위조 사례에 대한 고발 논의 ⑥ 조사위원회 구성 논의 ⑦ 『공증과신뢰』 2019년도·2020년도 합본 출간 논의 ⑧ 공증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행 논의 ⑨ 공증문서 관리 프로그램 보급 관련 제반 사항 논의 ⑩ (가칭)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제정 건의 논의 ⑪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협회 개정의 건 건의 논의 ⑫ 사무국 이전 준비에 관한 논의 ⑬ 임기 만료된 제20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논의 ⑭ 2020년도 제 2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⑮ 기타 논의
- 2020. 5. 25. : 2019년도·2020년도 합본 『공증과 신뢰』(통권 제12호) 게재 원고 모집 안내 / 회원
- 2020. 5. 25. :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검토 요청 안내 / 회원

- 2020. 5. 25. : 공증문서 관리 프로그램 Beta Version 보급 안내 / 회원
- 2020. 5. 26. : 질의(참석인증 시 공증인의 직무 집행구역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5. 27. : 2020년도 제2차 이사회 겸 제5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20. 5. 29. :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검토 요청 / 법무부
- 2020. 5. 29.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법무부
- 2020. 5. 29. :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변경 안내 서한 발송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5. 29.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2차 의견서 제출 / 법무부
- 2020. 6. 9.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20. 6. 12.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 2차 의견서의 수정본 제출 / 법무부
- 2020. 6. 18.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약정금(2019나○○○○○○○(반소))” 사실조회 회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 2020. 6. 22. : 2020년도 제2차 이사회 겸 제5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3기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원안 의결) ② 인증서 위조 사례에 대한 고발 재논의 (대안 의결) ③ CAAs 2020 서울 회의 연기 또는 화상회의로의 전환 검토 논의 (대안 의결) ④ 협회 사무국 이전 검토 (계속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0. 6. 23.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인사 서한(이메일) 발송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20. 6. 25. : UINL 제2차 SC(운영위원회) 회의에서의 활동 보고를 위한 CAAs 회원국 현황 자료 수집 요청 / CAAs 회원국
- 2020. 6. 26. : 2020년도 CAAs 정기회의 취소 및 순연 관련 회원국 의견 수렴 / CAAs 회원국
- 2020. 6. 29. : 위임계약에 관한 급부 가액 등의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시행 잠정 유예 안내 / 회원
- 2020. 7. 2. : 화상공증 홍보용 마스크 배포 협조 의뢰 법무부 공문 전달 / 지정공증인 회원

- 2020. 7. 3. : 아시아 공증인아카데미 설립 관련 CAAs 회원국 의견 수렴 / CAAs 회원국
- 2020. 7. 9. : 아시아 공증인아카데미 설립 추진에 관한 CAAs의 요청 발송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7. 10. : UINL 제2차 SC(운영위원회)에서의 2020년도 상반기 CAAs 활동 보고서 제출 및 회람 / UINL 및 CAAs 회원국
- 2020. 7. 14. :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에 대한 검토 요청 / 법무부
- 2020. 7. 17.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0. 7. 20. : 2020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3기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② 대국회 활동을 위한 (가칭) 입법위원회 또는 입법활동TF 구성 논의 ③ (가칭) 위임계약의 급부 가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해설(안) 추진 ④ (가칭) 사서증서의 형식 등에 관한 인증업무처리방법(안) 제정 논의 ⑤ 속기록 인증서로 조합이사 선임 등기 경로 사례 대책 논의 ⑥ 상임이사회 화상회의 추진 논의 ⑦ 기타 논의
- 2020. 7. 23. : 제3기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통지 / 신임 위원
 - ▶ 제3기 조사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법무법인 신세기]
 - ▶ 제3기 조사위원회 위원 / 가나다순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 남궁성배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안경재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정원기 [법무법인 우원]
- 2020. 7. 31. : CAAs 위원장 사퇴 등 통지 / UINL 회원국 및 CAAs 회원국
- 2020. 8. 6.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정례화 건의 / 법무부
- 2020. 8. 7. : 질의(인증부 기재사항 관련) 회신 / 민원인 ○○○
- 2020. 8. 7. : CAAs 후임 위원장 선임 등 의견 제안 / CAAs 회원국
- 2020. 8. 10. : CAAs 위원장 사퇴 철회 및 간담회 개최 요청에 대한 회신 / UINL 회장
- 2020. 8. 13. : 질의(속기록 인증서로 조합이사 선임 등기 경로 사례의 당부 및 그 검사 수수료 처리 방법) 회신 / 공증인 ○○○
- 2020. 8. 13. : 등기 관련 시정 계도 요청 / 법원

행정처

- 2020. 8. 14. : 일본공증인연합회 YAMASHITA 부회장의 서한(CAAs 위원장 사퇴 관련)에 대한 답신 / 일본공증인연합회 YAMASHITA 부회장
- 2020. 8. 19. : 2020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① 제14회 공증주간 설정 및 공증 사무직원 교육 시행 논의 ② 공증 업무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논의 ③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 작성 도입 건의 논의 ④ 유언공정증서 철회 방법에 대한 실무 검토 ⑤ 기타 논의
- 2020. 8. 25. : 제14회 공증주간 설정 협조 요청 / 법무부
- 2020. 8. 25. : 공증 업무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법무부
- 2020. 9. 2. : Lionel Galliez UINL 유럽 부회장의 서한(CAAs 위원장 사퇴 관련)에 대한 답신 / Lionel Galliez UINL 유럽 부회장
- 2020. 9. 2. : 공증사무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못한 경우 기술적 지원 신청 안내 / 공증사무프로그램보급 신청 회원
- 2020. 9. 3. : 2020 CAAs 회원국 공증법 영문 모음집 최종 편찬 자료 송부 / CAAs 회원국 등

- 2020. 9. 10. : 공증 업무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법무부
- 2020. 9. 14. : 2020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 논의 ② 유언공증에 따른 부동산 등기관의 실무 개선방안 논의 ③ (가칭) 사서증서의 형식 등에 관한 인증업무처리 방법(안) 제정 (계속)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0. 9. 17. : 일본공증인연합회에 차기 CAAs 위원장직 제안에 대한 답변 요청 서한 발송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20. 9. 18.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협력 요청에 대한 답신 발송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Obidjon Ishniyozob 국제위원장 자문
- 2020. 9. 18.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사실조회 회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 2020. 9. 28. : 질의(인증부 기재사항 관련) 회신 / 민원인 ○○○
- 2020. 9. 28.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0르○○○○ 이훈(2020르○○○○반소)” 사실조회 회신 / 부산고등법원 제○가사부
- 2020. 9. 29. : 질의(인증서 등부번호 오류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0. 8. : CAAs 위원장 사퇴 이후 2020. 10. 9.까지의 상황에 대한 협회 최종 입장 전달 / CAAs 회원국 등
- 2020. 10. 14. : CAAs 후임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협회의 입장 전달 / CAAs 회원국 등
- 2020. 10. 16. : 2020년도 공증 사무직원 연수 서면교육 대체 시행 안내 / 회원
- 2020. 10. 16. :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안내 / 회원
- 2020. 10. 16. : 유언의 철회에 관한 공증업무 처리 방법 안내 / 회원
- 2020. 10. 19. : 2020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법인 ○○ 질의에 대한 회신 논의 ② 확정일자 날인 사무에 관한 논의(날인 대신 인영과 서명이 인쇄된 일반보험 배서증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 가부 논의 및 확정일자 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일자 날인 사무의 폐지 의견에 관한 찬반 논의 등) ③ 협회 회무 프로그램 제작 논의 ④ 공증인의 공익활동지원 제안 건의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0. 10. 19. : CAAs 후임 위원장 선임 관련 베트남공증인협회 제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수렴

등 / CAAs 회원국 등

- 2020. 10. 30. : UINL 2020년 정기총회에서 CAAs 차기 위원장 선임 안건 상정 요청 / UINL
- 2020. 10. 30. : 공증 수수료 면제 건수 현황 조사 / 회원
- 2020. 10. 30. : 2021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20. 11. 6. : 진정서에 대한 회신 / □□□협동조합 감사위원 ○○○
- 2020. 11. 16. : 2020년도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법인 ○○ 질의에 대한 회신 재논의 ② 2020년도 미사용 장부 관련 실적회비 환불 논의 ③ 회원 경조사 협회 차원 지원 여부 검토 ④ 2021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 논의 ⑤ 화상공증활성화TF 구성 제안 건의 논의 ⑥ 협회 사무국 이전 대비 방안 중 부동산경매 참여 검토 ⑦ 기타 논의
- 2020. 11. 17. : 공증인의 임용방안 및 관리 감독 체계 관련 설문조사 / 회원
- 2020. 11. 26. : 2020년도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산대 김상영 교수

- 의 설문조사에 대한 인가공증인 모임의 서한 관련 제반사항 논의 ② 기타 논의
- 2020. 11. 24. : 2020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 업무대행청
 - 2020. 12. 1. : 전국인가공증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전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영 교수
 - 2020. 12. 2. : 설문조사 회신문 전달 안내 / 전국 인가공증인협회의
 - 2020. 12. 3. : 전국인가공증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추가 전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영 교수
 - 2020. 12. 3. : 설문조사 회신문 추가 전달 안내 / 전국인가공증인협회의
 - 2020. 12. 14. : 2022년도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전국인가공증인협회 질의에 대한 답변 논의 ②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방안 논의 ③ 법무법인 ○○ 질의에 대한 회신 재논의 ④ 법무법인 ○○ 질의에 대한 회신 논의 ⑤ 법무법인 ○○ 질의에 대한 회신 논의 ⑥ 공증사무 프로그램 배포 유공 회원에 대한 감사 방법 논의 ⑦ 기타 논의
 - 2020. 12. 14.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20. 12. 18. : 질의(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력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2. 18. : 질의(후견계약공정증서 출장 가능 여부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2. 18. : 질의(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 (공증인의 표시 등)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2. 28. : 질의(인증서(사서증서)에 대한 질의 서신 관련) 회신 / 민원인 ○○○
 - 2020. 12. 28. : 질의(공증서류 보관창고 스프링 클러 설치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0. 12. 29. : 화상공증활성화특별위원회 참여 요청 / 지정공증인 회원
 - 2020. 12. 30.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요일별 상담신청 문자 접수용 금요일 번호 변경 안내 / 회원

VII. 2020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공증인 김상호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20. 1. 6.
- 임 기 : 2025. 1. 5.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16, 303호 (북창동, 우성빌딩) ☎ 04526
- 전 화 : 02-776-6926, 777-6926
- 팩 스 : 02-779-6926
- 입회일 : 2020. 1. 6.

❖ 공증인 강수정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19. 11. 1.
- 임 기 : 2024. 10. 31.까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402호(산남동, 신성미소시티블루2) ☎ 28625
- 전 화 : 043-286-9920
- 팩 스 : 043-286-9924
- 입회일 : 2020. 1. 16.

❖ 공증인 문장운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20. 1. 6.
- 임 기 : 2025. 1. 5.까지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5호 (서초동, 영포빌딩) ☎ 06595
- 전 화 : 02-776-5709, 776-6739
- 팩 스 : 02-3477-4418

- 입회일 : 2020. 1. 17.

❖ 공증인 전호천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20. 1. 6.
- 임 기 : 2025. 1. 5.까지
- 소재지 : 광주 동구 지산로 73, 3층 (지산동, 동명빌딩) ☎ 61445
- 전 화 : 062-226-4107
- 팩 스 : 062-226-4108
- 입회일 : 2020. 3. 2.

❖ 공증인 김동옥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20. 3. 23.
- 임 기 : 2025. 3. 22.까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102호 (거제동, 세헌빌딩) ☎ 47511
- 전 화 : 051-506-8704~5
- 팩 스 : 051-506-8706
- 입회일 : 2020. 4. 28.

❖ 공증인 김인식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20. 3. 23.
- 임 기 : 2025. 3. 22.까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103호 (거제동, 로펌빌딩) ☎ 47511
- 전 화 : 051-503-0226
- 팩 스 : 051-503-8025
- 입회일 : 2020. 5. 4.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선한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 가 일 : 2020. 4. 20.

- 유효기간 : 2025. 2. 6.까지
- 대 표 : 고미진 변호사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1층·3층 (양재동, 삼화빌딩 신관) ☎
06743
- 전 화 : 02-593-0549
- 팩 스 : 02-575-0549
- 입 회 일 : 2020. 5. 27.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현 - 소속 서울
중앙지검

- 인 가 일 : 2020. 4. 20.
- 유효기간 : 2025. 2. 6.까지
- 대 표 : 김동철·이성우 변호사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신사동, 제이타워) ☎ 06036
- 전 화 : 02-3218-8900
- 팩 스 : 02-3218-8990
- 입 회 일 : 2020. 6. 3.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그니처 - 소속 서울
중앙지검

- 인 가 일 : 2020. 4. 20.
- 유효기간 : 2025. 2. 6.까지
- 대 표 : 박정현·오세인 변호사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3층 (서초동, 회성빌딩) ☎ 06605
- 전 화 : 02-596-1333
- 팩 스 : 02-596-2333
- 입 회 일 : 2020. 6. 26.

❖ 공증인 주철수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20. 7. 27.
- 임 기 : 2025. 7. 26.까지
- 소재지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104호~105호 (지산동, 심산빌딩) ☎
61441
- 전 화 : 062-226-7989
- 팩 스 : 062-226-7990
- 입회일 : 2020. 8. 12.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 소 속 : 창원지검
- 대 표 : 고규정·안정환 변호사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우암로 175,
201-1호(내동, 김해법조타운)
- 탈회일 : 2020. 2. 7.
- 사 유 :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

❖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 소 속 : 부산지검
- 대 표 : 김백영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102호
(거제동, 세헌빌딩)
- 탈회일 : 2020. 2. 7.
- 사 유 :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

❖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대 표 : 서성원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108호~110호 (신정동, 남부빌딩)
- 탈퇴일 : 2020. 2. 7.
- 사 유 :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이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이환권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7층 (서초동, 재우빌딩)
 - 탈퇴일 : 2020. 2. 7.
 - 사 유 :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버스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심훈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4, 702호 (청진동, 삼송빌딩)
 - 탈퇴일 : 2020. 2. 7.
 - 사 유 : 인가공증인 재인가 불허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박철원·하인수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6층 (학익동, 중앙빌딩)
 - 탈퇴일 : 2020. 4. 20.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 공증인 문형섭
 - 소 속 : 광주지검

- 사무소 :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196번길 15-4, 2층 (궁동)
- 탈퇴일 : 2020. 6. 30.
- 사 유 : 임기만료(정년)

- ❖ 공증인 조병길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900, 110호 (송정동, 로얄프라자)
 - 탈퇴일 : 2020. 6. 30.
 - 사 유 : 임기만료(정년)

- ❖ 공증인 강동우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대구 중구 달성로 37, 812호 (대신동, 계성빌딩)
 - 탈퇴일 : 2020. 7. 30.
 - 사 유 : 임기만료(재임명 불허)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황기환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12번길 58, 2층 (학익동, 인성빌딩)
 - 탈퇴일 : 2020. 8. 31.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대 표 : 나국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01호 (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2차)

- 탈퇴일 : 2020. 8. 31.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최철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602호~603호 (서현동, 서현하우비)
- 탈퇴일 : 2020. 9. 25.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화우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정진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2층 (삼성동, 아셈타워)
- 탈퇴일 : 2020. 11. 20.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가 여의도 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김양남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706호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 탈퇴일 : 2020. 12. 30.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3. 공증사무소 이전

❖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데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4, 702호 (청진동, 삼송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1층 (서초동, 은곡빌딩)
- 이전일 : 2020. 2. 13.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304호 (서초동, 외교센터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106호 (서초동, 원효빌딩)
- 이전일 : 2020. 2. 24.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정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8층 (역삼동, 서우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20층 (서초동, 강남빌딩)
- 이전일 : 2020. 3. 9.

❖ 공증인 이정규 사무소

- 소 속 : 전주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101호 (만성동, 에이스빌딩)
(구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 1층 (덕진동, 대동빌딩)
- 이전일 : 2020. 5. 4.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5층 (서초동, 신한국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2, 5층 (서초동, 송원빌딩)
 - 이전일 : 2020. 5. 11.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0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구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4층 (역삼동, 우덕빌딩)
 - 이전일 : 2020. 5. 25.
- ❖ 공증인 강수정 사무소
 - 소 속 : 수원지검(소속 검찰청 청주지검에서 변경)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900, 110호 (송정동, 로얄프라자)
(구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5, 402호 (산남동, 신성미소 시티블루2)
 - 이전일 : 2020. 7. 1.
- ❖ 공증인가 팔공 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대구 중구 동덕로 196, 502호 (동인동)
(구 주소) 대구 중구 태평로 242, 3층 (동인동)
- 이전일 : 2020. 6. 29.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도
 - 소 속 : 전주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106호 (청당동)
(구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101-1호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 이전일 : 2020. 7. 20.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 소 속 : 전주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2, 204호 (만성동, 다현법조 타운)
(구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16, 2층 (덕진동1가, 백제빌딩)
 - 이전일 : 2020. 8. 23.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동부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2층 (석촌동, 태문빌딩)
(구 주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8층 (석촌동, 태문빌딩)
 - 이전일 : 2020. 10. 26.

공증과신회 (2021 통권 제14호)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남상우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4층 401호
(서초동, 서일빌딩)
전화 : (02)3477-5007
팩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후디자인
편집 전 화 : (02)2016-9044
전자우편 : hood6@naver.com

Notary and Public Faith (Vol. 14.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2
Publisher NAM Sang-Wo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Seocho-dong, Seo-il Building)
#401, 104,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 of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